

주제별 정기통계품질진단 연구용역

『복지분야』
2010년 정기통계품질진단
연구용역 최종결과보고서

2010. 10. 19

제 출 문

제 출 문

통계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10 정기통계품질진단(복지분야)” 연구용역 과제의 최종 연구결과물로 제출합니다.

2010년 10월 19일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최경희

연구진

책임연구원 김미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연구원 정순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최순종 (경기대학교 교수)

연구보조원 신용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과정)
배은경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김민경 (경기대학교 석사과정)

요 약 문

최종결과보고서 요약문

연구과제명	「복지분야」 2010년 정기통계품질진단
주 제 어	복지, 품질진단, 국가통계
연 구 기 간	2010.04.14 ~ 2010.10.29
연 구 기 관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구성	김미혜, 정순돌, 최순종
<p>본 보고서는 복지분야 2010년 정기통계품질진단 최종보고서로서 복지분야 주 체통계의 대상은 통계청 승인 통계 36종 중 24종이며, 가족·복지시설, 아동·청 소년, 노인·장애인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진단을 실시하였다. 진단은 통계의 작 성현황과 작성조직기반에 대한 분석, 통계영역별 역할, 해외사례 등의 분석, 현장 방문 및 담당자 면담, 전문가회의(FGI)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앞으로의 발전방 안을 제안하였다. 발전방안은 수요자 요인, 공급자 요인 측면에서 상호 연계된 복지 요인별 프로세스에 따라 복지분야 국가통계의 분류체계, 생산체계, 관리체 계 세 측면에서 제시하였다.</p> <p>먼저 단기목표를 분류체계, 생산체계, 관리체계 3가지 측면에서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분류체계 측면에서 국내 및 해외 유사통계분류에 대한 연구추진, 조사내용 및 분류에 대한 이론적 근거제시, 대상별 복지통계 분류체계 마련 등을 실시한다. 둘째, 생산체계 측면에서 조사통계와 보고통계간 상호보완체계 마련, 예정된 공표시기 준수, 예정된 조사방법 준수 등을 추진한다. 셋째, 관리체계 측 면에서 통계에 대한 홍보와 공표방법의 다양화, 통계이용자 및 전문가의 정기적 인 의견수렴체계 마련, 용어설명 제시, 설문지 수록, 자료접근경로의 다양성 확보 등을 실시한다.</p> <p>다음으로 중장기목표를 분류체계, 생산체계, 관리체계 3가지 측면에서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류체계 측면에서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통계 분류체계 마련, 가족보호와 가족미보호 통계에 대한 분류체계 마련, 아동복지차원에서 아 동복지시설통계 분류체계 마련 등을 추진한다. 둘째, 생산체계 측면에서 신규필 요통계 생산, 조사통계의 조사대상기관에 대한 관리지침서 제공, 조사시기 조정, 조사대상별 설문지 다양화 등을 추진한다. 셋째, 관리체계 측면에서 한국복지통 계위원회 설립, 통계 중장기 발전계획의 정기적 수립, 실질적인 조사관리체계 마 려, 영역별 복지통계 평가체계 확립, 원자료 공개확대, 원자료 관리체계 마련 등 을 추진한다.</p>	

차 례

제 1 장 개요	1
제 1 절 진단목적 및 필요성	1
제 2 절 주제의 포괄적인 범위 및 연구의 범위	3
제 3 절 연구방향	8
제 2 장 주제영역 통계현황	12
제 1 절 통계현황	12
1. 가족·복지시설 영역	12
2. 아동·청소년 영역	22
3. 노인·장애인 영역	30
제 2 절 통계작성조직기반	41
1. 가족·복지시설 영역	41
2. 아동·청소년 영역	44
3. 노인·장애인 영역	47
제 3 장 주제영역 통계분석 및 해외사례	52
제 1 절 통계영역별 역할	52
1. 통계영역별 정책과의 연계성	52
2. 통계영역별 공급자와 수요자 역할	57
3. 통계영역별 항목차이 및 통계간 상호역할	62

제 2 절 해외 사례	79
1. 국제기준	79
2. 외국의 통계작성체계	90
3. 국제기준과 적용범위	110
4. 국제기구 자료제공수준 분석	113
제 4 장 발전방향	116
제 1 절 진단결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6
1. 영역별 진단결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6
2. 복지통계 운영체계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31
제 2 절 주제통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발전전략	150
제 3 절 로드맵	161
참고문헌	168
부 록	171
<통계작성현황 조사표>	173
<FGI 결과보고서>	193

표 차례

<표 1> 통계청 승인 복지통계 현황	3
<표 2> 품질진단 대상 국가복지통계	7
<표 3> 복지통계 품질진단 범위 및 방법	9
<표 4> 가족·복지시설영역 보고통계의 통계작성기관·부서	41
<표 5> 가족·복지시설영역 조사통계의 통계작성기관·부서	43
<표 6> 아동·청소년영역 보고통계의 통계작성기관·부서	45
<표 7> 아동·청소년영역 조사통계의 통계작성기관·부서	46
<표 8> 노인·장애인영역 보고통계의 통계작성기관·부서	48
<표 9> 노인·장애인영역 조사통계의 통계작성기관·부서	49
<표 10> 가족영역 복지통계의 관련 정책	53
<표 11> 복지시설영역 복지통계의 관련 정책	54
<표 12> 아동·청소년영역 복지통계의 관련 정책	55
<표 13> 노인·장애인영역 복지통계의 관련 정책	57
<표 14> 가족영역 복지통계의 항목별 비교	63
<표 15> 보육영역 복지통계의 항목별 비교	66
<표 16> 복지시설영역 복지통계의 항목별 비교	67
<표 17> 아동·청소년 실태영역 복지통계의 항목별 비교	70
<표 18>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영역 복지통계의 항목별 비교	71
<표 19> 노인영역 복지통계의 항목별 비교	74
<표 20> 장애인영역 복지통계의 항목별 비교	77
<표 21> 통계별 용어 비교	78
<표 22> 가족의 구조	80
<표 23>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81
<표 24> 가족과 아동에 대한 공공정책	82

<표 25> 아동의 성과	83
<표 26> OECD Child well-being	86
<표 27> 노인관련 국제원칙	87
<표 28> UN Recommendations for action	88
<표 29>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89
<표 30> 영국의 복지통계	100
<표 31> 캐나다 통계의 주제·영역별 명칭	105
<표 32> 캐나다의 복지영역별 통계분류	105
<표 33> 국제기구 자료제공에 활용가능한 통계와 생산가능지표	114
<표 34> 복지영역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129
<표 35> 복지통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48
<표 36>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메타자료 링크 현황	153
<표 37> 신규필요통계	156
<표 38> 로드맵	162

그림 차례

<그림 1> 품질진단 업무 흐름도(Flow Chart)	8
<그림 2> 유기적 진단체계	10
<그림 3> 품질진단체계	11
<그림 4> 가족·복지시설영역 복지통계의 수요자와 공급자	58
<그림 5> 아동·청소년영역 복지통계의 수요자와 공급자	59
<그림 6> 노인·장애인영역 복지통계의 수요자와 공급자	61
<그림 7> 성공적 삶과 기능적 사회를 위한 핵심 역량 구조	85
<그림 8> 캐나다의 아동·청소년 통계보고서 시리즈	107
<그림 9> 한국복지통계체계	147

제 1 장 개 요

제 1 절 진단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복지분야 국가통계는 정기통계품질진단 5개년 계획(2006~2010)하에 매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용역에 의해 복지통계 품질진단을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계의 수요자 측면에서 통계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통계품질의 확보가 미흡하며 또한 통계의 생산자 측면에서도 이러한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복지통계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관련 통계를 제공하는 기관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현재 4개 영역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의 통계포털 부서별 통계, 보건복지통계연보,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 e-나라 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의 보건복지지표 등 여러 기관에 걸쳐 복지통계가 산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각 통계제공기관마다 통계용어와 의미, 작성기준, 분류체계 등이 상이하게 제공되고 있으며 관련 메타정보의 제공도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유사한 복지통계를 여러 기관이 중복 작성하여 응답자의 부담과 국가 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있거나, 반대로 신규 수요가 있음에도 예산이나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적시에 통계가 작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 영역은 크게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대인서비스,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전달체계 등으로 구성되며, 최근 들어 조세정책과 고용정책 분야가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관련 복지주제 영역의 통계도 국가의 복지정책을 결정하는데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인프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가족복지 영역을 보면 최근 급격한 출산율 저하, 이혼율 증가, 노인단독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가족구조가 급속한 변화 추세에 있다. 또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 급증에 따라 가족 내 노인 수발 즉 여성의 돌봄노동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가족에서 여성의 역할은 경제활동참가의 확대와 동시에 일-가정의 양립의 문제를 동시에 겪게 되었다. 가족구조의 급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수요 증가, 보육의 사회화로 인한 보육·교육시설 등 지역사회 내의 복지시설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밀착형의 복지공급이 보다 확대되면서 지역사회 내 복지시설에 대한 인지도와 서비스의 이용 욕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복지 통계의 공급이 적절히 생산되지 못하고 있다.

아동·청소년복지 영역을 보면 이들은 향후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서 올바른 성장과 이행을 이루어 나가야 하며, 정부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입시위주의 교육문화와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지원시스템 및 실증적 자료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아동·청소년의 삶에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아동·청소년 통계는 다수의 기관에서 서로 다른 목적 하에 다양하게 시행되어 왔다. 이는 정부의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 담당 부서가 다르게 구성·운영되어 왔고, 이에 따라 별도의 영역으로써 개별 조사의 목적에 따라 그때그때의 필요성을 충족시켜왔으나 아동·청소년 영역의 체계성을 확보하기에는 매우 산발적이었던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한편 노인·장애인복지 영역의 경우 성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 연계정책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현실이다. 등록장애인을 보면, 2000년 6월 95만 8천명에서 2009년 12월에는 242만 9천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장애 발생의 원인은 선천적인 문제라기보다 주로 후천적인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한 것이다. 또한 2009년 12월말 현재 등록장애인 242만 9천명 중에서 60세이상 노인은 112만 2천명으로 46.2%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이면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상호연계된 복지서비스와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장애인 관련 정책의 기반이 되는 장애인 관련 통계는 기본 사항에 한정된 조사, 중복장애 미조사 등의 문제점이 있다.

복지 각 영역별 정책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기반으로 통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복지통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그동안 개별 복지통계를 위주로 수행된 품질진단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중복 문제의 해결, 일관성의 유지, 신규 수요의 확인 등 전반적인 복지주제 통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본 복지통계 품질진단을 통하여 복지통계에 대한 수요자 요인, 공급자 요인 측면에서 상호 연계된 프로세스에 따라 복지분야 국가통계의 종합적인 분류체계, 생산체계, 관리체계의 방안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 2 절 주제의 포괄적인 범위 및 연구의 범위

1. 주제의 포괄적인 범위

2010년 8월 1일 기준, 통계법 제18조(또는 제20조)에 의거 총 850종의 통계가 국가통계로 승인받았으며, 통계종류별로 지정통계 90종, 일반통계 760종, 작성형태별로는 조사통계 342종, 보고통계 452종, 가공통계 56종이다. 이러한 국가승인통계를 작성기관에 따라 정부기관과 지정기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정부기관에 의하여 작성되고 있는 통계는 702종(통계청 52종)이며, 지정기관에서 작성하고 있는 통계는 149종에 이른다.

통계청 승인통계 가운데 2010년 현재 복지주제 통계는 총36종으로, 통계종류별로는 일반통계 35종, 지정통계 1종이며, 작성방법별로는 조사통계 20종, 보고통계 15종, 가공통계 1종이다. 또한 통계분야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복지분야 30종, 사회분야 5종, 인구분야 1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통계청 승인 복지통계 현황(총36종): 작성방법별

작성방법	통계명	통계작성기관명	통계종류	통계분야	작성주기
조사통계 (20)	가 족 실 태 조 사	여 성 가 족 부	일반	인구	5년
	기업및공공기관의가족친화지수측정	여 성 가 족 부	일반	복지	1년
	여 성 가 족 패 널 조 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반	사회	2년
	서 울 시 복 지 패 널 조 사	서 울 특 별 시	일반	복지	2년
	고 령 화 연 구 패 널 조 사	한국고용정보원	일반	복지	1년
	국 민 노 후 보 장 패 널 조 사	국 민 연 금 공 단	일반	복지	2년
	한 국 복 지 패 널 조 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반	복지	1년
	보 육 실 태 조 사	보 건 복 지 부	일반	복지	5년
	최 저 생 계 비 계 측 조 사	보 건 복 지 부	일반	복지	3년
	장 애 인 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	보 건 복 지 부	일반	복지	5년
	장 애 인 생활 체육 실 태 조 사	문화체육관광부	일반	복지	1년

	장애인 실태 조사	보건복지부	지정	복지	3년
	노인 실태 조사	보건복지부	일반	복지	3년
	생명보험성향 조사	생명보험협회	일반	복지	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일반	복지	5년
	요보호 아동 현황 보고	보건복지부	일반	복지	반기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일반	사회	2년
	아동발달분야사회복지서비스수요조사	보건복지부	일반	복지	2년
	청소년가치관조사	여성가족부	일반	사회	2년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일반	사회	1년
보고 통계 (15)	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및종사자현황보고	보건복지부	일반	복지	반기
	학대아동보호현황	보건복지부	일반	복지	1년
	보육시설및이용자통계	보건복지부	일반	복지	1년
	청소년상담지원현황	여성가족부	일반	사회	1년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현황	보건복지부	일반	복지	반기
	사회복지서비스산업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일반	복지	2년
	산재보험통계	고용노동부	일반	복지	월
	산업재해현황	고용노동부	일반	복지	월
	보훈보상금지급현황	국가보훈처	일반	복지	1년
	장애수당수급자현황	보건복지부	일반	복지	반기
	등록장애인현황	보건복지부	일반	복지	분기
	노인복지사업현황보고	보건복지부	일반	복지	1년
	노인학대현황	보건복지부	일반	복지	월
	국민연금통계	국민연금공단	일반	복지	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보건복지부	일반	복지	1년
가공 통계 (1)	한국의사회복지지출	보건복지부	일반	복지	1년

2. 연구의 범위

본 2010년 국가복지통계 품질진단 연구의 범위는 통계청 승인 복지통계 36종 중 주제진단 대상으로 선정된 **총24종 통계**이다. 이 중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통계청 정기품질진단을 받은 통계는 총17종(70.8%)으로 2006년 1종, 2007년 3종, 2008년 5종, 2009년 5종, 2010년 3종(예정)이다.

품질진단 대상 통계 24종을 복지서비스 대상별로 구분해보면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보육, 가족, 복지시설 등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구분하면 영역이 7개가 되어 품질진단이 용이하지 못하므로 복지서비스 대상을 기준으로 재분류를 실시하였다. 즉 가족·복지시설 영역, 아동·청소년 영역, 노인·장애인 영역 3가지이다. 그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 가족, 복지시설을 묶어 가족·복지시설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보육 영역 '보육실태조사', '보육시설및이용자통계' 2종의 경우 가족의 발달단계 중 결혼 후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수행하는 중요한 발달과업이므로 가족 영역에 포함하였다. 복지시설 영역은 '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및종사자현황보고', '요보호아동현황보고',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현황' 3종이다. 이 통계들은 실제로 가족의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에 관한 통계들이다. 따라서 가족이라는 큰 맥락에서 분석하기 위해 하나의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법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명확한 구별에 혼동이 존재하므로 이들 복지통계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아동, 청소년 관련 개별통계들을 묶어 아동·청소년 영역 복지통계로 분류하였다.

셋째,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복지서비스 측면에서 볼 때 노인복지서비스와 장애인복지서비스 상호간에 유사중복되는 경향이 존재한다. 장애인의 경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노인이 되어 가고, 노인의 경우도 역시 장애인이 되는 경향이 높아진다. 이에 노인과 장애인 관련 통계들을 묶어서 노인·장애인 영역 복지통계로 분류하였다.

본 품질진단 연구의 범위를 가족·복지시설, 아동·청소년, 노인·장애인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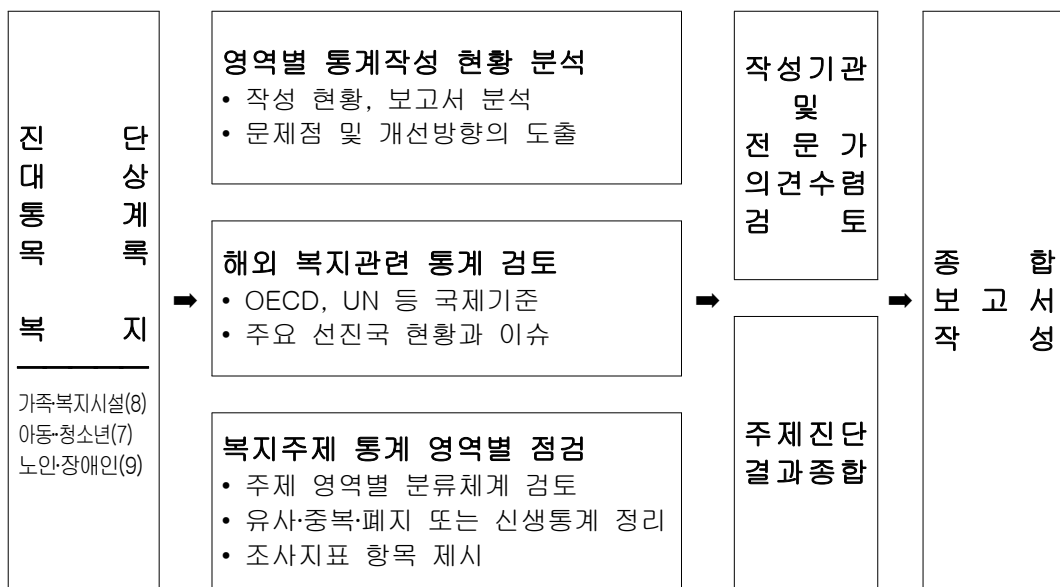
- **가족·복지시설 영역**: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패널조사, 기업및공공기관의 가족친화지수측정, 보육실태조사, 보육시설및이용자통계, 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및종사자현황보고, 요보호아동현황보고,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녀 가정현황 등 8종
- **아동·청소년 영역** :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청소년가치관조사, 학대아동보호현황, 아동발달분야사회복지서비스수요조사, 청소년상담지원현황,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등 7종
- **노인·장애인 영역** : 노인복지사업현황, 노인실태조사, 고령화패널조사, 노인학대현황,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 등록장애인현황,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 장애수당수급자현황 등 9종

<표 2> 품질진단 대상 국가복지통계

분류	통계명	통계작성 기관명	승인 번호	작성 방법	통계 종류	작성 주기	진단 연도
가족 복지 시설 (8)	가 족 실 태 조 사	여 성 가 족 부	15401	조사	일반	5년	2009
	여 성 가 족 패 널 조 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3801	조사	일반	2년	2009
	기업및공공기관의가족친화지수측정	여 성 가 족 부	11782	조사	일반	1년	-
	보 육 실 태 조 사	보 건 복 지 부	33107	조사	일반	5년	2007
	보 육 시 설 및 이 용 자 통 계	보 건 복 지 부	15407	보고	일반	1년	2008
	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및종사자현황보고	보 건 복 지 부	11740	보고	일반	반기	2007
	요 보 호 아 동 현 황 보 고	보 건 복 지 부	11734	보고	일반	반기	2007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현황	보 건 복 지 부	11770	보고	일반	반기	-
아동 청소년 (7)	아 동 종 합 실 태 조 사	보 건 복 지 부	11774	조사	일반	5년	2009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여 성 가 족 부	16701	조사	일반	1년	2009
	청 소 년 가 치 관 조 사	여 성 가 족 부	16706	조사	일반	2년	2010
	학 대 아 동 보 호 현 황	보 건 복 지 부	11764	보고	일반	1년	2010
	아동발달분야사회복지서비스수요조사	보 건 복 지 부	11780	조사	일반	2년	-
	청 소 년 상 담 지 원 현 황	여 성 가 족 부	16703	보고	일반	1년	-
	아 동 청 소 년 인 권 실 태 조 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0201	조사	일반	2년	-
노인 장애인 (9)	노 인 복 지 사 업 현 황 보 고	보 건 복 지 부	11736	보고	일반	1년	2006
	노 인 학 대 현 황	보 건 복 지 부	11767	보고	일반	월별	2008
	노 인 실 태 조 사	보 건 복 지 부	11771	조사	일반	3년	2009
	고 령 화 연 구 패 널 조 사	한국고용정보원	33602	조사	일반	1년	2008
	등 록 장 애 인 현 황	보 건 복 지 부	11761	보고	일반	분기	2008
	장 애 수 당 수 급 자 현 황	보 건 복 지 부	11762	보고	일반	반기	-
	장 애 인 편 의 시 설 설 치 현 황 조 사	보 건 복 지 부	11735	조사	일반	5년	2008
	장 애 인 실 태 조 사	보 건 복 지 부	11732	조사	지정	3년	2010
	장 애 인 생 활 체 육 실 태 조 사	문화체육관광부	11320	조사	일반	1년	-

제 3 절 연구방향

본 복지통계 품질진단은 진단대상 24종 통계를 복지서비스 대상별 영역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졌다. 각 통계의 배타적 독립성을 유지하되 향후 복지 주제로 유기적 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영역별 진단의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품질진단 업무는 다음 <그림 1>과 같이 진행되었다.



<그림 1> 품질진단 업무 흐름도(Flow Chart)

이러한 국가복지통계품질진단 사업의 단계별 진단범위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첫째, 주제 내 개별통계 현황분석, 둘째, 영역별 통계 효율성 검토, 셋째, 해외복지관련 통계 연구, 넷째, 현장방문/담당자면담, 다섯째 전문가회의(FGI)/자문회의 실시, 여섯째, 복지주제 진단통합, 마지막으로, 복지주제 개선방향 제시 및 대안마련 순으로 실시된다.

<표 3> 복지통계 품질진단 범위 및 방법

통계품질 진단 분야	진단의 범위와 방법
1. 주제 내 개별통계 현황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통계 작성 현황과 원자료 및 보고서 검토 ◦ 품질진단 대상 복지통계 24종에 대한 분류작업 ◦ 통계인력의 현황, 전문성과 예산규모 검토 ◦ 통계 작성 시스템의 적합성
2. 영역별 통계 효율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활용 현황 파악 및 영역별 분류체계 검토 ◦ 유사중복통계 검토/신생필요통계 정리 ◦ 조사지표 항목 제시
3. 해외 복지관련 통계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기구 사례 검토 ◦ 주요 선진국 통계작성과 전달체계 검토 ◦ 주요 선진국 복지통계 현황 검토
4. 현장방문/담당자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별 현황과 문제점 인식 ◦ 주제 영역별 통계 현황의 발전방향과 보완책 ◦ 통계작성과 공표까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청취
5. 전문가회의(FGI)/ 자문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별 문제점, 개선사항 청취 및 효율성 측면에서 영역별 통계 재구성의 타당성 개선 ◦ 해외 선진사례 검토 ◦ 분류/생산/관리체계에 대한 협의, 의견수렴 및 확정 ◦ 전문가회의(FGI)를 통한 통계별 문제점 및 주제 통계의 체제 구축방안 의견 청취
6. 복지주제 진단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중복통계폐지/신생통계별 재범주화 ◦ 통계작성기관/보고체계 정비방안 제시 ◦ 통계자료 간 유기적 통합방안 제시 ◦ 분류/생산/관리체계 대안제시
7. 복지주제 개선방향 제시 및 대안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역별 진단결과 요약 ◦ 통계작성의 개선방향 제시 ◦ 영역별 주제 통합 타당성 검토 ◦ 복지주제 통계품질 개선과제 도출/대안의 마련

① 주제 내 개별통계 현황분석

주제 내 개별통계 현황분석을 위하여 국가통계를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품질로 견인하기 위한 통계품질관리(Statistics Quality Management)가 필요하다. 통계품질의 결정요소는 개별통계를 과학적으로 진단하는 방법 혹은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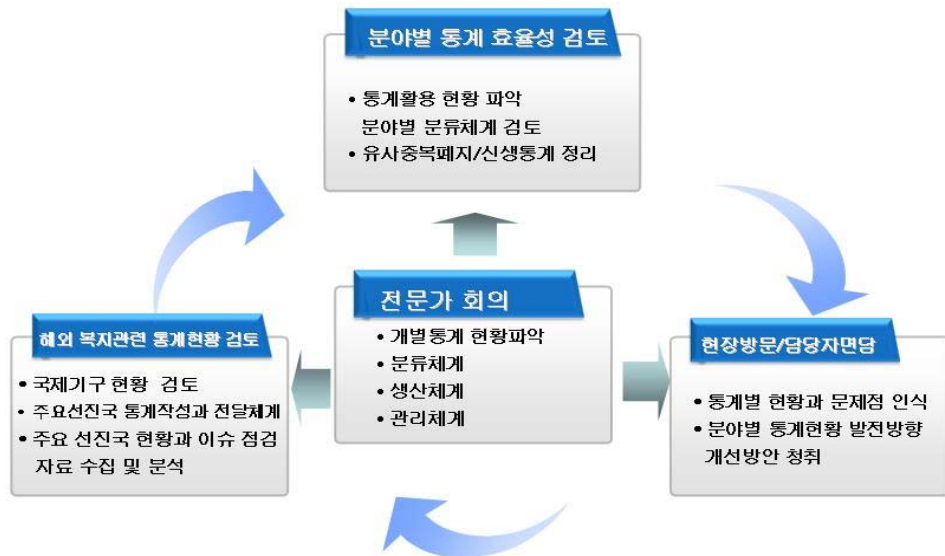
석차원이라고도 할 수 있다.

② 통계청 승인 24종 통계에 대한 분류작업

통계청에서 승인되어 있는 통계 24종에 대하여 복지주제를 적용하여 분류작업을 실시한다.

③ 영역별 통계효율성 검토 및 해외복지관련 통계연구

개별 통계의 현황 분석단계를 토대로 영역별 통계 효율성 검토, 해외복지관련 현황검토, 현장방문/담당자면담의 과정을 수행한다. 이때 각 단계별 구체적 내용은 <그림 2>와 같이 순환적으로 수행된다.



<그림 2> 유기적 진단체제

④ 복지주제 진단 통합 및 개선방향 제시

주제진단은 <그림 3>과 같이 영역별로 복지주제로 통합할 수 있는 각 진단 요소들을 통합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이때 전문가회의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정보와 의견의 환류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3> 품질진단체계

제 2 장 주제영역 통계현황

제 1 절 주제영역별 통계현황

먼저 품질진단대상 24종 통계에 대한 주제 영역별 분류작업을 실시하였다. 분류는 복지서비스 대상별로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3가지 영역, 가족·복지시설, 아동·청소년, 노인·장애인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를 통해 영역별로 개별통계에 대한 현황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현황은 '통계작성현황조사표'의 결과를 근거로 한다.

1. 가족·복지시설 영역

(1) 통계현황

가족·복지시설 영역 진단대상 통계는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패널조사', '기업및공공기관의가족친화지수측정', '보육시설 및 이용자 통계', '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및종사자현황보고', '요보호아동현황보고',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현황' 등 총8종이다. 보육을 포함한 가족영역이 5종, 요보호아동시설보호 관련 영역이 3종이다. 통계작성별로는 조사통계 4종, 보고통계 4종이며, 작성기관별로는 보건복지부 5종, 여성가족부 3종이다. 이 영역의 통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족실태조사

'가족실태조사'(승인번호 제15401호, 승인일자 2005년 10월 11일)는 전국 규모의 가족조사를 통해 가족생활 실태 및 정책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종합적인 가족정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가족실태조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 5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에 근거하여 작성되는 국가통계이다. 본 대상

통계의 작성주기는 5년으로 2005년 제1차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10년 10월 현재 제2차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2005년도 조사는 당시 여성가족부에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8년 이후 보건복지가족부로 업무가 이관되었다가 2010년 3월 다시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상태이다. 조사기획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현장조사 및 자료처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5년 당시 한국여성개발원), 결과분석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하였으며, 마지막 공표는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에서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 중에서 16개 시도별, 읍면동별, 주거형태별 등의 자료 및 2001~2004년까지의 신축건물 등을 보조적인 자료로 활용해 지역별조사구를 선정, 선정된 조사구 내에서 만15세 이상 가구원 전체를 조사하였으며, 가구데이터는 유효표본기준으로 2,925표본이며 가구원은 5,979표본이다(2010년 제2차조사는 조사대상가구를 2,500표본으로 축소). 조사방법은 지역크기, 가족구성별, 가족형태별, 세대구성별, 교육수준, 소득수준, 연령 등의 변인을 사용하여 일대일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기간은 2005년 10월 26일부터 2005년 12월 9일까지 약 2달간 이루어졌다. 본 통계의 공표방법은 보도자료, 간행물발행이고, 간행물명은 '가족실태조사'이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보건복지부 통계포털(stat.mw.go.kr)에서 제공된다.

2) 여성가족패널조사

'여성가족패널조사'(승인번호 제33801호, 승인일자 2007년 8월 8일)는 여성의 가족생활과 일자리 경험을 종단적으로 추적하여 여성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되는 조사통계이다. '여성발전기본법' 제 10조 및 10조의 2에 근거해 승인된 통계이다. 본 대상통계의 작성주기는 2년이지만 1차년도(2007년)와 2차년도(2008년)는 1년주기로 조사가 시행되었다. 이후부터는 격년마다 본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3차년도 조사가 2010년 8월에 실시되어 12월에 조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의 조사대상 일반가구들 중에서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여성 가구원이 있는 가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추출한 여성가구원으로, 1차년도 조사의 규모는 전국 약 9,084가구내 여성 10,013명이었다. 조사실시기간은 당해 조사년도 8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이루어지며, 조사대상

시점 및 기간은 조사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조사방법은 CAPI를 이용하였고 대상통계의 주요 조사항목은 가구(가구주 및 가구원 정보, 가구소득 및 소비, 자산 및 부채 등), 개인(성장과정, 직업력, 출산경험, 자녀교육, 가사노동, 부부관계 등), 일자리(현재 경제활동 상태, 종사상 지위, 일자리 특성, 근무만족도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가족패널조사의 결과는 2008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사업보고서 및 제1차 기초분석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으며, '여성가족패널브리프'가 4차까지 발간되어 있으며, 2009년 6월 말에 여성가족패널 인터넷 사이트(klowf.kwdi.re.kr)에서 원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통계작성체계를 보면 조사기획과 결과분석, 공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담당하였으며, 현장조사는 한국리서치에서, 자료처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리서치가 함께 담당하였다. 본 통계의 공표는 간행물과 DB의 형태로 제공되는데, 최근 간행물은 2009년 12월 공표된 '2009 여성가족패널조사 사업보고서 및 제2차 기초분석보고서'이다.

3) 기업및공공기관의가족친화지수측정

'기업및공공기관의가족친화지수측정'(승인번호 제11782호, 승인일자 2009년 10월 21일)는 기업(기관)의 가족친화프로그램(제도)의 도입 및 활용도에 대하여 진단하고, 측정결과를 비교분석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전략 및 목표수립의 지표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된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4조를 근거로 작성되는 통계이다. 본 대상통계는 2006년을 시작으로 매년 시행되는 조사통계로, 2006년도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작성하다가 2008년 이후 보건복지가족부로 업무가 이관, 2010년 3월 다시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상태이다. 2009년 통계조사의 조사기획, 공표는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에서 담당하였으며, 현장조사 및 자료처리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결과분석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함께 담당하였다. 현재 진행 중인 2010년 통계조사의 조사기획, 공표는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에서 담당하고, 현장조사 및 자료처리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결과분석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함께 담당할 예정이다.

'기업및공공기관의가족친화지수측정'의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크게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부양가족지원제도, 근로자지원제도, 가족

친화문화조성의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대상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기관, 대학, 상장법인과 같은 총 6개 유형의 기관(기업)이며, 여기서 가족친화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에 의해 이뤄진다.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웹조사(전화, Fax조사 병행)로 실시되고, 조사기간은 2009년도를 기준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2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최근 공표는 2009년 12월이다. 본 통계의 공표는 DB와 간행물의 형태로 제공되는데, 가족친화지수웹시스템 인터넷 사이트(ffi.mogef.go.kr/index.jsp)가 개설되었으며, 최근 간행물은 '2009년도 가족친화지수 측정 및 분석 결과보고서'로 2009년 12월에 공표되었다.

4) 보육실태조사

'보육실태조사'(승인번호 제33107호, 승인일자 2004년 10월 19일)는 '영유아보육법' 제9조에 근거하여 작성되는 국가통계로 초등학생 이하 아동의 보육, 교육서비스 이용실태, 이용에 따른 만족도, 요구도 파악 및 보육시설 운영의 전반적 현황 파악을 통해 보육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본 대상통계의 작성주기가 5년으로 2004년 6월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육업무가 이관된 여성부에서 처음 작성되었으며,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로 다시 이관되어 2009년 2차조사가 실시되었다. 2009년도를 기준으로 조사기획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보육정책과에서, 현장조사 및 자료처리, 결과분석에 있어 아동·가구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 보육시설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이루어졌으며, 공표는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보육정책과에서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아동·가구조사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아동으로 총 4,901가구에서 7,455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보육시설조사는 2008년 12월 현재 운영중인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보육시설 유형별 비례표집을 통해 추출한 3,201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방법은 면접조사로서 조사기간은 아동·가구조사는 2009년 3월 10일부터 2009년 5월 2일까지, 보육시설조사는 2009년 4월 27일부터 6월 20일까지 이루어졌다. 조사항목은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 소요비용, 서비스 만족도, 보육 및 유아교육수요율, 보육시설 운영상태, 보육교사 근로 및 처우이다. 본 통계의 공표는 보도자료, 간행물의 형태로 제공된다. 2010년 4월에 2009년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최근 간행

물로는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보육시설조사보고’가 있다.

5) 보육시설 및 이용자 통계

‘보육시설 및 이용자 통계(승인번호 제15407호, 승인일자 2006년 10월25일)’는 보육시설 유형별 설치·운영, 보육시설 종사자,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현황 등을 파악하여 보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되는 보고통계이다. 본 대상통계는 2004년 작성되기 시작하였으며, 2006년 10월 25일자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정식으로 생산되었다. 본 대상통계는 기준시점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상에 정상운영상태로 등록되어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기준시점은 매년 12월 31일이다. 본 통계는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보육정책과에서 작성 기획을 담당하고 전국 시·군·구담당자 및 시설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이용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자료를 추출하여 작성한다.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보육정책과에서 익년도 4월 말 자료를 분석·공표한다. 본 통계는 보도자료, 간행물 및 DB 형태로 공표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정책포털(stat.mw.go.kr)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e-나라지표 홈페이지(www.index.go.kr) 등에서 제공된다.

6) 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및종사자현황보고

‘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및종사자현황보고’(승인번호 제11740호, 승인일자 1996년 10월 16일)는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상담소’의 보호아동 및 종사자 현황을 파악하여 아동복지의 각종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반기로 작성되는 보고통계이다. ‘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및종사자현황보고’관련사업은 1961년 12월 아동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이 법은 1981년 4월부터 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되었으며 이는 2000년과 2004년에 전면개정과 일부개정이 시행되었다. 본 통계의 작성은 1996년 10월 통계청의 승인에 의해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및 종

사자현황보고'로 작성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 12월 보고서식 변경이 이루어졌다. 본 대상통계의 작성기획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아동복지과에서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의 작성과 분석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아동복지과에서 수행한다. 본 대상통계의 작성대상은 아동복지시설 내의 보호아동과 종사자이며, 사전예고제 실시에 따라 상반기(1~6월) 통계는 7~8월에 수집한 후 검토·분석하여 9월에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하반기(7~12월) 통계는 1~2월에 자료를 수집한 후 검토·분석하여 3월에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일선기관의 실태조사 보고내용을 집계하는 방법으로 작성된다. 본 통계는 간행물 및 DB의 형태로 공표되고 있으며, 작성대상년도 익년 12월경 '보건복지통계연보'에 결과를 공표하며, 보건복지부 통계포털(stat.mw.go.kr)를 통해서 제공된다.

7) 요보호아동현황보고

'요보호아동현황보고' (승인번호 제11734호, 승인일자 1994년 10월 29일)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각 시, 군, 구에 신고된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하여 예산 및 각종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집되는 보고통계이다. 본 대상통계의 작성기획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아동복지과에서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의 작성, 결과분석과 공표는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아동복지과에서 수행한다.

본 통계는 반기마다 작성되고 있어 요보호아동의 증가추이를 쉽게 알 수 있으며, 행정보고로서 전산파일을 이용하여 보고되고 있다. 작성기간은 반기 초월 1일부터 반기 말월 말일까지 진행되며, 공표방법으로는 DB, 간행물로 '보건복지통계연보'에 1년 마다 분석결과를 공개한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통계포털(stat.mw.go.kr)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8)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현황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현황'(승인번호 제11770호, 승인일자 2008년 1월 10일)은 요보호아동의 가정위탁 현황, 입양현황, 소년소녀가정현황을 파악하여 예산 및 각종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반기로 작성되는 보고통계이다. 본 통계의 작성은 가정위탁보호 아동현황, 소년소녀가정현황, 국내입양현황으로 각각 작성되고 있다. 본 대상통계의 작성기획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아동권리과에서 수행하고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작성, 결과의 분석과 공표는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아동권리과에서 이루어진다.

본 대상통계의 연혁을 살펴보면 '가정위탁현황'통계는 1994년 처음 일반통계로 작성되기 시작했으며, 조사범위는 전국 가정위탁 보호아동으로 작성주기는 반기이다. '소년소녀가정현황보고' 통계는 처음 1988년 3월 '소년소녀가장세대현황보고'로 통계청의 승인에 의해 작성되기 시작했으며, 1998년 7월에는 작성주기가 분기에서 반기로 변경되었으며 통계명칭은 2007년 5월 '소년소녀가정현황보고'로 변경되었다. '국내입양현황보고' 통계는 1989년 승인된 이래 작성되고 있으며, 작성대상은 전수조사로 국내 허가된 입양기관 22곳 모두를 조사하여 반기별 보고를 받아 1년에 1번 공표하고 있다. 본 통계는 간행물 및 DB의 형태로 공표되고 있으며, 통계의 결과공표주기는 매년으로 작성대상년도 익년 12월경 보건복지통계연보에 결과를 공표하며, 보건복지부 통계포털(stat.mw.go.kr)과 통계청 e-나라지표 사이트(index.go.kr)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2) 통계비교

① 가족영역 복지통계

통계명칭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패널조사			기업및공공기관의가족친화지수측정		
작성기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정책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정책과		
통계종류		일반통계-조사통계			일반통계-조사통계			일반통계-조사통계		
승인번호		제15401호			제33801호			승인번호 제11782호		
승인일자		2005년 10월 11일			2007년 8월 8일			2009년 10월 21일		
최초작성연도		2005년			2005년			2006년		
작성근거		건강기본법 제20조			여성발전기본법 제 10조 및 제10조의 2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4조		
작성목적		전국적 가족조사를 통해 가족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기초 자료 구축,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가족 정책 수립			여성의 가족생활과 일자리 경험을 추적하여 여성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기업(기관)의 가족친화프로그램의 도입 및 활용도에 대해 진단, 측정결과를 비교분석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전략 및 목표수립의 지표로 활용		
조사주기		5년			2년 (1차년도-2007년/ 2차년도-2008년 1년 주기, 이후 격년)			1년		
조사대상	조사단위	가구(2,925가구, 가구원 5,979명)			가구, 개인 (약 9,084가구 내 여성 10,013명)			기관(기업)		
	조사범위	200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 16개 시도별, 읍면동별, 주거형태별 등의 자료 및 2001~2004년까지의 신축건물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역별조사구를 선정, 선정된 조사구 내에서 가구조사를 실시			2005년 인구주택 총 조사의 조사대상 일반가구를 중에서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여성 가구원이 있는 가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추출한 여성가구원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상장법인과 같은 총 6개 유형의 기관(기업)		
	조사대상시점·기간	1월1일~12월31일			조사 전년도 1월1일~ 12월 31일까지 1년간			하반기 약3개월		
	조사실시기간	2005.10.26~2005.12.9			당해 조사년도 08.31~12.31			2009.11.1~2009.12.2		
조사방법	면접조사			면접조사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웹 조사(전화, Fax조사)			
통계작성체계	조사기획(여성가족부)-현장조사 및 자료처리(여성정책연구원), 결과분석(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공표 (여성가족부)			조사기획(한국여성정책연구원)-결과 분석(한국여성정책연구원)-현장조사(한국리서치)-자료처리(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리서치)-공표(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기획(여성가족부)-현장조사(한국생산성본부)-자료처리(한국생산성본부), 결과분석(여성가족부/한국생산성본부)-공표(여성가족부)			
통계결과작성	SPSS			상용 통계패키지			SPSS			
주요 작성결과	가족형성(혼인, 출산 등),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아동 돌봄 등			여성의 가족생활, 일, 노후준비 등			가족친화지수의 국가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 기업, 대학 등 영역별 평균 점수, 탄력적 근무제도 점수 등			
공 표	공표방법	DB	간행물	메타자료	DB	간행물	메타자료	DB	간행물	메타 자료
		미공표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kr/metadadata)	여성가족패널 (www.klof.wf.kwdi.re.kr)	여성가족패널 (www.klof.wdi.re.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kr/metadadata)	미공표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
	최근 공표명	미공표	가족실태 조사	-	-	2009여성가족패널조사 사업보고서 및 제2차기 초분 석보고서	-	미공표	가족친화지수 측정 및 분석 결과 보고서	-
	공표시기	미공표	2005	-	-	2006 2007 2008	-	미공표	2006 2007 2008 2009	-
최근 공표시기	미공표	2005.12	-	-	-	-	미공표	2010.04	-	

* 주 1: 통계작성체계의 경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공표 또는 2010년 현재 진행중인 체계에 따라 작성.

② 보육영역 복지통계

통계명칭		보육실태조사			보육시설및이용자통계		
작성기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보육정책과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보육정책과		
통계종류		일반통계-조사통계			일반통계-보고통계		
승인번호		제33107호			제15407호		
승인일자		2004년 10월 19일			2006년 10월 25일		
최초작성연도		2004년			2004년		
작성근거		영유아보육법 제9조			통계법 제18조		
작성목적		초등학생 이하 아동의 보육, 교육서비스 이용실태, 이용만족도, 요구도 파악 및 보육시설 운영의 현황 파악을 통해 보육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보육시설 현황 및 보육아동 현황을 파악하여 보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활용		
조사보고주기		5년			1년		
조사대상	조사단위	아동가구조사-가구(총 4,901가구 7,455명 아동 대상), 보육시설조사-3,201개 어린이집			-		
	조사범위	아동가구조사-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아동으로 총 4,901가구, 7,455명 아동 대상, 보육시설조사			-		
	조사대상시점·기간	조사년도 3월 31일			1월 1일 ~ 12월 31일		
	조사실시기간	아동가구-2009.3.10~2009.5.2, 보육시설-2009.4.27.~2009.6.20			-		
조사보고방법		면접조사			전산시스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통계작성체계		조사기획(보건복지부)-협장조사(아동·가구·육아정책연구소, 보육시설·여성정책연구원)-자료처리(아동·가구·육아정책연구소, 보육시설·여성정책연구원)-결과분석(아동·가구·육아정책연구소, 보육시설·여성정책연구원)-공표(보건복지부)			작성기획(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자료수집(지방자치단체)-통계작성(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결과분석·공표(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		
통계결과작성		SPSS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주요 작성결과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 소요비용, 만족도, 보육 및 유아교육수요율, 보육시설 운영상태, 보육교사근로 및 처우 등			보육아동현원 현황, 보육시설설치 및 운영 현황, 보육시설종사자 현황, 특수보육시설 현황 등		
공표	공표 방법	DB	간행물	메타자료	DB	간행물	메타자료
		미공표	정책연구용역 관리시스템 (www.prism.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kr/meta data)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kr)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stat.mw.go.kr)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stat.mw.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kr/met adata)
	최근 공표명	미공표	전국보육실태조사 - 가구조사 보고서 전국보육실태조사 - 보육시설조사보고서	-	보육통계	보육 통계	-
	공표시기	미공표		-	조사대상년도 익년4월	조사대상년도 익년4월	-
최근 공표시기	미공표	'10.04	-	'10.06	'10.06	-	

③ 복지시설영역 복지통계

통계명칭	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및종사자현황보고			요보호아동현황보고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현황			
작성기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아동복지과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아동복지과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아동권리과			
통계종류	일반통계-보고통계			일반통계-보고통계			일반통계-보고통계			
승인번호	제11740호			제11734호			제11770호			
승인일자	1996년 10월			1994년 10월 29일			1988년-소년소녀가정세대현황보고, 1989년 -국내입양현황보고 승인			
최초작성연도	1999년			1994년			1994년			
작성근거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제4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작성목적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등의 보호아동 및 종사자 현황 파악위해 아동복지시설의 '입소와 퇴소 누계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아동복지정책수립 위한 자료			요보호아동 현황을 파악하여 예산 및 각종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요보호아동의 가정위탁 현황, 입양현황, 소년소녀가정현황을 파악하여 예산 및 각종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보고주기	반기			반기			반기			
보고자료 수집방법	행정조사			행정보고			행정보고			
보고방법	일선기관의 실태조사 보고내용 집계			전산파일			일선기관의 실태조사 보고내용 집계			
통계작성체계	작성기획(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자료수집(지방자치단체)-통계작성(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결과분석·공표(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작성기획(보건복지부)-자료수집(보건복지부)-통계작성(보건복지부)-결과분석·공표(보건복지부)			작성기획(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자료수집(지방자치단체)-통계작성(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결과분석·공표(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통계작성 기준기간	1월 1일 ~ 12월 31일			반기초월1일 ~ 반기 말월 말일			1월 1일 ~ 12월 31일			
통계결과작성	수기집계			전산파일			EXCEL			
주요작성결과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상담소의 보호아동 및 종사자 현황			요보호아동 증가 현황, 원인			요보호아동의 가정위탁 현황, 입양현황, 소년소녀가정현황			
공표	공표방법	DB	간행물	메타자료	DB	간행물	메타자료	DB	간행물	메타자료
		미공표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stat.mw.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kr/metadadata)	미공표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stat.mw.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kr/metadadata)	미공표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stat.mw.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kr/metadadata)
	최근 공표명	미공표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 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및종사자현황보고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및종사자현황보고	미공표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요보호아동현황	미공표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 소년소녀가정현황, 가정위탁현황, 국내입양현황	소년소녀가정현황
	공표시기	미공표	1996-2009	-	미공표	1997~2009	-	미공표	1994~2009 (가정위탁현황) 1989~2009 (국내입양) 1988~2009 (소년소녀가정)	-
	최근 공표시기	미공표	'10.04	-	미공표	'10.05	-	미공표	'10.07 (가정위탁) '10.07 (국내입양) '10.03 (소년소녀가정)	-

2. 아동·청소년 영역

(1) 통계현황

아동과 청소년 영역의 복지통계는 2009년도까지 모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관장하였으나 2010년부터 청소년계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청소년과 관련된 통계는 모두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 영역 복지통계 7종의 통계작성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는 통계 '아동발달분야사회서비스 수요조사', '학대아동보호현황', '아동종합실태조사' 총3종, 여성가족부에서 새롭게 맡게 된 통계 '청소년가치관조사',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청소년상담 지원현황' 총3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담당하는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1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청소년영역 복지통계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아동종합실태조사

'아동종합실태조사'(승인번호 제11774호, 승인일자 2008년 8월 27일)는 보건복지부에서 작성 및 공표하는 통계로, 5년 주기로 시행된다. 2008년 최초실시된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청소년 관련 부처 이관의 결과에 따라 통계명, 작성주기, 작성대상이 2010년 6월 1일자로 바뀌게 된 통계이다. 이 통계의 목적은 아동에 대한 현황과 복지상태(the state of child)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고 제시하여 아동정책 수립과 시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함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대별 발달 욕구와 아동이 처한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대표성 있는 아동지표를 개발함으로써 아동정책의 모니터링과 평가체계의 기반 구축하고, 국제 비교 가능한 아동지표 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국가 신뢰도 향상시키기 위해 작성된다. 조사표본은 확률추출에 의해 이루어지며, 자료수집은 면접조사로 면접원과 이루어지게 되며, 이 조사는 민간용역기관인 메트릭스 리서치에서 수행하였다. 18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일반가구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시점 및 기간은 9월부터 11월말까지 우선적으로 이루어졌다. 공표방법으로는 보도자료와 DB, 간행물이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 익년 1월경 발표된다.

2009년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보고서가 처음 간행되었다.

2) 청소년가치관조사

‘청소년가치관조사’(승인번호 16706호, 승인일자 2007년 11월 13일)는 청소년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실에서 작성되는 통계로서 청소년의 행복감, 사회 전반에 대한 경제, 정치 등의 만족도 및 관심도, 직업관, 인생관, 진로관, 국제관계관, 결혼관 등을 조사하며, 청소년의 사회 인식, 환경 인식에 대한 가치관을 조사한다. 통계의 주목적은 청소년정책 수립의 기본바탕이 되는 청소년들의 행복감, 현재적 관심사, 가치의식, 생활의식 및 사회의식 등의 현주소 파악의 필요성을 근거로 하여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를 기반으로 청소년정책의 새로운 방향 모색 및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자료 활용하기 위해 작성된다. 조사기획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과에서 수행하고, 현장조사, 자료처리, 결과분석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용역으로 실시된다. 조사방법은 전국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률표집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했다. 조사기간은 주로 11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보름간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조사결과는 언론 보도자료, 인터넷, 간행물 형태로 공표된다. 이 통계결과의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중국, 일본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조사’를 2009년 6월 25일 발표했고, 요청시 수시로 raw data를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공개한다. 최근 발간물은 ‘2008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보고서’로 2009년 7월 1일자로 발간했다.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이용할 수 있다.

3)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승인번호 제16701호, 승인일자 2006년 7월 7일)는 여성가족부에서 작성되는 통계로 청소년 유해매체, 유해환경 및 약물, 업소, 성, 폭력, 흡연, 음주, 가출 등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조사항목을 토대로 실시되고 있다. 이 통계의 주목적으로는 청소년의 유해환경접촉에 대한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청소년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표준화된 조사기법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유해환경접촉실태에 대한 시계열에 따른 비교분석 및 청소년정

책방향 제시하기 위해 작성된다. 이런 목적을 토대로 청소년보호의 전반적이고 종합적 측면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소년보호 정책 수립에 있어 청소년의 현황 파악에 중요한 통계자료로 역할을 하고 있다. 1999년 청소년 유해환경종합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 이후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2002년 제2차, 2005년 제3차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연속사업으로 전환하여 2006년 제4차, 2007년 제5차, 2008년 제6차에 이어 2009년 제7차 조사가 완료 되어 2010년 5월 간행물로 공표되었다. 1년 주기로 작성되는 이 통계는 2003년 확률표본으로 설계하여 전국 중, 고등학교 재학생 및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일반청소년의 경우 학교 학생, 위기청소년의 경우 소년원, 쉼터 이용 청소년에게 면접조사로 실시되었다. 작성시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조사실행기간은 9월부터 11월이며, 공표방법으로는 보도자료와 간행물, 인터넷 자료로 제공된다. 본 통계의 간행물명은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이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에 공표된다.

4) 아동발달사회복지서비스수요조사

'아동발달사회복지서비스수요조사'(승인번호 제11780호, 승인일자 2009년 8월 24일)는 보건복지부에서 작성하고 있는 통계로 주목적은 유망사회서비스에 대한 시장조사를 통해 현재의 시장 상황 파악 및 유망 사회서비스에 대한 잠재수요를 추정하여 미래 시장확충 지원을 위한 기초정보 수집하는데 있다. 아동발달서비스의 현황, 문제점 및 관련 프로그램의 파악(개념정의 및 분류체계 확립), 시장규모 추계 및 경제적 효과분석, 유망 아동발달서비스 선정 및 시장조사(수요/공급 측면), 수요·공급 규모, 유효 수요, 공급기관·종사자 특성, 직종 등 유망 아동발달서비스의 산업화 가능성 및 공급전략을 분석한다.

작성주기는 2년으로 확률표본설계로 조사를 실시하고, 중학교 3학년 이하 아동, 청소년을 자녀로 둔 가구를 대상으로 면접조사가 이루어진다. 조사시점은 7월부터 10월말이고 현장조사, 자료처리 및 결과분석은 민간용역기관 닐슨코리아를 통해 실시하였다. 본 통계의 간행물은 '유망사회서비스수요공급조사'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w.go.kr)에서 제공된다.

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승인번호 제40201호, 승인일자 2009년 6월 24일)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통계자료로 청소년에 대한 전반적인 인권, 침해관련, 피해사항, 생존권과 보호권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이 통계의 주목적으로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의 생산을 통해 국제기준대비, 아동·청소년의 인권현황과 인권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기 위해 작성되고 있다.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을 구분하여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통계는 2년 주기였던 것이었지만 2010년 6월 1일자로 1년 주기로 바뀌면서 그 주제를 격주로 나눠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1년은 생존·보호권, 다음해에는 발달·참여권 주제영역으로 조사된다. 2009년 최초 실시하였던 통계로 확률표본설계 조사방법으로 교육통계정보센터의 학교 DB를 통해 표본으로 설계된 초, 중, 고등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시점은 6월부터 7월 말까지 진행되었다. 공표방법은 보도자료, DB, 간행물이며, 보도자료는 언론을 통해 홍보하며, DB는 2010년 3월 20일 ‘국제기준대비 한국 아동·청소년인권수준연구 IV - 2009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로 자료를 제공했다. 이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archive.nypi.re.kr)에서 이용할 수 있다. 본 통계의 간행물명은 ‘2009 한국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생존권·보호권’으로 익년 3월 발행되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nypi.re.kr)에서 제공된다.

6) 학대아동보호현황

‘학대아동보호현황’(승인번호 제11764호, 승인일자 2006년 7월 27일)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 접수된 학대아동현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된 현황 통계이다. 이 통계의 주요 목적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한 학대아동보호현황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아동보호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수립 및 방안모색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되고 있다. 1년마다 자료를 수집하는 통계자료로 매년 학대아동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과 증가하는 이유 및 원인, 조치사항을 파악할 수 있으며, 매년 비교할 수 있는 시계열 비교자료로 학대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을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 신고 및 접수된 피해사례를 종합하여 간행물로 공표되고 있는데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로 매년 4~5월에 발표된다. 이 공표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www.korea1391.org)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 자료는 통계작성 정부기관에서의 아동관련 기초정책 수립 및 연구소, 대학, 관련 학회 및 기관에서 유용한 자료로 이용된다.

7) 청소년상담지원현황

‘청소년상담지원현황은’(승인번호 제16703호, 승인일자 2006년 8월 29일) 전국 시도에 있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수를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종합하여 여성가족부에서 1년주기로 공표되는 보고통계이다. 이 통계의 주요 목적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한 청소년 고민, 고충 등 상담내용과 상담 청소년의 학업여부, 연령 등을 파악하여 청소년의 상담경향을 분석하고,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되고 있다. 본 통계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전산망(CYS-net) 통합상담지원 전산망의 전수를 통해 보고되며, 공표방법은 보도자료, 간행물이다. 본 통계의 간행물명은 ‘청소년정책통계집’,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보건복지가족백서’ 3종이고, 보건복지부 통계포털(stat.mw.go.kr)에서 제공된다.

(2) 통계비교

① 아동·청소년실태영역 복지통계

통계명칭		아동종합실태조사			청소년가치관조사		
작성기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아동복지과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과		
통계종류		일반통계-조사통계			일반통계-조사통계		
승인번호		제11774호			제16706호		
승인일자		2008년 8월 27일			2007년 11월 13일		
최초작성연도		2008년			2007년		
작성근거		청소년기본법 제49조(아동복지법 근거 추진중)			청소년기본법 제49조		
작성목적		아동에 대한 현황과 복지상태(the state of child)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고 제시하여 아동정책 수립과 시행의 기초자료 활용			우리나라 청소년 가치관에 관한 시계열적 자료를 추적하고 한국과 인접한 중국·일본 청소년의 가치관과 비교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정책 수립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거시적 관점에서 사회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주기		5년			2년		
조사대상	조사단위	가구			개인		
	조사범위	18세 이하의 아동 및 아동이 있는 일반가구/저소득층가구			전국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남녀 청소년		
	조사대상시점	9년 1일~11월 30일			11월 1일~11월 15일		
	조사실시기간	9월 1일~11월 30일			11월 1일~12월 20일		
조사방법		면접조사			설문조사		
통계작성체계		작성기획(보건복지부)-용역기관(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자료수집 및 통계작성(조사원: 한국갤럽)-결과분석-공표(보건복지부)			작성기획(여성가족부)-자료수집 및 통계작성(전문용역기관)-결과분석-공표(여성가족부)		
통계결과작성		SPSS			SPSS		
주요작성결과		아동·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요인, 가정환경, 학업성취도, 사회성, 정서, 건강, 복지, 진로준비 등			인생 및 여가관, 이성 및 결혼관, 미래관, 직업관, 가족관, 학교관, 친구관계, 참여의식, 신뢰감, 국가관, 리더십, 공동체·인권의식 등		
공표	공표방법	DB	간행물	메타자료	DB	간행물	메타자료
		미공표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stat.mw.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kr/metadata)	미공표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kr/metadata)
	최근 공표명	미공표	아동청소년종합 실태 조사	-	미공표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
	공표시기	미공표	2009.01	-	미공표	2008	-
	최근 공표시기	미공표	2010.05	-	미공표	2009.07	-

통계명칭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작성기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보호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계종류		일반통계-조사통계			일반통계-조사통계		
승인번호		제16701호			제40201호		
승인일자		2006년 7월 7일			2009년 6월 24일		
최초작성연도		1999년			2009년		
작성근거		청소년보호법 근거			청소년기본법 제49조		
작성목적		청소년의 유해환경접촉에 대한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청소년정책의 기초자료 제공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자료의 생산을 통해 국제기준대비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현황과 인권정책 수립 위함		
조사주기		1년			주제별 1년(개별 2년주기)		
조사대상	조사단위	개인			개인		
	조사 범위	전국 중고등학교 재학생 일반청소년 및 위기청소년 16,000여명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고등학교		
	조사대상시점·기간	1월 1일~12월 30일			6월 29일~11월 30일		
	조사실시기간	10월 21일~11월 30일			6월 29일~7월 24일		
조사방법		면접조사			면접조사		
통계작성체계		작성기획(여성가족부)-자료수집(메트릭스연구소 전문기관)-통계작성(여성가족부)-결과분석·공표(여성가족부)			작성기획(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자료수집 및 통계작성(메트릭스리서치)-결과분석·공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계결과작성		SPSS			-		
주요 작성결과		청소년 가정·학교생활 실태와 유해환경 접촉, 유해행동 실태 등			청소년의 차별 경험, 차별 유형, 차별 이유 등		
공표	공표방법	DB	간행물	메타자료	DB	간행물	메타자료
		미공표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kr/meta data)	미공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www.nypi.re.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kr/metada ta)
	최근 공표명	미공표	청소년유해환경 접촉종합실태조사	-	미공표	2009 한국 아동·청소년인권 실태조사 생존권·보호권	-
	공표시기	미공표	2005.04 2006.05 2007.05 2008.04 2009.03	-	미공표	2010.03	-
	최근 공표시기	미공표	2010.05	-	미공표	2010.03	-

②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영역 복지통계

통계명칭		아동발달사회복지서비스수요조사			학대아동보호현황			청소년상담지원현황				
작성기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사업과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아동권리과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아동권리과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자립지원과				
통계종류	일반통계-조사통계	일반통계-보고통계			일반통계-보고통계			일반통계-보고통계				
승인번호	제11780호	제11764호			제11764호			제16703호				
승인일자	2008년 8월 24일	2006년 7월 27일			2006년 7월 27일			2006년 8월 29일				
최초작성연도	2008	2006년			2006년			2006년				
작성근거	없음	아동복지법 근거 복지지원 및 보호			아동복지법 근거 복지지원 및 보호			청소년복지법 근거				
작성목적	유망사회서비스에 대한 시장조사를 통해 현재의 시장 상황 파악 및 유망사회서비스에 대한 잠재수요를 추정, 미래 시장 확충 지원을 위함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한 학대아동보호현황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아동보호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수립 및 방안모색을 위한 자료로 활용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한 학대아동보호현황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아동보호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수립 및 방안모색을 위한 자료로 활용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한 청소년 고민, 고충 등 상담내용과 상담 청소년의 학교급, 연령, 학업여부 등을 파악하여 청소년의 상담경향을 분석하고,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조사보고주기	2년	1년			1년			1년				
조사대상	조사단위	가구			개인			개인				
	조사범위	전국 중학교3학년 이하 아동, 청소년이 있는 가구 전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사례			전국 청소년상담원과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이용한 청소년				
	조사대상시점·기간	7월 20일~10월 31일			1월1일 ~ 12월 31일			1월1일 ~ 12월 31일				
	조사실시기간	7월 20일~10월 31일			-			1월1일 ~ 12월 31일				
조사·보고방법	면접조사			신고접수된 사례를 종합			CYS-Net 종합정보망					
통계작성체계	작성기획(보건복지부)-자료수집(닐슨코리아 전문기관)-통계작성(보건복지부)-결과분석·공표(보건복지부)			작성기획(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자료수집(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통계작성(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결과분석·공표(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작성기획(여성가족부)-자료수집(한국청소년상담원)-통계작성(한국청소년상담원)-결과분석·공표(여성가족부)					
주요 작성결과	아동발달서비스의 현황, 문제점, 시장 규모 추계 및 경제적 효과 분석, 유망 아동발달서비스 선정 및 시장조사 등			아동학대사례 발생현황 및 보호율			청소년상담현황, 청소년전화1388이용율, 상담내용, 주제, 사후처리					
통계결과작성	SPSS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망			통합정보망 전수					
공표	공표방법	DB	간행물	메타자료	DB	간행물	메타자료	DB	간행물		메타자료	
		미공표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stat.mw.go.kr)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 (kosis.kr/metadata)	미공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www.korea1391.org),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stat.mw.go.kr)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 (kosis.kr/metadata)	미공표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stat.mw.go.kr)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 (kosis.kr/metadata)	
	최근공표명	미공표	유망사회서비스수요공급 조사	-	미공표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	미공표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아동청소년백서	청소년통계	-
	공표시기	미공표	2009.01	-	미공표	2007.05 2008.05 2009.05	-	미공표	08.10	06.11 07.11 08.11	08.05 09.05	-
최근공표시기	미공표	2009.01	-	미공표	'10.04	'09.10	미공표	'09.10	'09.11	'10.05	-	

3. 노인·장애인 영역

(1) 통계현황

노인·장애인 영역 진단대상 통계는 노인실태조사, 노인학대현황, 장애인편의 시설설치현황조사, 등록장애인현황,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 장애수당수급자현황 등 총9종으로, 통계작성별로 살펴보면 조사통계 5종, 보고통계 4종이며, 통계작성기관별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담당하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하는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 2종을 제외한 나머지 7종은 모두 보건복지부에 의해 작성되고 있다. 노인·장애인 영역 통계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사업현황보고

‘노인복지사업현황보고’(승인번호 11736호, 승인일자 1996년 10월 16일)는 작성주기가 1년인 보고통계로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및 종사자 현황을 파악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예산 및 각종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다. 이때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상 시·군·구에 신고된 시설로 한정된다. 통계작성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요양보험운영과에서 작성기획을 담당하고, 시설에서 시·군·구로 보고한 자료를 시도에서 취합하여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에 보고하며, 요양보험운영과에서는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결과분석과 공표를 수행한다. 최초작성연도는 1996년 10월 통계청의 승인에 의해 ‘노인복지시설 수용노인 및 종사자 현황보고’가 작성되기 시작하여 2000년 12월부터 ‘노인복지사업현황보고’로 통계명칭이 변경되었다(보건복지부, 2003). 작성주기도 ‘분기’에서 ‘연간’으로 변경되었고 자료수집은 행정보고를 통해 전산파일형태로 보고된다.

본 통계의 공표는 보도자료, DB, 간행물, 메타자료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DB의 경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서 1년마다 제공되며, 간행물의 경우 간행물명은 ‘노인복지시설현황’, ‘보건복지통계연보’ 등으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stat.mw.go.kr) 및 보건복지부 통계포털(stat.mw.go.kr)에서 1년마다 제공된다. 메타자료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metadata)에서 제공된다.

2) 노인학대현황

‘노인학대현황’(승인번호 제11767호, 승인일자 2007년 2월26일)은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 및 상담된 사례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노인학대 현황을 분석하여 노인보호 정책수립을 위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제공을 목적으로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의해 2005년 처음 조사가 실시된 이후 2007년 국가통계로 승인되었으며 작성주기가 월별인 보고통계이다. 본 대상통계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4년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의 시행에 따라 설립된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의해 학대시의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과 동시에 은폐되어 있는 학대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여 노인 학대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지방노인전문보호기관에서 노인학대 상담사업 전산시스템(APM : Abuse Prevention Management)을 통하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월별 단위로 보고하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계된 통계분석 내용이 익년 5월에 보고서로 발간된다. 본 통계의 공표는 보도자료, 간행물, 메타자료의 형태로 제공되는데, 간행물명은 전국노인학대현황보고서(2005), 전국노인학대 상담사업현황보고서(2006, 2007), 노인학대현황보고서(2008)로 보건복지부 통계포털(stat.mw.go.kr) 및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www.noinboho.or.kr)를 통해 매년 제공되며, 메타자료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metadata)에서 제공된다. 주요 통계내용은 노인학대 상담 신고접수 현황, 노인학대유형 현황, 노인학대 현장조사 및 종결사례 현황, 학대피해노인 현황, 학대행위자 현황, 학대발생 원인, 서비스 제공현황, 교육 및 홍보사업 현황 등이다.

3) 노인실태조사

‘노인실태조사’(승인번호 제11771호, 승인일자 2008년 5월 22일)는 3년마다 작성되는 조사통계로 노인복지법 제5조(노인실태조사)에 근거하여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노인 보건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기본지표의 생산을 목적으로 작성되는 국가통계이다. 본 조사를 통해 현재와 미래

노인층의 세대 변화에 따른 특성과 욕구의 변화를 예측하고, 여성·독거·농어촌 노인 등 정책적 관심을 요하는 특정 노인집단을 파악하며, 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관한 종단적 연구를 위한 패널을 구축하여 축적된 조사결과를 통하여 노년기의 장기화로 인한 노화과정의 변화 및 인구고령화로 인한 사회변화의 양상 관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대상통계의 연혁을 살펴보면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총4회 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처음 1994년도와 1998년도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자체 실시하였고 2004년도 조사부터 보건복지부로 작성기관이 변경되었다. 이후 노인복지법 개정(2007년 1월)으로 조사주기가 3년으로 변경되었고 2008년 5월 국가통계로 승인되면서 통계명칭이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서 '노인실태조사'로 변경되었다. 조사대상은 2008년도 조사를 기준으로 볼 때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 중에서 표본조사가 실시된 10% 표본조사구, 기숙사, 특수시설 조사구, 섬지역 조사구를 제외한 조사구에 거주하는 2008년 6월 30일 기준 만 60세 이상의 노인이며 조사기간은 2008년 8월 10일부터 2009년 1월 11일까지 약6개월이 소요되었다. 통계결과작성은 SPSS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행된다. 조사표는 노인개인용, 동거자녀용, 가구용 조사표로 구성된 기초조사표와 부가조사표로 이루어져 있다. 노인개인조사표는 노인의 일반적 특성 및 거주실태, 가족 및 사회적 관계와 상호지원, 경제상태 경제활동, 건강 및 보건의료실태, 기능상태 및 간병수발실태, 여가 및 사회활동, 사회복지서비스, 노후생활과 삶의 질, 생활환경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노인가구조사표는 가구원의 일반적 특성과 경제상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거자녀조사표는 동거자녀의 일반적 특성, 부모와의 동거실태,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과 태도로 구성되어 있다. 부가조사표는 전체 기초조사 대상자를 허약노인, 전허약노인, 비허약노인의 선정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제 특성을 비교하고 이들 중 일부 대상자를 추출하여 활력징후, 신체계측, 신체 균형, 호기량, 증상경험, 약물복용, 가족기능, 가정환경, 자아통합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의 조사표를 이용하여 전문면접조사원이 방문면접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가 완료된 설문은 개별 면접원 관리 실사지도원이 1차 검수를 실시하고 오류를 수정한 뒤 연구진의 2차 검수과정을 거쳤으며 1차 검수 및 2차 검수를 거친 설문지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전화 검증작업을 실시한다. 본 통계의 공표는 보도자료, DB, 간행물, 메타자료의 형태로 제공되는데, DB의 경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서 2004년 전국노인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DB가 제공되고,

간행물의 경우 2004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정책보고서,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와 보건복지부 통계포털(stat.mw.go.kr)에서 제공되고 있다. 메타자료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metadata)에서 제공된다.

4) 고령화연구패널조사

‘고령화연구패널조사’(승인번호 제33602호, 승인일자 2006년 3월 30일)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중·고령인구의 사회경제학적 활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여 향후 고령사회로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사회경제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된다. ‘통계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작성되는 국가통계이다. 본 대상통계는 격년으로 시행되는 조사통계로 2006년 처음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년마다 짝수년도에는 기본조사를 수행하고, 필요시 홀수년도에는 기본조사에 포함하지 않는 주제와 내용을 담은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5년 초부터 패널조사를 위한 기초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총3차에 걸친 예비조사(2005년 10월, 2006년 2월, 2006년 4월~5월)를 거쳐 2006년 제1차 기본조사를 실시하여 만45세이상 약 10,255명의 패널자료를 구축하였으며, 2007년 직업력조사, 2008년 12월 제2차 기본조사를 완료하였다. 2008년 제2차 기본조사까지 조사기획, 현장조사, 자료처리, 결과분석, 공표에 이르는 전과정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수행하였고 일부 현장조사 및 자료처리 단계는 TNS Korea와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하였다. 2010년부터는 한국고용정보원 연구개발본부 고용정보분석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 가운데 섬지역 조사구와 시설단위 조사구를 제외한 보통조사구 및 아파트조사구를 추출단위 조사구로 설정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45세(1962년 이전) 이상의 중고령자 개인을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였다. 이들 패널을 대상으로 이후 2007년 직업력조사와 2008년 2차기본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방법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대인면접방식인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가 활용되었고, 2007년 직업력조사는 응답자가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캘린더와 CAPI를 혼합한 방식으로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은 네덜란드

통계청이 개발한 블레이즈(Blaise)를 사용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크게 인구, 가족, 건강, 고용 소득, 자산, 주관적 기대감 및 삶의 만족도 등 7가지 조사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8년 2차 기본조사에는 사망자를 대상으로 한 대리응답자 및 사망자 기본정보, 사망 당시의 건강과 고용, 유산과 부채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조사기간은 2008년을 기준으로 2008년 7월부터 11월말까지 이루어졌으며, 최근 공표시기는 2009년 7월이다. 본 통계의 공표방법은 DB, 간행물이며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www.kli.re.kr)에서 보고서와 DB를 제공하고 있다. 본 통계의 간행물명은 '고령화연구패널기초분석보고서'이며, 조사 실시 이후 익년11월에 공표된다.

5)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승인번호 제11735호, 승인일자 1995년 6월 9일)는 1997년 4월 10일 제정 공포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편의증진 관련 정책입안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조사통계이다. 본 통계의 연혁을 살펴보면 1983년부터 시작되어 1995년 6월 9일 국가통계로 승인되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1998년부터 5년 전수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조사대상은 동법에서 편의시설 설치를 규정한 건축물 107,730개소이다.

각 조사단계별 업무주체에 있어서 2008년 이전 조사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직접 조사를 수행하였으나 2008년도부터는 외부조사원으로 장애인이 참여하여 직접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획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수행하고, 현장조사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및 지자체 고용조사원이 공동으로 수행하며, 결과분석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실시한다. 마지막 공표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에서 수행한다. 본 통계결과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으로 자동 집계되어 작성된다. 본 통계의 공표는 보도자료, DB, 간행물, 메타자료의 형태로 제공되는데, DB의 경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서 1998년, 2003년 2회 제공되고 있으며, 간행물의 경우 5년마다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와 1년마다 보건복지통계연보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와 보건복지부

통계포털(stat.mw.go.kr)에서 제공되고 있다. 메타자료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metadata)에서 제공된다.

6) 등록장애인현황

‘등록장애인현황’(승인번호 제11767호, 승인일자 2006년 7월 27일)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에 근거하여 등록장애인의 현황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장애인정책의 수립에 기여하고 각종 장애인복지시책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에서 분기마다 작성되는 보고통계이며 2006년 국가통계로 승인되었다. 본 통계의 모집단은 전국 등록 장애인 전수이며 1988년 장애인 등록제도가 실시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통계내용에는 장애유형별, 등급별, 연령별 장애인 현황 등이 포함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에서 통계의 작성기획, 결과분석, 공표를 담당하며 자료수집과 통계작성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보고된다. 보고자료 수집방법은 등록/인허가/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전산시스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자동집계되어 보고된다. 본 통계의 공표는 DB, 간행물, 메타자료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DB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서 제공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와 보건복지부 통계포털(stat.mw.go.kr)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분기마다 엑셀 형태로 제공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www.kosis.kr)에서는 1999년부터 2007년까지 1년 마다 제공되고 있다. 간행물은 보건복지 통계포털(stat.mw.go.kr)에서 1년 마다 보건복지통계연보에 수록되어 제공되고 있다. 메타자료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metadata)에서 제공된다.

7)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실태조사’(승인번호 제11732호, 승인일자 1990년 12월 5일)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조사)에 근거하여 장애유형별 장애원인 및 장애특성을 파악하고, 장애인의 복지욕구·복지서비스 수혜 실태 등을 파악함으로써 장애인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활용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에 의해 작

성되는 조사통계이다. 연혁을 살펴보면 장애인실태조사는 1980년 처음 조사가 실시된 이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까지는 5년 주기로 6차례 장애인실태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08년부터 장애인복지법 제31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에 근거하여 조사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2008년부터 조사 대상의 경우 조사구 가구의 가구원 전원을 조사하던 종래의 방식에서 현재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DB에 기재된 장애인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표본조사는 등록장애인 2,137,226명(2008년 3월말 기준)을 모집단으로 표본추출한 208개 읍면동의 등록장애인 12,342명 중에서 총7,000명에 대해서 조사가 완료되었다. 주요 조사 내용은 장애인의 일반특성, 15가지 장애유형의 장애특성, 보건·의료, 일상생활지원, 장애인보조기구, 보육·교육, 취업 및 직업생활, 사회 및 여가활동, 결혼생활·여성장애인, 생활만족도 및 폭력차별경험, 주거, 복지서비스, 경제상태 등이다. 본 통계의 공표는 보도자료, DB, 간행물, 메타자료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DB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서 1995년, 2000년, 2005년 자료가 제공되고 있으며, 간행물의 경우 간행물 명칭은 장애인실태조사이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및 보건복지부 통계포털(stat.mw.go.kr)에서 2000년, 2005년, 2008년도 간행물이 제공되고 있다.

8)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승인번호 제11320호, 승인일자 2008년 12월 16일)는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 현황, 체육시설, 편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하여 생활체육의 향후 정책방향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장애인체육과에 의해 1년마다 작성되는 조사통계로 2005년 처음 조사가 실시된 이후 2008년 12월 국가통계로 승인되었다. 주요 조사 내용은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실태, 인식, 체육시설에 대한 인식, 인구통계학적 사항 등이 포함된다. 통계작성의 대상은 전국 16개 시도지부에 등록된 만 10세 이상 장애인 약1,523명이며, 면접조사와 전화조사 방식에 의해 조사되었다. 조사기간은 2008년도를 기준으로 12월 1일부터 12월 20일이고 최근 공표시기는 2008년 12월이다. 공표방법은 간행물, 메타정보 등이다. 본 통계의 간행물명은 ‘장애인 생활

체육 참여실태 조사보고서'이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메타정보(www.kosis.kr/metadata)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에서 제공되고 있다.

9) 장애수당수급자현황

'장애수당수급자현황'(승인번호 제11762호, 승인일자 2006년 7월 27일)은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에 근거하여 장애수당 수급자 파악을 통한 효율적 정책 수립 및 지원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강화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연금도입 TF에서 반기마다 작성되는 보고통계이다. 보고자료 수집방법은 행정보고이고 2006년부터 행정보고가 실시되었으며 전산시스템 '행복e음' 사회복지통합관리를 통하여 반기 초 월1일부터 말월말일까지 통계작성 기준기간에 따라 전산시스템내에서 자동집계되어 보고된다. 주요 내용은 장애경중별, 시도별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시설대상자, 차상위자별 장애수당 수급자 수 등이다. 공표방법은 DB와 간행물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서 DB(2007년 장애수당 수급자 수)와 메타자료가 제공되며 보건복지부 통계포털(stat.mw.go.kr)에서 간행물 보건복지통계연보가 1년마다 공표되고 있다.

(2) 통계비교

① 노인영역 복지통계

통계명칭	노인실태조사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노인복지사업현황보고			노인학대현황				
작성기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노인정책과			한국고용정보원 연구개발본부 고용정보분석센터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요양보험운영과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노인정책과				
통계종류	일반통계-조사통계			일반통계-조사통계			일반통계-보고통계			일반통계-보고통계				
승인번호	제11771호			제33602호			제11736호			제11767호				
승인일자	2008년 5월 22일			2006년 3월 30일			1996년 10월 16일			2007년 2월 26일				
최초작성연도	2004년			2006년			1996년			2005년				
작성근거	노인복지법 제5조			통계법 제8조			없음			없음				
작성목적	노인보건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기본지표 생산을 위한			급속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중고령인구의 사회경제학적 활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고 사회경제정책을 수립, 시행에 활용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및 중장사자 현황을 파악하여 예산 및 각종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노인학대현황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조사·보고주기	3년			2년			1년			1년				
조사·보고대상	조사보고단위	개인 (15,146명), 가구 (12,567가구)			개인 (1차 10,255명, 2차 8,688명)			시설			개인			
	조사범위	개인조사: 2008년6월30일 기준 만60세이상 노인 가구조사: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시설조사구(기숙사, 특수시설, 섬지역)를 제외한 일반조사구에 만60세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가구			전국 6,171개 가구(제주도 제외)에 거주하는 45세 이상 중고령자			전국의 노인복지시설			전국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노인학대 사례			
	조사보고대상 시점기간	6월 30일			2008년 6월 1일~ 2008년 11월 30일			12월 31일			작성대상 월1일~말일			
	조사보고기간	2008년 8월~2009년 1월			2008년 6월 1일~ 2008년 11월 30일 (매 짝수년도 조사)			1월 1일~2월 8일			작성대상 월1일~말일			
조사·보고방법	면접조사			면접조사, CAPI			행정보고			행정보고				
통계작성체계	조사기획(보건복지부/계명대학교)-현장조사(한국리서치)-자료처리(한국리서치)-결과분석(계명대학교)-공표(보건복지부)			조사기획(한국노동연구원)-현장조사및자료처리(한국노동연구원/TNS Korea)-결과분석(한국노동연구원)-공표(한국노동연구원)			작성기획(보건복지부)-자료수집(시도)-통계작성(보건복지부)-결과분석·공표(보건복지부)			작성기획(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자료수집(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통계작성(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결과분석·공표(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통계결과작성	SPSS			Blaise			전산파일			APM				
주요 작성결과	노인의 일반적 특성 및 거주실태, 가족 및 사회적 관계와 상호지원, 경제상태, 경제활동, 건강 및 보건의료실태, 기능상태 및 간병수발실태, 여가 및 사회활동, 사회복지서비스 등			노동시장 참여 및 은퇴, 소득·소비 형태, 건강, 가족관계, 사회보장제도의 효과 등			시도별 노인복지시설별 시설 수, 입소자수, 퇴소자수, 연말현재재소자 수 등			노인 학대 신고건수, 학대유형, 학대행위자 유형 등				
공표	공표 방법	DB	간행물	메타자료	DB	간행물	메타자료	DB	간행물	메타자료	DB	간행물	메타자료	
		미공표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stat.mw.go.kr)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 (kosis.kr/metadata)	한국노동연구원 (www.kli.r.e.kr)	한국노동연구원 (www.kli.r.e.kr)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 (kosis.kr/metadata)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 (kosis.kr)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stat.mw.go.kr)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 (kosis.kr/metadata)	미공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www.noinboho.or.kr),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stat.mw.go.kr)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 (kosis.kr/metadata)	
	최근 공표명	미공표	노인실태조사 보고서	-	고령화 연구패널 조사	제2차 기본조사 실시 보고서	-	노인복지사업현황 보고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 통계연보	-	미공표	노인학대현황 보고서	-
	공표 시기	미공표	2008	-	2008-2010	-	-	1994-2009	2001-2010	1956-2010	-	미공표	2007-2008	-
최근 공표시기	미공표	2009.02	-	2010.03	-	-	2009	2010.04	-	-	미공표	2009.06	-	

② 장애인영역 복지통계

통계명칭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			
작성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장애인체육과			
통계종류		지정통계-조사통계			일반통계-조사통계			일반통계-조사통계			
승인번호		제11732호			제11735호			제11320호			
승인일자		1990년 12월 5일			1995년 6월 9일			2008년 12월 16일			
최초작성연도		1990년			1995년			2005년			
작성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1조(조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실태조사)			없음			
작성목적		장애유형별 장애인인 및 장애특성을 파악하고, 장애인의 복지욕구·복지서비스 수혜 실태 등을 파악함으로써 장애인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편의시설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 자료로 활용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 현황, 체육시설, 편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하여 생활체육의 향후 정책방향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조사주기		3년			5년			1년			
조사대상	조사단위	개인			건축물 단위			개인			
	조사범위	개별조사: 2008년 3월말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DB에 기재된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1,068 개시설(장애인, 이동, 노인, 모부자, 부랑인, 정신요양, 한센병, 결핵내 등록장애인)			연도말 현재, 1998년 4월 이후 신, 증, 개축 및 용도변경 등 건축행위 발생시설의 편의시설(음, 먼, 등 및 공공행정기관 청사 등은 1998년 이전 건물 포함)			전국 등록 장애인			
	조사대상시점기간	2008년 3월			2008년 5월 1일~2009년 4월 30일			2008년 11월 1일~2008년 12월 31일			
	조사실시기간	2008년 9월 6일~2008년 11월 30일			2008년 2월 1일~2008년 11월 30일 (실제: 2008년 9월 1일~2008년 12월 31일)			2008년 12월 1일~2008년 12월 20일			
	조사방법	면접조사, 우편조사			현장방문조사			면접조사, 전화조사			
통계작성체계		조사기획(보건복지부 및 보건사회연구원)-현장조사(보건사회연구원)-자료처리(보건사회연구원)-결과분석(보건사회연구원)-공표(보건복지부)			조사기획(한국장애인개발원)-현장조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및 지체고용조사원)-자료처리(한국지체장애인협회)-결과분석(한국장애인개발원)-공표(보건복지부)			조사기획(대한장애인체육회/퍼포먼스웨이컨설팅)-현장조사(퍼포먼스웨이컨설팅)-자료처리(퍼포먼스웨이컨설팅)-결과분석(대한장애인체육회/퍼포먼스웨이컨설팅)-공표(대한장애인체육회)			
통계결과작성		SPSS			사회복지통합관리망			SPSS			
주요 작성결과		장애인의 일반특성, 15가지 장애유형의 장애특성, 보건의료, 일상생활지원, 장애인보조기구, 보육교육, 취업 및 직업생활, 사회 및 여가활동, 결혼생활, 여성장애인 생활만족도 및 폭력차별경험, 주거, 복지서비스, 경제상태 등			시설유형별 편의시설 설치율			장애인생활체육 참여현황, 체육시설, 편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공표	공표방법	DB	간행물	메타자료	DB	간행물	메타자료	DB	간행물	메타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kr)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stat.mw.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kr/metadata)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kr)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stat.mw.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kr/metadata)	미공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kr) 기획재정부 공공기관경영정보 공개시스템 (www.alio.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kr/metadata)	
	최근 공표명	장애인 실태조사 보고서	장애인 실태조사 보고서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조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조사 보고서	보건복지 통계연보	-	미공표	장애인 생활체육참여 실태조사보고서	-
	공표시기	1995 2000 2005	2000 2005 2008	-	1998- 2003	2008	1983- 2007	-	미공표	2008	-
최근 공표시기	2009.04	2009.04	-	2003	2009.05	2007.10	-	미공표	2009.01	-	

통계명칭		등록장애인현황			장애수당수급자현황			
작성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연금도입 TF				
통계종류	일반통계-보고통계			일반통계-보고통계				
승인번호	제11761호			제11762호				
승인일자	2006년 7월 27일			2006년 7월 27일				
최초작성연도	2006년			2006년				
작성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 (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장애수당)				
작성목적	등록 장애인 현황과약을 통한 효율적 정책수립 및 지원			장애수당 수급자 파악을 통한 효율적 정책수립 및 지원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강화				
보고주기	분기			반기				
보고자료 수집방법	등록/인-허가/심사			행정보고				
보고방법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통계작성체계	작성기획(보건복지부) -자료수집(시도) -통계작성(보건복지부) -결과분석·공표(보건복지부)			작성기획(보건복지부) -자료수집(시도) -통계작성(보건복지부) -결과분석·공표(보건복지부)				
통계작성 기준기간	해당분기말일			반기초월1일~말일말일				
통계결과작성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주요 작성결과	등록 장애인 수			장애수당 수급자 수				
공표	공표방법	DB	간행물		메타자료	DB	간행물	메타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kr)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stat.mw.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kr/ metadata)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kr)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stat.mw.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kr/ metadata)
	최근 공표명	등록장애인 현황	보건복지 통계연보	등록장애인 현황	-	장애수당수급자 현황	장애수당수급자 현황	-
	공표시기	1999 -2007	2006 2007 2008 2009	2005.09 2005.12 2007.03 2007.06 2007.09 2007.12 2008.12 2009.06 2009.12	-	2007	2007 2008 2009	-
최근 공표시기	2007	2009.10	2010. 05	-	2008.12	2010.9	-	

제 2 절 통계작성조직기반

복지통계의 통계작성조직체계는 조사통계의 경우 주로 정부 부처에서 통계작성의 기획을 담당하고 이후 자료수집, 통계작성 등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민간조사회사를 통해 용역으로 수행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결과분석단계에서 결과보고서 작성은 주로 정부 부처와 조사용역기관에서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일부 조사통계의 경우 결과분석, 발간물 내용구성시 조사용역기관에 주로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앙 부처 통계담당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지적되기도 한다. 마지막 공표단계에서는 대부분 통계담당 정부부처의 인터넷 사이트에 결과파일을 게시하고 동시에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원자료, 설문조사표 등을 일부 제공하고 있으나 공개되는 원자료와 설문조사표가 일부에 국한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보고통계의 경우는 과거와 달리 주로 행정전산망을 통해 모든 통계작성체계에서 자동으로 집계되고 있다. 품질진단 대상 통계 24종의 영역별 통계작성기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족·복지시설 영역

(1) 보고통계

가족·복지시설 영역의 보고통계는 보육시설및이용자통계, 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및종사자현황보고, 요보호아동현황보고,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현황 등 4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가족·아동시설 영역의 통계작성 기관·부서를 작성조직과 관련하여 ① 작성기획, ② 자료수집, ③ 통계작성, ④ 결과분석·공표의 단계별로 각각 살펴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가족·복지시설영역 보고통계의 통계작성 기관·부서

보고통계명	단계별 통계작성 기관·부서			
	① 작성기획	② 자료수집	③ 통계작성	④ 결과분석·공표

보육시설 및 이용자 통계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보육정책과	지방자치단체, 보육시설	한국사회 서비스관리원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보육정책과
아동복지시설보호 아동및종사자현황 보고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아동복지과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아동복지과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아동복지과
요보호아동 현황보고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아동복지과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아동복지과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아동복지과
가정위탁국내입양 소년소녀가정현황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아동권리과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아동권리과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아동권리과

- 보육시설 및 이용자통계의 통계작성 기관·부서
 - 작성기획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보육정책과에서 통계서식 등 작성기획을 담당하고 전국 시·군·구 보육담당자 및 보육시설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보육시설 및 이용자 현황 자료를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에서 자료를 추출하여 작성하며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보육정책과에서 결과를 분석하여 공표한다.
- 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및종사자현황의 통계작성 기관·부서
 - 작성기획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아동복지과에서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료를 수집하며 통계의 작성, 결과분석 및 공표는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아동복지과에서 수행한다.
- 요보호아동현황보고의 통계작성 기관·부서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아동복지과에서 작성기획을 담당하고, 전국 요보호아동신고사례 및 보호현황실태를 바탕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전국 시도 자료를 취합한 이후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아동복지과에서 통계자료를 작성하며 결과를 분석하여 공표를 수행한다.
-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현황의 통계작성 기관·부서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아동권리과에서 작성기획을 수행하고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통계작성, 결과

분석 및 공표는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아동권리과에서 수행한다.

(2) 조사통계

가족·복지시설 영역의 조사통계는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패널조사, 기업및공공기관의가족친화지수측정, 보육실태조사 등 4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복지시설 영역 조사통계의 통계작성 기관·부서를 직접수행여부를 기준으로 ① 조사기획, ② 현장조사, ③ 자료처리, ④ 결과분석, ⑤ 공표의 단계별로 각각 살펴보면 다음 <표5>와 같다.

<표 5> 가족·복지시설영역 조사통계의 통계작성 기관·부서

조사통계명	구분	단계별 통계작성 기관·부서				
		①조사기획	②현장조사	③자료처리	④결과분석	⑤공표
가족실태조사	직접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정책과	-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정책과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정책과
	용역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매회 변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매회 변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매회 변경)	-
여성가족패널조사	직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용역	-	한국리서치 (매회 변경)	한국리서치 (매회 변경)	-	-
기업및공공기관의가족친화지수측정	직접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정책과	-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정책과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정책과
	용역	-	한국생산성본부 (매회 변경)	한국생산성본부 (매회 변경)	한국생산성본부 (매회 변경)	-
보육실태조사	직접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보육정책과	-	-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보육정책과
	용역	-	이동가구조사: 육아정책연구소 ·보육시설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동가구조사: 육아정책연구소 ·보육시설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동가구조사: 육아정책연구소 ·보육시설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가족실태조사의 통계작성 기관·부서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정책과에서 조사기획을 직접수행하고 현장조사, 자료처리단계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매회변경)에서 용역으로 담

당한다. 결과분석단계는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한 이후 최종 공표는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정책과에서 실시한다.

- 여성가족패널조사의 통계작성 기관·부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조사기획이 이루어진 이후 현장조사, 자료처리 단계에서는 한국리서치(매회 변경)에서 용역으로 실시하며, 결과분석과 공표 단계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이루어진다.
- 기업및공공기관의가족친화지수측정의 통계작성 기관·부서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정책과에서 조사기획하고 이후 현장조사, 자료처리 단계에서는 한국생산성본부(매회변경)에서 용역으로 실시하며, 결과분석 단계는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정책과와 한국생산성본부(매회변경)에서 함께 이루어진다. 마지막 공표는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정책과에서 이루어진다.
- 보육실태조사의 통계작성 기관·부서
 - 조사기획단계는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보육정책과에서 이루어지며, 현장조사, 자료처리, 결과분석 단계에서 아동, 가구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 보육시설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이루어진다. 마지막 공표는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보육정책과에서 이루어진다.

2. 아동·청소년 영역

(1) 보고통계

아동·청소년 영역의 보고통계는 학대아동보호현황, 청소년상담지원현황 2종,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아동·청소년 영역의 통계작성 기관·부서를 작성조

직과 관련하여 ① 작성기획, ② 자료수집, ③ 통계작성, ④ 결과분석·공표의 단계 별로 각각 살펴보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아동·청소년영역 보고통계의 통계작성 기관·부서

보고통계명	단계별 통계작성 기관·부서			
	① 작성기획	② 자료수집	③ 통계작성	④ 결과분석·공표
학 대 아 동 보 호 현 황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아동권리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아동권리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청 소 년 상 담 지 원 현 황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자립지원과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상담원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정책실 청소년자립지원과

◦ 학대아동보호현황의 통계작성 기관·부서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아동권리과에서 작성기획을 담당하고, 전국 학대아동신고사례를 바탕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전국 시·도 자료를 취합한 이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통계자료를 작성하며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아동권리과에서 결과를 분석하여 공표를 수행한다.

◦ 청소년상담지원현황의 통계작성 기관·부서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자립지원과에서 작성기획을 담당하고,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자료수집과 통계작성을 수행하며,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자립지원과에서 결과분석·공표를 수행한다.

(2) 조사통계

아동·청소년 영역의 조사통계는 아동종합실태조사, 청소년가치관조사,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아동발달분야사회복지서비스수요조사,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등 5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통계의 통계작성 기관·부서를 직접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① 조사기획, ② 현장조사, ③ 자료처리, ④ 결과분석, ⑤ 공표의

단계별로 각각 살펴보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아동·청소년영역 조사통계의 통계작성 기관·부서

조사통계명	구분	단계별 통계작성 기관·부서				
		① 조사기획	② 현장조사	③ 자료처리	④ 결과분석	⑤ 공표
아동종합실태조사	직접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아동복지과	-	-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아동복지과
	용역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청소년가치관조사	직접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과	-	-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과
	용역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유해 환경접촉종합 실태조사	직접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보호과	-	-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보호과
	용역	-	매트릭스	매트릭스	매트릭스	
아동발달분야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조사	직접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사업과	-	-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사업과
	용역	-	닐슨코리아	닐슨코리아	닐슨코리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직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용역	-	매트릭스	매트릭스	-	-

○ 아동종합실태조사의 통계작성 기관·부서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아동복지과에서 처음 조사기획을 담당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종합적인 삶의 실태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주어 전국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표본을 설정하여 현장조사, 자료처리, 결과분석을 수행한 다음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아동복지과에서 결과를 공표한다.

○ 청소년가치관조사의 통계작성 기관·부서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과에서 조사기획을 담당하고, 현장조사, 자료처리, 결과분석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실시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청소년관련 담당자, 청소년지도사 및 교

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자료처리, 결과분석을 실시한 이후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과에서 마지막 공표를 수행한다.

-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의 통계작성 기관·부서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보호과에서 조사기획을 담당하고, 청소년 유해매체, 유해물질, 유해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이용실태 및 가치관에 대한 현장조사, 자료처리, 결과분석을 용역기관 매트릭스에서 시행하여 취합한 이후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보호과에서 공표를 수행한다.

- 아동발달분야사회복지서비스수요조사의 통계작성 기관·부서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복지서비스사업과에서 조사기획을 담당하고, 아동발달분야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수요의 현장조사, 자료처리, 결과분석을 용역기관인 닐슨코리아에서 실시하여 취합한 이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복지서비스사업과에서 마지막 공표단계를 주관한다.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의 통계작성 기관·부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처음 조사기획을 실시한 이후, 청소년의 생존권 및 보호권 등에 대한 현장조사, 자료처리는 용역기관인 매트릭스에서 담당하며 이후 결과분석 및 공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다.

3. 노인·장애인 영역

(1) 보고통계

노인·장애인 영역의 보고통계는 노인복지사업현황보고, 노인학대현황, 장애수당수급자현황, 등록장애인현황 등 4종으로, 노인영역 2종, 장애인영역 2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노인·장애인 영역 보고통계의 통계작성 기관·부서를 작성 조직과 관련하여 ① 작성기획, ② 자료수집, ③ 통계작성, ④ 결과분석·공표의 단

계별로 각각 살펴보면 다음 <표8>과 같다.

<표 8> 노인·장애인영역 보고통계 영역의 통계작성 기관·부서

보고통계명	단계별 통계작성 기관·부서			
	① 작성기획	② 자료수집	③ 통계작성	④ 결과분석·공표
노인복지사업 현황보고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노인학대현황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	지방노인보호 전문기관	지방노인보호 전문기관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
장애수당 수급자현 황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연금도입TF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연금도입TF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급여기준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연금도입TF
등록장애 인현황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노인복지사업현황보고의 통계작성 기관·부서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에서 작성기획을 담당하고, 노인복지법상 시군구에 신고된 시설로 한정하여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전국 시도 자료를 취합한 이후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에서 통계자료를 작성하며 결과분석 및 공표를 수행한다.

◦ 노인학대현황의 통계작성 기관·부서

- 작성기획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고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를 작성한 다음 결과분석과 공표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한다.

◦ 장애수당수급자현황의 통계작성 기관·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연금도입TF에서 작성기획을 수행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통계작성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급여기준과에서 실시하며 결과의 분석과 공표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연금도입TF에서 수행한다.

◦ 등록장애인현황의 통계작성 기관·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에서 작성기획을 수행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등록 담당자가 자료를 수집하여 사회통합전산망에 통계를 입력하여 작성한다. 결과분석과 공표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에서 실시한다.

(2) 조사통계

노인·장애인 영역 조사통계는 노인실태조사,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 장애인실태조사 등 5종으로 노인영역 2종, 장애인영역 3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인·장애인 영역 조사통계의 통계작성 기관·부서를 직접수행여부를 기준으로 ① 조사기획, ② 현장조사, ③ 자료처리, ④ 결과분석, ⑤ 공표의 단계별로 각각 살펴보면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노인·장애인영역 조사통계 영역의 통계작성 기관·부서

조사통계명	구분	단계별 통계작성 기관·부서				
		①조사기획	②현장조사	③자료처리	④결과분석	⑤공표
노인실태조사	직접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노인정책과	-	-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노인정책과
	용역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매회 변경)	한국리서치 (매회 변경)	한국리서치 (매회 변경)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매회 변경)	-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직접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용역	-	TNS Korea	TNS Korea	-	-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	직접	대한장애인체육회	-	-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용역	퍼포먼스웨이컨설팅	퍼포먼스웨이컨설팅	퍼포먼스웨이컨설팅	퍼포먼스웨이컨설팅	-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	직접	-	-	-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
	용역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및 지자체 고용 조사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개발원	-
장애인실태조사	직접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용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노인실태조사의 통계작성 기관·부서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노인정책과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매회 변경)이 공동으로 조사기획을 수행하고 현장조사, 자료처리는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한 다음 결과분석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매회 변경)이 담당하며 최종 공표는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노인정책과에서 이루어진다.

-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통계작성 기관·부서
 -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08년 제2차 기본조사까지 조사기획, 현장조사, 자료처리, 결과분석 모든 단계를 담당하였고, 이 중에서 현장조사와 자료처리 단계에서만 한국노동연구원과 TNS Korea가 공동으로 실시하였다. 2010년부터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한국고용정보원으로 변경되었다.

-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의 통계작성 기관·부서
 - 조사기획단계에서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퍼포먼스웨이컨설팅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현장조사와 자료처리 단계에서는 퍼포먼스웨이 컨설팅이 용역으로 실시한다. 결과분석 단계에서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퍼포먼스웨이컨설팅이 공동으로 실시한 다음 공표단계에서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한다.

-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의 통계작성 기관·부서
 -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는 마지막 공표만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에서 수행하고 처음 조사기획부터 결과분석에 이르는 과정은 용역을 통해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조사기획은 보건복지부의 용역을 받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수행하고 현장조사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및 지자체 고용 조사원에서 실시한다. 자료처리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수행하며 자료에 대한 결과의 분석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이루어진다. 마지막 공표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에서 수행한다.

- 장애인인실태조사의 통계작성 기관·부서

- 처음 조사기획단계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현장조사, 자료처리, 결과분석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담당한다. 마지막 공표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에서 수행한다.

제 3 장 주제 영역 통계분석 및 해외사례

제 1 절 통계영역별 역할

복지통계의 영역별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통계영역별 정책과의 연계성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통계영역별 공급자와 수요자 역할, 통계영역별 항목차이 및 통계간 상호역할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통계영역별 정책과의 연계성

(1) 가족·복지시설 영역

가족정책 및 복지시설정책에 있어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책개발을 위해 관련통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사회는 급격한 출산율 저하, 이혼율 증가, 노인단독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가족구조가 급속한 변화 추세에 있으며, 가족에서 여성의 역할은 경제활동참가의 확대와 동시에 일-가정의 양립의 문제를 겪게 되었다. 이러한 가족구조의 급격한 변화추세가 반영되어 생산된 가족·복지시설영역 복지통계를 근거로 가족정책이 수립될 때 수요자 중심의 정책 수립과 더불어 효율적인 가족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족·복지시설관련 통계와 관계된 관련정책은 다음 <표 10>, <표 11>과 같다.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패널조사’, ‘기업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지수측정’ 등 3종 통계는 저출산고령사회대응정책, 남성출산휴가제도, 아버지육아휴직제도 도입, 직장·가정양립지원제도, 가족의 노인부양 지원정책 및 서비스, 가족생활지원관련 제도 등 6개 정책범주와 관련이 있다.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패널조사’, ‘기업및 공공기관의가족친화지수측정’, ‘보육실태조사’, ‘보육시설및이용자통계’로 대표되는 가족통계 영역의 경우 여성들의 직업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가정친화적 정책과 연계하여 일·가정양립의 정책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동·가족·아동영역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축적해나가고 있다. 5년주기의 ‘가족실태조사’처럼 조사주기가 긴 경우는 시기에 따라 조사의 활용정도가 떨어지는 아쉬움이 있지만, 정부

의 정책 뿐 아니라 학계, 언론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0년 3월 19일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청소년·가족정책추진방향을 발표했는데 2010년에 이루어질 2차 ‘가족실태조사’를 정책인프라로 강화하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는 가족정책수립에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발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육실태조사’, ‘보육시설및이용자통계’ 2종 통계는 영유아 보육 정책 수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통계이다. 특히 보육실태조사는 보육서비스 이용욕구, 만족도,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교사 근로 실태 등 보육서비스 수요와 공급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통계이다.

<표 10> 가족영역 복지통계의 관련 정책

통계명칭		관련정책
가족영역	가족실태조사	·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 · 저출산대응정책, 남성출산휴가제도, 아버지육아휴직제도, 직장·가정양립지원제도, 가족의 노인부양 지원정책 및 서비스, 가족생활지원관련제도 등 · 2010년 3월 19일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가족정책추진방향 발표
	여성가족패널조사	·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 모성보호제도, 육아휴직제도, 부양가족지원제도, 가족생활지원관련제도, 여성고령자인력활용지원 등
	기업및공공기관의 가족친화지수측정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 기업(기관)의 가족친화프로그램(제도), 탄력적 근무제도, 근로자지원제도, 남성출산휴가제도, 아버지육아휴직제도 등
	보육실태조사	·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 저출산대응정책, 출산양육지원제도, 육아지원제도, 보육교육 정책, 보육바우처제도, 지역 아동센터관련정책 등
	보육시설및이용자통계	· 통계법 18조에 의거 · 보육바우처제도, 영유아보육정책 등

복지시설영역 복지통계인 ‘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및종사자현황보고’, ‘요보호아동현황보고’,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현황’ 등 3종은 모두 보고통계로, 입양정책, 아동복지시설제도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정책수립 반영과 예산의 확정 등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가족이 보호하지 않는 아동들에 대한 시설보호 후의 대책이나 가족 같은 환경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선진국의 시스템을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표 11> 복지시설영역 복지통계의 관련 정책

통계명칭		관련정책
복지시설영역	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및종사자현황보고	· 아동복지법에 의거 · 요보호아동관련정책, 아동복지시설지원 등
	요보호아동현황보고	· 아동복지법에 의거 · 요보호아동관련정책, 아동복지시설지원 등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현황	· 아동복지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 입양정책, 위탁가정정책, 소년소녀가정지원 등

(2) 아동·청소년 영역

아동·청소년관련 복지정책의 기본계획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 객관적인 통계자료에 근거할 경우 수요자 측면의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통계와 관련된 정책은 학대예방지원, 아동실종예방보호, 아동청소년성장지원,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맞춤형 교육, 아동발달지원계좌, 학교상담지원서비스,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확대, 헬프콜상담전화, 청소년통행금지구역설정 등이 있다. 통계자료의 기본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여 미래지향적, 목표달성 가능한 발전전략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유해환경 접촉종합실태조사’의 경우 청소년 기본계획 수립 및 청소년 사업을 마련할 때에 있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강화’,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부분의 정책에 해당되는 세부 사업의 지속적인 실시 이유, 그리고 앞으로 확대실시 하여야 하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음주, 흡연, 유해매체물과의 접촉, 유해환경 노출 정도, 예방교육의 참여도 등 통계분석결과를 통해 정책에서 필요한 대응력관련 사업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 부분이 통계결과를 반영한 정책 및 사업수립의 관계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으로 청소년 유해 생활환경 변화, 초중고생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실시 추진, 유해환경 대응능력 증진 프로그램 실시, 청소년 유해매체 모니터링 강화 등이 2010년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향후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와 같이 관련 통계의 조사결과로 인해 발전지향적인 정책을 생산하는 경로를 구축 및 관계성의 발전을 보여줄 수 있겠다.

그 외 보고통계인 ‘청소년상담지원현황’의 경우 가출, 성, 학업문제 등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1388전화상담, 인터넷전화상담 등 이용 결과를 분석하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사업을 실시하는데 중요한 기초적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아동·청소년영역 복지통계들은 정책입안의 근거자료는 충실히 보여주고 있는 반면, 아동·청소년영역 복지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이용자 욕구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통계가 새롭게 개발될 필요가 있다.

<표 12> 아동·청소년영역 복지통계의 관련 정책

통계 명칭		관련 정책
아동 청소년	아동 종합 실태 조사	아동복지법에 의거한 아동복지정책 수립 아동관련 전반적 정책, 아동복지지원, 아동성범죄방지, 아동발달계좌지원, 드림스타트 등
	아동 발달 분야 사회복지서비스수요조사	유망사회서비스 수요조사 결과를 통해 미래 시장확충 지원을 위한 기초정보 수집 및 복지정책, 사회복지서비스 정책 활용 사회복지개선방안, 사회복지시설확충 및 개보수 계획 수립 등
	학대 아동 보호 현황	아동복지법에 의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한 학대아동보호현황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아동보호체계 확립 아동학대예방계획수립, 폭력아동학대예방캠페인, 지역사회아동보호네트워크체계구축, 피해아동사회적응대책마련 등
	청소년 가치관 조사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청소년여가 및 문화활동확충계획마련, 청소년사회참여활동 운영, 사회필요서비스보완 등
	청소년 유해 환경 접촉 종합 실태 조사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청소년통행 및 이용금지구역지정, 유해물질 및 매체확대, 유해행위방지계획 마련 등
	청소년 상담 지원 현황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법 의거 위기청소년 사회복지서비스 CYs-net, 헬프콜상담서비스 등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한 청소년 보호정책 수립 청소년 음주·흡연 예방정책, 인터넷 등 유해매체 감시체계 강화,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대책마련 등

(3) 노인·장애인 영역

노인·장애인 영역 복지통계 9종은 주로 객관적인 통계를 기반으로 한 근거중심의 정책수행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2009년 현재 전체인구 49,773,145명 중에서 65세이상 노인인구가 5,267,708명(10.58%)으로 이미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고, 2019년에는 14.4%로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통계청, 2009). 이에 따라 우리사회의 노인부양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노인세대와 달리 새로이 노인세대에 진입하는 노년층은 사회문화적 경험이

상이하기 때문에 새로운 특성을 지닐 것이다. 따라서 급변하는 신노인세대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최적의 노인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변화가 반영된 노인복지통계를 생산해야 하고, 동시에 통계를 기반으로 한 근거중심의 노인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노인영역 복지통계인 ‘노인실태조사’와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경우 노인복지 기본계획 또는 사업을 실시할 때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노후소득보장, 치매노인사업 등의 예산수립, 지속수행여부 및 평가의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특히 패널조사인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경제상태, 경제활동, 사회보험 등의 통계항목에 대해 동일 조사대상을 주기적으로 측정하므로 조사차수가 누적된다면 향후 노후소득보장정책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제시해 줄 수 있다. ‘노인학대현황’의 경우는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상담사례를 전산시스템에 집계한 결과를 토대로, 노인의 인권보호정책을 위해 수행되는 노인학대예방사업, 노인학대상담사업, 노인보호전문기관확대 등 관련 사업의 기본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고 있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사업현황보고’의 경우 최근 실시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정보, 노인의 사회참여활동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복지시설정보, 노인주거복지정책과 관련된 노인주거복지시설정보 등에 대한 통계정보를 집계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영역 복지통계의 경우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기본계획, 편의시설확충 국가종합 5개년 기본계획 등의 수립과 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보고통계인 ‘등록장애인현황’은 장애인의 정책적 대처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해 주고 있다. 등록장애인과 관련하여 장애인정범위 확대, 장애인연금, 장애인 자립기반지원사업, 장애인재활지원사업,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등의 근거자료를 제시해 준다. ‘장애수당수급자현황’의 경우는 장애인의 소득보장정책과 관련하여 등록장애인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보장시설,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한편 조사통계인 ‘장애인실태조사’의 경우는 장애인 의무고용제, 장애인 재활지원, 장애인 자립기반지원사업, 장애인 복지서비스 등의 예산수립, 및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의 경우 편의시설확충 국가종합 5개년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장애인생활시설확충사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장애

인생활체육실태조사'의 경우는 장애인차별금지, 장애인생활체육사업 등에 대한 사업의 추진과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노인·장애인영역 복지통계들은 통계기반 정책입안의 근거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반면, 노인·장애인영역 복지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이용자 욕구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표 13> 노인·장애인영역 복지통계의 관련 정책

통계명칭		관련정책
노인	노인복지사업현황보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사회참여활동 활성화, 노인주거복지정책 등
	노인학대현황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 노인학대예방, 노인인권보호
	노인실태조사	노인복지법에 의거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자원봉사활성화사업, 노인부양정책,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치매노인예방사업, 치매치료노인관리복지지원사업 등
	고령화연구패널조사	통계법에 의거 노후소득보장, 노인인력활용지원 등
장애인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 의무고용제, 장애인의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기업지원제도, 장애인재활지원, 장애인 자립기반지원 등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편의시설확충 국가중합 5개년계획, 장애인생활시설확충사업
	장애수당수급자현황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소득보장 등
	등록장애인현황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정범위 확대, 장애인재활지원사업, 장애인자립기반지원사업,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장애인연금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에 의거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생활체육사업 등

2. 통계영역별 공급자와 수요자 역할

(1) 가족·복지시설 영역

가족·복지시설 영역 복지통계의 '통계작성현황조사표' 분석을 바탕으로 통계의 공급자와 수요자 측면을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통계의 공급자 측면에서 보면, 가족·복지시설영역 통계 8종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이 통계작성기관으로 대부분 공공부문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이 '기업및공공기관의가족친화지수측정', '가족실태조사' 2종,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성가족패널조사' 1종,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이 '보

육시설및이용자통계’, ‘보육실태조사’ 보육관련 2종과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녀 가정현황’, ‘요보호아동현황보고’, ‘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및종사자현황보고’ 복지시설관련 3종의 통계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다음으로 통계의 수요자 측면에서 보면 통계 8종 모두 통계의 수요자가 통계작성기관외 정부기관, 정부산하기관, 학계, 연구소, 일반, 기타 등으로 보다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각 통계별 수요자가 누구인지 어떤 신분에서 어떤 목적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그림 4> 가족·복지시설영역 통계의 수요자와 공급자

공급자 (통계작성기관)	통계명	수요자 (통계이용자)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 기업및공공기관의가족친화지수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작성기관외 정부기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 정부산하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 학계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한국가족복지학회, 한국다문화가족학회 등) · 일반 (대학교수, 대학원생 등) · 기타 (국회, 언론 등)
	→ 가족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연구실	→ 여성가족패널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작성기관외 정부기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 정부산하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 학계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보육정책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등) · 일반 (대학교수, 대학원생 등) · 기타 (국회, 언론 등) · 관련 보육시설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 보육시설및이용자통계	
	→ 보육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작성기관외 정부기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 정부산하기관 (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 학계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청소년복지학회 등) · 일반 (대학교수, 대학원생 등) · 기타 (국회, 언론 등) · 관련 아동복지시설
	→ 요보호아동현황보고	
	→ 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및종사자현황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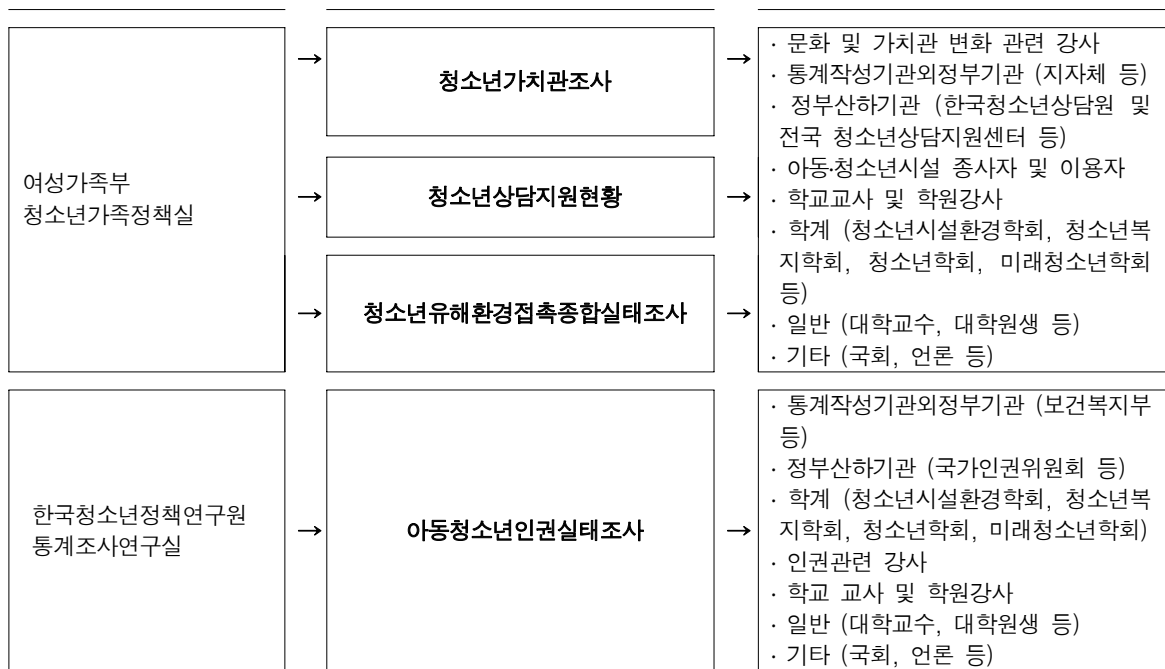
(2) 아동·청소년 영역

아동·청소년 영역 복지통계 7종의 '통계작성현황조사표'를 토대로 통계의 공급자와 수요자 측면을 분석한 결과, 먼저 통계의 공급자 측면에서 보면 아동·청소년영역 복지통계들의 통계작성기관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 3개 기관으로 모두 공공부문이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아동종합실태조사', '아동발달분야사회복지서비스수요조사', '학대아동보호현황' 3종, 여성가족부가 '청소년가치관조사',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청소년상담지원현황' 3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1종의 통계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다음으로 통계의 수요자 측면에서는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영역 7종 복지통계의 수요자가 다양하지 못하다. '아동발달분야사회복지서비스수요조사'의 경우 공급자인 중앙정부부처와 사회복지기관 등에게 복지서비스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수요에 입각한 공급의 기초자료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의 경우는 각 청소년쉼터, 소년원 등의 종사자들에게 위기청소년 현황 및 위험도 파악,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그 외 여러 사업과 보호 방향 설정을 위해 사용될 수 있고, 교사들에게 학생의 지도방향설정 및 위기청소년 사후대안 등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활용되는 자료이다.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청소년가치관조사' 또한 인권관련 강사 및 국가인권위원회, 문화관련 강사와 학교 교사, 청소년지도사와 상담사, 사회변화에 입각한 변화양상 추이 연구자 등에게 활용되고 있다. 앞으로 아동·청소년 영역 복지통계를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에 적합한 통계의 생산을 위해 통계수요자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그림 5> 아동·청소년영역 통계의 수요자와 공급자





(3) 노인·장애인 영역

노인·장애인 영역 복지통계의 '통계작성현황조사표'를 분석한 결과 통계의 수요자 측면과 공급자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통계의 공급자 측면에서 보면, 노인·장애인영역 복지통계 9종의 통계작성기관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고용정보원으로 모두 공공부문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노인·장애인영역 통계 9종 중에서 가장 많은 7종 '노인복지사업현황보고', '노인실태조사', '노인학대현황', '등록장애인현황', '장애수당수급자현황',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 등의 통계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 1종, 한국고용정보원은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종의 통계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다음으로 통계의 수요자 측면에서 살펴보면, 공급자 측면과 달리 통계작성기관 이외에도 학계, 일반, 기타 등 민간부문으로 보다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복지정책에 필요한 통계를 사전에 예측하여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통계수요자의 이용실태에 대한 상시적인 파악이 필요하다.

<그림 6> 노인·장애인영역 통계의 수요자와 공급자

공급자 (통계작성기관)	통계명	수요자 (통계이용자)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국	노인복지사업현황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작성기관외정부기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 정부산하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 · 학계 (한국노년학회, 한국노인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등) · 현장(사회복지기관,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등) · 일반 (대학교수, 대학원생 등) · 기타 (국회, 언론 등)
	노인학대현황	
	노인실태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등록장애인현황	
	장애수당수급자현황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	

3. 통계영역별 항목차이 및 통계간 상호역할

(1) 가족·복지시설 영역

① 가족영역 복지통계

복지통계 중에서 여성가족과 관련한 유사통계로 ‘여성가족패널조사’, ‘가족실태조사’, ‘기업및공공기관의가족친화지수측정’을 직접 비교분석해 보았다. 다음 <표 14>과 같이 ‘가족실태조사’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문항들이 빠져 있는 대신 가족의 실태 및 의식과 관련된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관계와 돌봄 노동에 대한 문항들은 ‘여성가족패널조사’와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패널조사’는 2년주기의 패널조사로서 여성의 일자리와 관련된 항목의 동태적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나, 연령분류에 있어 만 64세 미만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여성 노인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는 단점을 가진다. 여성의 일자리관련 항목을 포함해서 패널조사로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여성 노인에 대한 고려와 일자리경험 뿐 아니라 욕구에 대한 항목들도 추가될 필요가 있다. 반면 가족실태 및 가족관련가치관 등은 급격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항목일 것으로 예측되는 바 ‘가족실태조사’와 같은 횡단면 조사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족실태조사’와 ‘여성가족패널조사’의 경우처럼 독립된 통계로서 별도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효율적인 통계 생산을 고려해야 하기 위해 가족통계종합정보 및 메타정보 DB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비슷한 항목으로 조사하는 경우 항목조정을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기업및공공기관의가족친화지수측정’의 경우 1년단위 횡단면조사로 가족친화지수를 측정하고는 있으나, 기업의 입장에서만 기업의 인사담당자에 의해 측정될 뿐 대상자인 노동자의 입장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가족친화지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가족친화지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각적 측면에서의 통계를 보여주어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표 14> 가족영역 복지통계의 항목별 비교

통계명	여성가족패널조사	가족실태조사	기업및공공기관의 가족친화지수측정
조사형태	패널조사	횡단면조사	횡단면조사
조사주기	2년	5년	1년
조사대상	18세 이상 65세 미만	14세 이상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상장법인
항목비교	가구기업일련번호 가구기업일련번호 가구기업일련번호	○ 가구 및 가구원의 특성 -성별, 연령, 학력, 혼인상태, 종사상지위, 직업 등 - 가구소득, 저축, 지출, 생활수준, 주거환경, 노후준비 관련사항	○ 일반현황 (회사/응답자정보) -기관(기업) 산업 분류 -인원 규모 및 구성 -경영성과(매출액, 이익)
	가족형성과정	- 현재의 혼인상태, 사별/이혼/별거 시기조사, 가족범위에 대한 식내용, 가족구성원의 원리, 향후 산계획 등 자녀 관련사항	-
	가족관계	○ 부부관계 -가정 내 역할 분담 실태, 부부관계 만족도, 부부갈등 정도 등 ○ 부모자녀관계 -의사소통 만족도, 관계의 어려움, 가족여가생활 등	-
	가족생활	○ 가구원의 가사참여 -참여횟수, 참여시간 등 ○ 가족여가 -여가공유시간, 활동 종류, 여가 제약 요인	-
	돌봄	○ 아동돌봄 -서비스이용 실태, 이용시간, 비용 등 ○ 노인과 환자 가족원 돌봄 노동 -주돌봄자, 노인 돌봄 비용, 돌봄으로 인한 가족생활 변화 등	○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산전·후 휴가제도 도입 및 활용정도 -육아휴직제도 도입 및 활용정도 -출산지원 제도 도입 -미취학자녀 양육지원제도 도입 -취학자녀 양육지원제도 도입 ○ 부양가족지원제도 -가족간호 휴직제도 도입 및 활용정도 -가족간호 지원제도 도입
	가족의식및가치관	○ 가족의식과 가치관 -가족에 대한 생각, 가족의 범위, 자녀에 대한 가치관, 결혼, 동거, 이혼, 재혼에 대한 태도, 성역할 등	-
	정책및제도서비스요구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 일과 가정 양립위한 지원 제도 등	○ 근로자 지원제도 -근로자 직장·가족 문제 관련 상담 프로그램 운영 -멘토링 프로그램 도입 -건강관리 지원제도 도입 ○ 가족친화 문화 조성 -가족친화적 경영체계 -가족친화 문화조성 지원 제도 도입 ○ 가족 친화 프로그램 운영관련 실태 -프로그램 운영 이유 -프로그램 도입의 장애요인 -프로그램 도입 전후 비교 -최근 1년 내 직장문화 개선 정도 ○ 가족친화인증제 -가족친화인증제 인지여부 및 인지경로 -신청여부 및 신청의향 -인센티브 요구사항 -가족친화 인증제 실시로 인한 예상 기대효과
	일자	○ 일자리용 설문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	-

리 관 련	<p>(경제활동여부, 고용형태, 일자리 유 지 및 지위의 변화, 직종별 분포, 근 로 시간, 월평균 임금, 만족도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근로자의 복리후생 상태 (퇴직금, 출산휴가, 육아휴가, 직장 보 육시설, 사회보험 적용여부 등) -구직활동과 일자리 정보 획득 방법 -신규임금근로자의 일자리관련 문항(업 종, 고용형태, 월평균 급여 등) -비취업자 관련 문항 (선호 일자리 및 근로시간, 실업이 유, 구직활동 경로 이전 일자리, 교육 및 훈련, 사회보험) -여성의 일가족 양립(직장생활과 가정 생활) -여성의 경제활동 관련 고충(직장에서 의 차별사항, 모성보호제도인지여부, 산전·육아휴직 후 고용 상 변동유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 입 및 활용정도 -탄력적 근무지원제도 도입 -휴가제도 도입
-------------	---	--	---

② 보육영역 복지통계

복지통계 중에서 보육과 관련한 유사통계로 ‘보육실태조사’와 ‘보육시설및이용자통계’를 직접 비교분석해 보았다. ‘보육실태조사’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이루어지는 조사통계이고, ‘보육시설및이용자통계’는 통계법에 근거하여 1년마다 조사되는 보고통계로 차이가 있으나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이라는 동일한 부처에 의해 기획, 작성, 공표되고 있다.

‘보육실태조사’는 보육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모두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가구와 아동 즉, 보육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을 조사하는 “가구조사”와 보육시설 즉, 보육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보육시설조사”로 구분된다. ‘보육실태조사’의 경우 가구현황과 정책 및 제도, 서비스의 이용 및 욕구, 보육시설비용관련현황 등을 주로 조사하고 있으며, 특히 보육서비스에 대한 서비스이용 및 욕구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진다. 그러나 ‘보육실태조사’의 경우 현재 5년주기의 조사주기가 길어 정책적 활용에 있어 시의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보육시설및이용자통계’는 보육시설 현황 및 보육시설 이용현황, 보육료지원현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보육시설 유형별, 영유아 연령별 현황 자료 등을 활용하여 보육정책의 수립·보완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평가는 반영될 수 없는 서비스 제공자의 보고통계이다.

결과적으로, 보육정책의 근거자료로 통계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보육실태조사’의 항목과 ‘보육시설및이용자통계’의 항목이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두 통계의 조사주기 차이가 커서 1년마다 조사되고 있는 ‘보육시설및이용자통계’의 자료활용에 제한이 있으므로 ‘보육실태조사’의 조사기간 5년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표 15> 보육영역 복지통계의 항목별 비교

통계명	보육실태조사	보육시설및이용자통계
조사형태	횡단면조사	보고통계
조사주기	5년	1년
조사대상	아동가구, 보육시설	보육시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이용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에서 자료 추출)
항목비교	가구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현황 - 가구원 특성, 가구의 주택 및 경제적 특성, 보육에 관한 의견, 아동 부모에 관한 질문, 다문화 가정 질문, 초등학교생 이하 자녀의 보육·교육이용
	정책 및 제도, 서비스의 이용 및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및 욕구 총괄 - 조사대상 가구 및 아동의 특성, 가정에서의 주양육자, 현재 보육 및 교육 서비스 이용, 아동 발달 단계별 보육·교육 서비스 선호도 ○ 미취학아동 보육교육기관 이용 및 욕구 - 보육교육기관 이용 및 이용아동 특성, 보육교육기관 이용 행태, 보육교육기관 서비스, 보육교육기관 이용 비용, 보육교육기관 이용 만족도 및 요구, 보육교육기관 이용 경험 및 앞으로 이용 의사 ○ 취학아동 방과후 보육교육기관 이용 및 욕구 -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 실태 및 욕구,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 및 욕구, 보육시설 및 공부방의 방과후 보육 이용 및 욕구 ○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및 욕구 - 개인양육 지원서비스 이용 아동 특성, 개인양육 지원서비스 이용실태, 개인양육서비스 이용 만족도 및 욕구 ○ 일반학원 및 개별교육 이용 실태 - 일반학원 및 개별교육 이용아동 특성, 일반학원 이용실태, 개별그룹지도 및 학습지활용 실태 ○ 육아지원정책 관련 의견 - 보육시설 및 유치원 관련 의견, 보육교육 비용 정책 관련 의견, 육아지원정책 우선순위 및 가정보육제도 관련 의견 ○ 보육교육 수요 추계 - 보육교육기관 추가 이용 희망률, 보육교육 추가 수요 추계 ○ 정부 보육정책에 대한 보육시설의 의견, 보육시설 운영상의 어려움 등 파악
	보육시설설치 운영관련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 운영실태 - 보육시설 설립·운영특성 - 보육시설 건물 운영 및 관리 - 보험가입 및 차량운행 현황 ○ 보육영유아 현황 -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의 특성별 현황 -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관리 ○ 보육서비스 운영실태 - 보육프로그램 운영 및 환경 - 안전관리실태 - 특별활동 운영
	보육시설종사자 관련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와 종사자 운영실태 - 보육교사 근무여건(근무시간, 급여 등), 요구 - 보육시설장 일반 현황(자격증, 학력 등) - 기타 종사자 현황(취사부, 영양사 등) - 종사자 채용 및 관리
보육시설비용 관련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 재정운영 실태 - 보육료 운영 - 수입 및 지출, 재무회계 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 보육시설현황(시도/시군구), 정부인건비지원시설 현황, 정원/현원현황, 정원규모별/현원규모별 보육시설 설치현황, 보육시설 설치 및 미설치 지역 - 지역유형별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지역유형별 보육시설현황/정원/현원현황) - 연령별 보육아동 현황 - 다문화아동 보육시설이용현황(지역유형별 다문화아동 재원 보육시설현황, 지역유형별 다문화아동현황) - 일반시설 특수보육 현황(시간연장형 보육현황, 방과후 보육현황, 장애아보육현황) ○ 특수 보육시설 현황 - 특수보육시설 일반현황, 특수보육시설 유형별현황(영아전담시설현황, 시도별장애아전담시설현황, 정부인건비지원/미지원시설, 장애아전담시설현황, 장애아통합시설현황, 시도별방과후시설 현황, 시간연장시설현황, 휴일시설현황, 24시간시설 현황) ○ 직장 보육시설현황 ○ 보험가입 현황 - 상해보험/화재보험 가입현황(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 종사자 현황 - 보육시설종사자현황(시도/성별구분), 지역 및 시설유형별 종사자 현황(성별구분), 보육교사1급/2급/3급자격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보육료 지원현황 - 보육료지원현황(시도/성별구분)

③ 복지시설영역 복지통계

복지통계 중에서 복지시설과 관련한 유사통계로 ‘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및종사자현황보고’와 ‘요보호아동현황보고’,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현황’을 직접 비교분석해 보았다. 현재 가족이 보호하지 않는 아동들에 대한 접근은 가족같은 환경에서의 보호를 중요시하고 있으므로, 시설입소상태가 아닌 아동들에 대한 통계 조사인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현황’도 유사통계로 함께 분류해 살펴보았다.

반기마다 보고통계로 작성이 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및종사자현황보고’, ‘요보호아동현황보고’,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현황’은 입양정책, 요보호아동관련정책, 아동복지시설제도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정책수립 반영과 예산의 확정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3종의 복지시설 복지통계가 기획, 공표기관이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로 같고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입양과 관련하여 함께 다루고 있는 항목이 많다. 이에 앞으로 ‘요보호아동’ 관련현황은 아동복지통계라는 큰 틀 안에서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통계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고통계로 수집된 숫자 중심의 현황을 나타내는 조사항목이 가족이 보호하지 않는 아동들에 대한 시설보호 후의 대책이나 가족 같은 환경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선진국의 시스템을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입양 등의 경우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의 지원혜택을 받지 않음으로써 통계에 반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2009년부터 구축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할 경우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대상아동 전체에 대한 정확한 입퇴소 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기에 앞으로 함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6> 보육시설영역 복지통계의 항목별 비교

통계명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현황	요보호아동현황보고	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및종사자현황보고
조사형태	보고통계	보고통계	보고통계
조사주기	반기	반기	반기
조사대상	전국 가정위탁 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국내 허가된 입양기관	각 시, 군, 구에 신고된 요보호아동	아동복지시설내의 보호아동과 종사자
항목비교	가정위탁 현황 ○ 위탁가정유형 대리양육가정/친인척위탁가정/일반위탁가정, 지역별 세대수/아동수로 각 분류소계하여 전년도말위탁가정유형, 신규가정위탁가정, 종결가정위탁가정,	○ 조치내용(가정보호-소년소녀가정, 입양, 가정위탁)	-

	<p>기말현재 위탁가정유형별로 정리함</p> <p>○ 가정위탁보호아동유형 · 소년소녀가정에서 전환/시설보호에서 전환/기타-일시보호아동, 지역별 세대수/아동수로 각 분류소개하여 전년도말위탁가정유형, 신규가정위탁가정, 종결가정위탁가정, 기말현재 위탁가정유형별로 정리함</p> <p>○ 가정위탁보호아동현황 · 성별, 연령별(1-3세/4-7세/8-10세/11-13세/14-16세/17-19세/20세이상, 지역별 구분)</p>		
국내입양 현황	<p>○ 시도별 입양신청자수및입양아동유형(입양아동유형-미혼모아동/시설아동/저소득층가정/결손가정/기타, 보호유형-시설보호/위탁보호)</p> <p>○ 입양아동의 건강상태, 성 및 연령별 현황 (장애/비장애구별, 남/여, 3개월미만/3개월-1세/1세-3세/3세이상으로 구분)</p> <p>○ 양부모의 소득별 친자유무 및 직업 현황 (소득-최저생계비이하/차상위120%/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이하/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120%이하/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120%초과, 직업별-자영업/회사원/공무원/사회사업종사자/의·약사, 관·검사/기타)</p>	○ 조차내용(가정보호-소년소녀가정, 입양,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현황	<p>○ 성 및 연령별 현황(0-5세/6-11세/12-14세/15-17세/18-20세/21세이상)</p> <p>○ 재학현황(미취학자/초등재/중재/고재-실업, 인문, 기타/대재/미재학자)</p> <p>○ 주거형태현황(자가/전세/월세/친지/정부지원주택/기타)</p> <p>○ 발생유형 현황(부모사망/부모폐질 심신장애/부모가출·행불/부모이혼/부모복역/기타)</p> <p>○ 취업현황(재학자-사무직, 생산직, 상업, 기타서비스/미재학자-사무직, 생산직, 상업, 기타서비스) 결연현황(결연세대/결연아동/후원자수/후원금/후원구좌, 자체결연/한국복지재단결연으로 분류)</p>	○ 조차내용(가정보호-소년소녀가정, 입양,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현황		<p>○ 종아동발생수</p> <p>○ 귀가및연고자인도</p> <p>○ 요보호아동의 발생원인(유기, 미혼모, 미아, 비행가출부랑, 학대, 부모빈곤/실직, 부모사망, 부모질병, 부모이혼등)</p> <p>○ 성별(남녀)</p> <p>○ 건강상태(장애, 비장애)</p> <p>○ 조치내용(시설입소-양육시설등, 일시보호시설, 장애아동시설, 공동생활가정)</p>	<p>○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현황(양육시설/직업훈련시설/보호치료시설/자립지원시설/일시보호시설/종합시설/아동상담소/전용시설/개인양시설별로 시설수와 인원수)</p> <p>○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성별·취학 현황(시설수/종사자수/정원/입소인원/취학아동)</p> <p>○ 아동복지시설 정·현원 현황(양육시설/직업훈련시설/보호치료시설/자립지원시설/일시보호시설/종합시설)</p>
아동복지시설 및 종사자현황			<p>○ 시설명칭/설치년월일/시설장성명(생년월일)/종사자수/수용아동(정원/현원)/소재지/법인명칭(대표자)</p>

(2) 아동 청소년 영역

① 아동·청소년 실태영역 복지통계

아동·청소년 실태관련 복지통계의 경우 종합적인 실태 및 아동과 청소년의 현실 자각도, 개인 자아인지도 등을 알아보는 통계로서 각 부처에서 4~5개년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안의 연간사업계획, 세부정책과제 및 영역, 세부사업과제 등을 만들어 내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와 근거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각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한 통계의 항목별 비교를 통해 통계 내용의 중복성 방지, 예산 낭비 방지, 그리고 통계 자체의 정체성 확립과 신규 항목 구성, 차별성 언급 등의 발전 방안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실태조사에 대한 통계의 경우 각 통계의 정체성 및 성격에 따라 개별통계사항에 따른 통계항목이 상이했다. 개별 통계마다 다양하고 조사하는 항목들에 따라 성격 파악의 의도를 찾아볼 수 있었다.

먼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와 항목을 보면 공통적으로 가족관계, 부모관계, 학교생활관계, 친구관계로 아동 및 청소년의 일반적 환경이 가장 많이 조사되는 항목으로 나타났다. 사회환경으로부터 혹은 가정으로부터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유무를 우선적으로 찾아보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 외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통계의 역할에 따라 보호, 복지의 측면에서 작성되는 항목으로는 가출 및 성 경험도, 아르바이트 경험도, 유해업소 및 흡연, 음주 경험도, 정신건강 측면을 공통적으로 뽑을 수 있겠다. 주로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항목의 중복성 보다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겠다.

‘청소년가치관조사’와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의 경우 개인의 생각 및 신념 등이 많이 포함되는 항목에 대해 유사점이 보였다. 공통적으로 삶의 전반에 대한 만족도, 생활 행복도, 건강에 대한 생각, 직업 및 진로에 대한 가치관, 아르바이트 경험면의 항목을 사용하여 조사되고 있었다.

‘청소년유해환경점측종합실태조사’의 경우 청소년 주변의 유해환경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청소년의 폭력·비행실태, 청소년의 건강과 관련한 약물이용(흡연, 음주)실태를 포괄하는 등 다양한 범위의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이는 넓은 관점에서 유관한 지표로 분류할 수는 있지만, 조사통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조사내용은

그 의미가 이론적 체계를 가지고 명확하게 제시되고 조사되어야 하는 만큼 조사 내용과 설문문항 등에 있어 분류작업 등 방법론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각 통계의 작성기관, 작성담당자, 전문가 등이 통계항목에 대하여 검토하고 중앙 및 지역단위에서 생산되어야 하는 아동·청소년지표체계 개발, 지표 및 조사방법을 표준화하며, 기존의 조사체계를 벗어나 중복되어 있는 유사통계를 흡수·통합하여 통계를 생산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17> 아동·청소년 실태영역 복지통계의 항목별 비교

통계명	아동종합실태조사	청소년가치관조사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조사형태	횡단면조사	횡단면조사	횡단면조사	횡단면조사	
조사주기	5년	1년	1년	2년(주제별 격년조사)	
조사대상	18세미만아동가구	9~24세 청소년	위기청소년(소년원생, 컴퓨터 이용자) 일반청소년(중고등학생)	교육통계정보센터의 학교DB	
항목비교	개별통계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 주제 중심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언어기술(의사소통, 언어와 문제) - 수학적사고력 - 일반지식 - 사회적 유능감 - 문제해결 - 대인관계, 사회생활 참여, 애착, 정서반응 ○ 통계 주제 중심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만족도, 행복도 - 미래지향도, 결혼관 - 한국 사회 및 경제에 대한 전반적 사회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사회공헌의 필요성 - 정치의 관심도, 사회이슈에 대한 관심도 - 한국에 대한 자부심 - 다문화 사회에 대한 생각, 다문화 청소년과의 친밀도 - 통일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 주제 중심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매체이용률 및 최초이용시기, 이용 장소, 성인매체에 대한 인식, 체험, 게임 이용도 - 유해매체, 유해행위, 유해업소 제한 관련 교육여부 - 음주 및 흡연, 흡입제, 진동수용제, 마약류 관련 경험들, 흡입제 사용(생애 음주 경험, 흡입제 사용 경험, 담배 구입, 흡입제 사용 경험, 약물/흡연 경험, 담배 구입, 흡입제 사용 경험, 약물/흡연 예방 교육여부, 흡입제 사용 경험, 약물/흡연 예방 교육여부, 흡입제 사용 경험, 약물/흡연 예방 교육여부, 흡입제 사용 경험, 약물/흡연 예방 교육여부) - 유해업소 출입 경험도, 유해행위(성 경험도, 폭력 경험도, 가출경험도, 원인, 귀가이유, 성에 대한 고민 여부, 임신여부, 정보 도움 경험, 청소년컴퓨터 인지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 주제 중심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사항(키, 몸무게), 체격 정도 - 취침시간 - 공부에 대한 생각, 행복도 - 장애아동 및 다문화아동에 대한 생각 - 차별 경험, 가출경험 유무, 체벌/꾸짖음/욕설에 대한 생각 - 불법매체 이용도, 인터넷상의 경험(욕설, 괴롭힘, 성희롱 등) - 학교에서의 경험(욕설, 괴롭힘, 폭행, 구타, 따돌림, 성희롱 등) - 성교육 여부 - 유해매체 유해성 교육 여부, 업소이용경도 - 자살충동 여부 - 금연/음주교육 - 성적피해빈도 등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환경(가구구성형태, 부모학력, 부모와 동거여부, 부모직업, 부모 근로형태, 가구소득, 부모의 국적, 부모의 구성 등) - 지역환경, 학교환경, 가정환경(미디어노출) - 문화생활, 사회적지원, 학업성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의 친밀도, 가족생활 만족도 - 형제자매 관계정도 - 이웃 및 친척과의 관계도 - 가정 분위기, - 의사소통, 가족전통행위 - 학교생활, 여가생활종류, 여가생활 중요도 - 친구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 학교 활동의 정도 - 학교공부의 흥미도 - 직업 및 직장 취업 요구도 - 인생목표의 유무 - 진학의 정도, 취업준비도, 진로희망 - 자체 체감 건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생활만족도, 부모와의 갈등원인 - 학교생활 만족도 - 폭행 피해도, 집단 따돌림 피해도 - 학교폭력 예방 교육여부 - 아르바이트 경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학력, 직업 - 기초생활수급여부 - 가정경제에 따른 식사 여부 - 학업성적 - 학교급식 만족도 - 학교생활에서의 피해정보 및 만족도 - 아르바이트 경험도
	학교 및 여가생활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환경, 학교환경, 가정환경(미디어노출) - 문화생활, 사회적지원, 학업성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생활, 여가생활종류, 여가생활 중요도 - 친구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 학교 활동의 정도 - 학교공부의 흥미도 - 직업 및 직장 취업 요구도 - 인생목표의 유무 - 진학의 정도, 취업준비도, 진로희망 - 자체 체감 건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생활 만족도 - 폭행 피해도, 집단 따돌림 피해도 - 학교폭력 예방 교육여부 - 아르바이트 경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성적 - 학교급식 만족도 - 학교생활에서의 피해정보 및 만족도 - 아르바이트 경험도
	진로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체험활동 유무 - 장래희망 - 진로활동준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 및 직장 취업 요구도 - 인생목표의 유무 - 진학의 정도, 취업준비도, 진로희망 - 자체 체감 건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르바이트 경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르바이트 경험도
	건강 및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측면, 영양 및 섭취, 임신과 출산, 아동학대 및 방임, 일상안전습관, 복지인식 및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체감 건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침식사 여부 - 건강에 대한 생각 - 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생각 - 건강 정도, 질병을 앓은 경험, 스트레스 정도 - 건강에 대한 관심도 - 동네/학교의 안전 정도

②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영역 복지통계

보고통계의 경우 현황과악을 중점적으로 보는 통계자료이기 때문에 유사성이 깊은 항목은 많이 찾아볼 수 없지만, 실태조사의 항목과 마찬가지로 가족환경, 가족관계와 같은 일반사항이 우선적인 항목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적 요인이 아동, 청소년 실태 및 현황에 대해 혹은 문제점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전제의 질문으로 조사통계부분과 같이 공통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학대와 요보호, 상담지원 등 사회복지적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아동·청소년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국가적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사항의 우선 조사가 아동·청소년의 보호상황 및 피해 원인 등을 설명해 줄 수 있는 1차적 자료가 될 수 있어 현황보고통계의 경우 일반적이지만 중요한 항목으로 우선된다. 또한 보고통계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의 건강 및 보호와 관련된 항목을 조사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는 개별보고통계가 아동·청소년의 건강과 신변보호에 목적을 가지고 있어 주요 공통적 질문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사후처리 및 건강처리 방안 항목도 있어 아동·청소년의 복지서비스 수요도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복지서비스 공급과 관련 방안을 마련해 줄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겠다.

<표 18>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영역 복지통계의 항목별 비교

통 계 명	아동발달분야사회복지서비스수요조사	학대아동보호현황	청소년상담지원현황	
조사형태	면접조사	DB정보제공 및 취합	DB정보제공 및 취합	
조사주기	2년	1년	1년	
조사대상	중3이하 아동·청소년가구	아동보호기구 및 시설정보취합	청소년상담센터, 상담전화 정보 취합	
항목비교	개별통계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발달서비스의 현황, 문제점 및 관련 프로그램의 파악(개념정의 및 분류체계 확립), - 시장규모 추계 및 경제적 효과분석, - 유망 아동발달서비스 선정 및 시장조사(수요/공급 측면), - 수요·공급 규모, 유효 수요, - 공급기관종사자 특성, 직종 등, 유망 아동발달서비스의 산업화 가능성 및 공급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건수 - 신고유형 - 아동학대사례유형 -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사망아동 현황 - 재학대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상담 내방 이유, 상담 횟수, - 상담 대상, 내담자 성별 - 호소유형별(진로, 일탈 및 비행, 성, 성격, 대인관계, 생활습관 및 외모,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 법률정보, 정보제공 등), - 청소년전화1388 현황
	가구환경 및 가정생활과 일반사항	- 자녀의 학년, 가구의 형태, 가구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형태 - 부모의 유무(사망여부), 친척 및 관계인 여부
	건강 및 보호		- 학대아동 건강조치현황	- 정신건강, 신체건강도

(3) 노인·장애인 영역

① 노인영역 복지통계

노인관련 복지통계 ‘노인실태조사’,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노인복지사업현황보고’, ‘노인학대현황’ 4종의 통계항목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통계간 통계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인실태조사’와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경우 공통적으로 노인개인의 일반적 특성, 가족 및 사회적 관계와 상호지원, 경제상태, 고용, 건강상태, 의료서비스이용, 여가 및 사회활동, 삶의 질 등에 대한 통계항목이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횡단면조사인 ‘노인실태조사’는 노인복지서비스, 노인학대, 생활환경 등에 대한 통계항목을 조사하고 있으며, 패널조사인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국민연금 및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납부여부, 예상수급시점, 예상수급액 등을 조사하고 있는 점이 차이가 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서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와 달리 노인가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둘째, 노인복지서비스 항목의 경우, 보고통계인 ‘노인복지사업현황보고’와 조사통계인 ‘노인실태조사’간 상호연계된 설계가 이루어져 있다. ‘노인복지사업현황보고’에서는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을 집계하고 있으며, ‘노인실태조사’에서는 노인복지서비스의 인지경로, 가장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 향후 이용희망률(요양 및 의료복지서비스, 주거복지서비스, 여가 및 사회활동서비스, 상담 및 생활지원서비스,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돌보미바우처서비스) 등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실태조사’에서 추가적으로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항목을 추가하여, 노인복지서비스 정책의 평가에 반영하고 향후 장기 노인복지서비스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노인관련 복지통계 4종의 통계작성기관의 경우 ‘고령화연구패널조사’만 한국고용정보원이고 나머지 3종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보고통계와 조사통계간 유기적 생산체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통계작성 기획단계에서부터 보건복지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함께 상호협력해야 할 것이다. 조사통계와 보고통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생산되어야 정책의 통계 수요 충족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통계생산 기획단계부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보고통계와 조사통계간 조사대상과 조사항목의 유기적인 설계가 필요하

다. 먼저 조사대상 측면의 유기적 설계를 위해 보고통계에서 집계하지 못하는 조사단위를 조사통계에서 조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사업현황보고’의 보고단위는 개인 및 시설이므로 노인가구는 집계하지 못하고 있다. 조사통계인 ‘노인실태조사’ 또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노인복지사업현황보고’의 시설이용 노인가구에 대한 조사를 추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조사항목 측면의 유기적 설계를 위해 한정된 항목만 집계하는 보고통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조사통계에서 조사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둘째, 조사주기가 유기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보고통계인 ‘노인복지사업현황보고’와 ‘노인학대현황’의 보고주기는 1년이고, 조사통계인 ‘노인실태조사’의 조사주기는 3년,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2년이다. 결과 ‘노인실태조사’와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조사주기가 2008년, 2014년, 2020년 등 매6년마다 중복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두 통계의 조사주기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기 위해 노인실태조사의 주기를 고령화연구패널조사와 같이 짝수로 변경한다면, 노인실태조사와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조사연도가 서로 동일하게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다.

<표 19> 노인영역 복지통계의 항목별 비교

통계명칭	노인실태조사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노인복지사업현황보고	노인학대현황	
조사형태	조사통계	조사통계	보고통계	보고통계	
조사주기	3년	2년	1년	1년	
조사대상	개인 (15,146명) 가구(12,567가구)	개인 (10,255명)	개인, 시설	개인	
항목 비교	노인가구	○ 가구원 특성 ○ 가구 경제상태	-	-	
	인구학적 특성	○ 노인의 일반적 특성 및 거주실태	○ 인구학적 특성	-	
	가족 및 사회적관계와 상호지원	○ 가족 및 사회적 관계와 상호지원	○ 가족	-	
	경제상태	○ 소득, 소비 ○ 자산, 부채	○ 소득, 소비 ○ 자산, 부채	-	
	고용	○ 경제활동 -직업력 -현직업자, 과거취업자, 미취업자별	○ 고용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구직자, 은퇴자	-	
	건강상태	○ 건강 및 보건의료실태 -건강상태, 건강행태 ○ 기능상태 및 간병수발실태 -신체기능, 일상생활수행능력, 인지기능, 간병수발실태	○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여부, 진단시기, 치료, 일상생활 어려움 -우울증 -일상생활수행능력 상태 -수발노동	-	
	의료서비스 이용	○ 의료서비스이용 -의료시설입원여부, 횡수 -의료비 지출유무, 총액, 의료비 부담담자 -의료서비스 만족도	○ 의료서비스이용 -의료보장과 시설이용관련 -건강보험이용관련(건강보험, 의료급여,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여부, 건강보험료 부담자, 건강보험료, 체납여부, 체납기간, 건강검진 여부)	-	
	여가 및 사회활동	○ 여가 및 사회활동 -여가활동, 단체활동,	○ 사회적 관계, 활동	-	
	노인복지 서비스, 정책 및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 인지도, 경험률, 향후 이용희망률(요양및의료복지서비스, 주거복지서비스, 여가및사회활동서비스, 상담및생활지원서비스,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서비스)바우처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 인지경로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	○ 국민연금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가입여부, 납부여부, 예상수혜시점, 예상금액) ○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신청여부, 향후신청여부, 수급여부, 수급액수)	○ 총괄 -노인복지시설의종류 및 현황(연도별, 광역시도별, 시군구별)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노인휴양 ○ 계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시설,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시설, 방문목욕서비스 제공시설(시설명, 시설장, 이용인원, 종사자수, 시설소재지, 전화번호, 시설설치일, 운영주체)	-
	노인학대	○노인학대 - 학대유형별 경험유무, 가해자	-	○ 노인보호전문기관 -명칭, 지정기관, 대표자, 소재지, 지정일, 전화번호	○ 노인학대상담신고접수현황 ○ 학대유형 현황 ○ 노인학대 현장조사 및 종결사례 현황 ○ 학대피해노인 현황 ○ 학대행위자 현황 ○ 학대발생원인 ○ 서비스 제공현황 ○ 교육및홍보사업 현황
	노후생활과 삶의질	○ 노후생활과 삶의 질	○ 주관적기대감 및 삶의질	-	-
생활환경	○ 생활환경 -주거환경 -외출시 주된 교통수단, 교통사고 경험유무, 현재 운전여부, 과거 운전경험유무 - 지역사회환경 안전성	-	-	-	

② 장애인영역 복지통계

장애인 영역의 복지통계 5종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 ‘등록장애인현황’, ‘장애수당수급자현황’의 통계항목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의 경우 등록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조사’만 건축물이고, 나머지 4종 모두 등록장애인 대상이다. ‘장애수당수급자현황’의 경우는 등록장애인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보장시설·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대상을 행정보고하고 있고, ‘장애인실태조사’의 경우 시설장애인조사에서 미등록장애인도 조사대상이긴 하지만, 개인조사의 조사대상은 모두 등록장애인이다. 결과 등록장애인이 아닌 미등록장애인을 포함한 우리나라 장애인구 및 장애인 출현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조사통계인 ‘장애인실태조사’의 경우 2007년 감사원으로부터 「국가 주요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와 관련하여 조사대상 선정시 비장애인을 조사대상에 포함하게 되어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2008년부터 가구표본조사가 아닌 보건복지부의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하여 성, 연령, 장애아, 장애등급, 지역 등을 고려한 표본을 추출하여 등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조사하게 되었다. 그러나 장애인등록제도를 통해 장애인구를 파악하는 방법은 대부분의 경우 행정기록이 불완전하고 비연속적이며 아직까지는 등록률이 낮아 대표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 관련 통계로서의 의의가 적다.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욕구 조사가 의미가 있으려면, 지속적인 장애범주확대와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확충으로 장애인 등록률의 상승이 필요하다(장애인실태조사, 2008). 따라서 조사통계의 조사대상을 유기적으로 설계하여 장애인관련 조사통계의 조사대상을 등록장애인이외의 미등록장애인까지 추가함으로써, ‘등록장애인현황’의 보고 대상자이외의 잠재 대상자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향후 조사통계의 조사대상으로 등록장애인이외에 미등록장애인을 추가하여, 등록장애인만을 집계하고 있는 보고통계인 ‘등록장애인현황’과 ‘장애수당수급자현황’이 갖는 한계를 상호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보고통계에서 보고집계하지 못하는 내용을 조사통계에서 조사하는 유기적인 통계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장애인편의시설의 경우,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에서는 편의시설종류별 설치율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호보완적으로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에서는 장애인 체육시설에 설치되어야 할 편의시설, ‘장애

인실태조사'에서는 교통수단 이용 시 어려움 정도와 주된 이유에 대한 주관적인 통계항목을 조사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인편의시설설치 현황조사'의 조사대상인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만족도, 향후 이용희망 등에 대한 주관적인 통계항목을 조사하여, 상호연계된 통계생산기획을 설계해야 한다.

셋째, 장애수당의 경우, 보고통계인 '장애수당수급자현황'에서 장애등급별, 경제상태별, 지역별 장애수당수급액 항목을 제공하고 있고, 조사통계인 '장애인실태조사'에서 공적이전소득의 세부항목으로 장애수당수급액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수당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장기적인 장애인 소득보장정책 목표의 수립을 위해서는, 동일 대상자의 경제상태에 대한 주기적인 반복 측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통계에 대한 패널조사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넷째, 5종 통계의 통계작성기관은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의 경우만 문화체육관광부이고 나머지 4종은 모두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조사통계의 항목은 시계열적 분석을 위해 기본 체제를 유지해야 하지만, 사회제도적 환경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통계항목을 조사차수마다 추가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의 주도하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상호협력하여 유기적인 통계 생산을 기획하도록 한다.

<표 20> 장애인영역 복지통계의 항목별 비교

통계명칭	장애인인실태조사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	등록장애인현황	장애수당수급자현황	
조사형태	조사통계	조사통계	조사통계	보고통계	보고통계	
조사주기	3년	1년	5년	분기	반기	
조사대상	개인	개인	건축물	개인	개인	
항목비교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 제가 7,000명 시설 34,449명	○ 등록장애인 - 1,511명	-	○ 등록장애인 수 - 장애유형별, 등급별, 성별, 연령별, 거주지별	○ 등록장애인 중 국민 기초생활보장·보장시 설·차상위계층
	장애수당	○ 경제상태 -공적이전소득(국민기초 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 연금, 장애수당, 장애아 동수당, 장애연금, 기타 사회보험급여소득, 기타)	-	-	-	○ 장애수당 수급액 -장애등급별(중증/경증), 지역별, 국민기초생활보 장·보장시설·차상위 계 층별
	장애인 편의시설	○ 장애인 편의시설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 움 정도·주된 이유,	○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한 인식 -체육시설에 설치되어야 할 편의시설	○ 편의시설종류별 설 치율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 생시설, 안내시설, 기타 시설 ○ 건물유형별 설치율 -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 회시설, 의료시설, 교육 연구및복지시설, 업무시 설, 숙박시설, 공장, 자 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 시설, 기숙사, 공동시설, 공원, 공공및민간관련시 설, 정비대상시설 ○ 건축행위별 설치율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 생시설, 안내시설, 기타 시설 ○ 지역별 편의시설 설 치율, 적정설치율 ○ 편의시설 설치수준	-	-
	장애인 생활체육	-	○ 장애인생활체육참여 실태 ○ 장애인생활체육미실 행실태 ○ 장애인생활체육인식 ○ 장애인체육시설인식	-	-	-
	일반적 특성	○ 장애인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현재 경제활동 분야/직종, 건강보험 가 입 여부, 국민기초생활보 장대상 수급여부/형태, 장애등록연도, 등록장애 유형/장애등급, 총가구원 수가구유형, 가구주	-	-	-	-
	장애 특성	○ 장애특성 -15개 장애유형별 장애유 무, 최초 장애발견시기, 장애의 주된 원인	-	-	-	-
	기타	○ 보건·의료 ○ 일상생활지원 ○ 보육·교육 ○ 경제활동 ○ 사회 및 여가활동 ○ 결혼생활/여성장애인 ○ 생활만족도 및 폭력 · 차별 경험 ○ 주거 ○ 사회복지서비스 ○ 경제상태	-	-	-	-
	시설장애인	○ 시설 일반사항 ○ 시설장애인 특성	-	-	-	-

다섯째, 장애인 영역의 통계 5종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 ‘등록장애인현황’, 장‘애수당수급자현황’를 분석한 결과, 다음 <표 21>과 같이 ‘장애인’ 용어의 개념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개념정의를 비교한 결과 ‘등록장애인현황’, ‘장애수당수급자현황’은 모두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통계였다. 그러나 ‘장애인실태조사’의 경우는 2008년부터 조사대상이 변경되어 2008년 이전 장애인실태조사의 ‘장애인’과 2008년 이후 장애인실태조사의 ‘장애인’의 개념 간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는 2008년 이전 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은 재가장애인의 경우 일반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조사가구원 중에서 장애인을 조사하였고, 이러한 장애인이 모두 등록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사장애인이 모두 등록장애인이 아닌 이유는 조사 당시 비교적 최근에 등록장애인 수에 포함되었거나 또는 내부장애의 경우 외부기능, 감각 및 정신장애 등 전통적인 장애와 달리 장애인이라는 인식이 약하기 때문이다(장애인실태조사보고서, 2005). 최근 실시된 2008년과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를 비교하여 보면, 2005년의 경우 조사대상은 총200개 조사지역의 방문가구수는 45,285가구이고 이 중 40,556가구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조사완료가구 40,556가구의 가구원 수는 약 119,306명이었다. 이러한 조사완료 가구원 수 119,306명 중 장애인은 약 5,466명, 비장애인은 약 113,840명이었다. 조사 장애인 약5,466명 가운데 등록장애인은 약 4,340명(79.4%)이다. 반면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이 등록장애인만으로 변경됨에 따라 2008년 3월말 기준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어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의 조사 장애인은 모두 등록장애인(100%)이다.

<표 21> 통계별 용어 비교

용어	통계명	조사연도	개념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장애인	장애인실태조사	2008년	2008년 3월말 기준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등록 DB에 기재된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2008년부터 이전의 실태조사와 달리 표본가구가 아니라 등록장애인을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 추출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조사로 변경됨. 전체 가구를 모집단으로 하는 가구표본을 추출하여 이들 가구의 전체 가구원을 대상으로 장애유무를 판정함. 따라서 장애인 등록 DB의 등록장애인 이외에, 미등록장애인이나 법정장애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장애인’으로 조사될 수 있음.	조사장애인수 약7,000명 등록장애인수 약7,000명 (100%)	조사장애인수 약67,110명 등록장애인수 약34,449명 (51.4%)
	장애인실태조사	2005년		조사장애인수 약5,466명 등록장애인수 약4,340명 (79.4%)	조사장애인수 약47,629명 등록장애인수 약28,284명 (59.3%)

제 2 절 해외사례

1. 국제기준

(1) 가족·복지시설 영역

가족영역 통계의 경우 OECD Family Database 구축에 관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선진 국가에서 경제발전과 교육 등의 영향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여 왔고 이에 따라 여성들의 직업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가정친화적 정책이 국가의 주요정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OECD는 회원국들의 일·가정양립의 정책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동·가족·아동분야에 비교가능한 국제지표를 제공할 수 있는 Family Database를 2008년부터 새롭게 구축해 나가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이는 기존의 OECD 데이터베이스들과 유럽연합(EU)의 데이터베이스, OECD의 개별프로젝트들 등에서 제공되던 정보를 취합하고, 회원국들의 가족, 노동, 공공정책, 그리고 아동성과분야의 지표들을 수집하여 구축한 것이다. 이를 통해 Family Database는 가족과 아동에 대한 개별 국가의 정책 현황과 정부의 가족부문 지출, 일·가족생활 양립실태와 아동의 복지 등 가족정책의 성과들을 공유하고자 국제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

최초의 OECD Family Database는 2006년 말에 공개되었으나 대부분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2008년에는 새로운 지표들을 포함하여 23개 지표를 공개하였고 2009년에는 기존의 자료를 최신화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통계들을 추가개발하여 4개부문 5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4개의 대분류는 ‘가족의 구조’(9개 지표),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12개 지표), ‘가족과 자녀에 대한 공공정책’(15개 지표), ‘아동성과’(18개 지표) 등 크게 4개의 대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부모와 자녀의 핵가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네 개의 대분류 체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분류 ‘가족의 구조’는 가족의 구성과 형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가족과 아동, 출산지표, 혼인과 동거 상태에 대한 9개의 지표 아래 34개의 요구통계가 제시되고 있다(<표 22> 참조).

<표 22> 가족의 구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요구통계	
가족의 구조	가족과 아동	가족 규모와 구성	평균가구원수	
			가구유형	
		가족 내 아동	아동 및 부모동거여부에 따른 가구분포	
			아동수별 가구분포	
		아동의 주거상황	0-14세 아동의 가구유형별 분포(1)	
			0-14세 아동의 가구유형별 분포(2)	
	0-14세 아동의 가구내 아동수별 분포			
	출산지표	출산율	0-14세 아동의 부모와의 동일가구내 거주여부	
			0-14세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부모의 특성	
		첫 자녀 출산시 모의 평균 연령	합계출산율	
			완료출산율	
			생존출생아의 출생순위별 분포	
		혼외 출산율과 십대 출산율	출생순위분포의 변화(1980-2005)	
			국가별 여성경제활동참여와 합계출산율의 관계	
			첫 자녀 출산시의 모의 평균연령	
		무자녀	무자녀	1970년 이후의 첫 자녀 출산시 연령의 지연추이
				연령별 출산율
				혼외출산아 비중(최근연도)
				1970년 이후의 혼외출산아 비중의 변화
	국가별 혼외출산아 비중과 출산율의 관계			
	십대출산율(1980년과 2005년)			
혼인율과 이혼율	혼인율과 이혼율	코호트별 무자녀 비중		
		확정적인 무자녀 비중		
		1965년 코호트의 확정 무자녀와 완료출산율의 관계		
	동거율과 기타 파트너십의 비율	동거율과 기타 파트너십의 비율	무자녀 가구에 속한 여성의 비중	
			조혼인율의 추이(1970년-2007년)	
			초혼의 비율	
			초혼연령	
			초혼연령에서의 남녀차이	
			조이혼율의 증가추이(1970년-2006/7년)	
혼인과 동거 상태	혼인과 동거 상태	이혼시 평균결혼기간(1980년-2005)		
		파트너십 종류별 분포		
		파트너십 종류와 자녀수별 분포(2001년)		
		파트너십의 거주형태		
		파트너십의 거주형태		

* 주: 2009년 현재 OECD에서 작성기준을 제공하는 지표만 정리함

다음으로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는 최근 고용여부와 고용상태에 따라 가족이 필요로 하는 정책 수요와 일-가정생활의 양립에 대한 가족들의 요구를 고려하기 위해 가족·아동과 고용상태, 성별 연령그룹별 고용률의 고호트 비교, 근로시간과 돌봄노동에 소요하는 시간에 대한 12개 지표와 17개 요구통계가 있다(<표 23> 참조).

<표 23>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요구통계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가족, 아동과 고용상태	고용 상태별 가족의 아동	-
		모성 고용률	여성고용률 대비 모의 고용률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별 모의 고용률
			16세이하 자녀수에 따른 모의 고용률
		가족상황별 어머니의 고용	-
	생애주기에 따른 고용 프로파일	성별 연령별 고용 프로파일(2005)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에 따른 모의 고용률과 출산휴가율
			전일제 중위소득 근로자의 성별 임금격차(2004)
	성별 연령별 고용률의 고흐트 비교	성별 임금 격차와 학력별 소득 차이	상하위층 전일제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2004)
			전일제 중위소득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 경향(1980-2004)
			교육수준별 연령집단별 남성 대비 여성의 평균 연간소득(2004)
			시간제 고용 비율(2005)
		고용 성과의 성별 격차	여성의 시간제 고용률의 변화(1990-2005)
	임시고용 비율(2005)		
	임시직 여성 비율 동향(1990-2005)		
	학력별 여성의 고용률과 성별 고용률 격차(2004)		
	근로시간과 돌봄노동에 소요하는 시간		성별 주당 평상 근로시간
		주당 40시간이상 근로인구 비율의 변화(1985-2005)	
		주당50시간이상 근로인구 비율의 변화(1985-2005)	
		자녀유무와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별 커플 가구 성인의 근로시간	-
		자녀 유무와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별 싱글 가구의 근로시간	-
		가족 우호적인 근로환경의 실제	-
여가나 근로에서 벗어나 보내는 시간	-		
근로와 돌봄, 가사일에 소요하는 시간	-		

* 주: 2009년 현재 OECD에서 작성기준을 제공하는 지표만 정리함

가족과 아동에 대한 공공정책의 성과를 파악하고 정부의 개입 정도를 살펴보기 위한 ‘가족과 아동에 대한 공공정책’은 유자녀 가족에 대한 보편적인 조세/급여 지원, 아동관련 휴가, 어린 영아에 대한 공식적인 보육 및 교육, 가족유형과 소득

수준별 보육급여 유형과 순 부모 비용에 대해 15개 지표, 31개 요구통계가 있다 (<표 24> 참조).

<표 24> 가족과 아동에 대한 공공정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요구통계	
가족과 아동에 대한 공공정책	유자녀 가족에 대한 보편적인 조세/급여 지원	가족급여에 대한 공공지출	급여종류별 가족 급여에 대한 공적 지출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	교육수준별 공공지출 비율 교육수준별 학생 1인당 공공지출 비율	
		가족현금급여	가족현금급여	
		조세/급여 체계의 중립성	OECD 국가들의 조세급여 시스템 비교 1차 소득자가 AW 67%일 때 2차소득자의 평균실효세를 비교	
		아동 부양 체계	아동부양체계의 핵심적인 특징들	한부모와 자녀부양비를 받는 한부모 비율 자녀부양비 수준
			양육지원	-
		아동관련 휴가	부모휴가시스템의 핵심적인 특징	전일제 근로자의 출산 및 아버지휴가, 육아휴직 산출 아동1인당 출생당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지출
	부모별 휴가 급여 사용률		1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피고용인 부모의 휴가 사용 비율	
			자녀의 출생순위별 1세미만 자녀의 모성휴가 사용 휴가를 사용하는 어머니 대비 아버지 비율	
	근로하는 부모의 추가적인 휴가 수급권	법정휴일과 노조합의에 따른 휴가, 공휴일수 근로하는 부모들이 추가적으로 이용하는 휴가		
	영아에 대한 공식적인 보육 및 교육	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공공지출	유아교육보육서비스에 대한 공공지출 비율	
			아동1인당 유아교육·보육서비스 이용률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이용률	6세미만 아동의 유아교육·보육서비스 이용률	
			3-5세 아동의 유치원 대기율	
		자녀보육비지원	6세미만 아동에 대한 유아교육·보육 이용률	
	유치원을 다니는 2세 아동의 보육비용			
	가족유형과 소득수준별 보육급여 유형과 순 부모비용	보육과 유아교육서비스의 유형	평균임금 167%인 2인 소득자 가구에 대한 전일제 보육이용의 순 아동보육비용 평균임금 167%인 한부모 가구에 대한 전일제 보육이용의 순 아동보육비용	
		보육과 유아교육서비스의 질	보육유형	
			보육시설(0-3세 아동)의 교사 대 아동 비율	
			유치원의 교사 대 아동 비율	
		방과후보육서비스	보육시설 교사의 자격요건과 주 근무지	
			유치원 교사 자격요건과 주 근무지	
		3-11세 연령별 아동의 방과후보육서비스 등록 비율		
	방과후보육서비스의 핵심 특징들			

* 주: 2009년 현재 OECD에서 작성기준을 제공하는 지표만 정리함

마지막으로 ‘아동의 성과’에서는 아동건강, 아동빈곤, 교육 및 기초 문해, 사회 참여에 대해서 18개 지표, 28개 요구통계를 통해 국가간 비교를 할 수 있다(<표 25> 참조).

<표 25> 아동의 성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요구통계
아동 성과	아동 건강	영아사망률	영아사망률(2005)
			일부국가의 영아사망률(1970-2005)
			영아사망률의 감소(1970-2005)
		저체중 출산	저체중아 비율(2005)
			저체중아 비율 변화(1980-2005)
		백신율	2세아동 백일해 접종율과 전체인구 백일해 발생율(2005)
			2세아동 홍역 접종율과 전체인구 홍역 발생율
		모유보급율	-
	질병 관련 통계: 아동의 당뇨병과 천식	-	
	10세 이하 아동의 비만	-	
	15세 이상 아동의 성별 상습 흡연자	-	
	아동 빈곤	가구유형별 소득 지위의 경향	소득불평등의 지니계수(2000년대 중반)
			불평등 정도(1980년대 중반-2000년대 중반)
			가구유형별 상대 소득(2000년대 중반)
			가구유형별 상대소득(1980년대중반-2000년대 중반)
		아동 빈곤	아동 및 전체인구 빈곤율(2000년대 중반)
			아동빈곤율 변화(1990년대중반-2000년대 중반)
			가구유형별 빈곤율(2000년대 중반)
			모성고용률이 높은 국가에서의 낮은 아동빈곤율 아동과 유자녀 가구의 빈곤율(2000년대 중반)
	교육 및 기초 문해	성별 교육수준과 정규교육의 평균기간(년)	성별 및 연령별 고등학교 졸업 비율(2004)
			성별 및 연령별 대학교 졸업 비율(2004)
			수료한 공교육 연수(2004)
		학과별 대학 졸업자들의 성별 차이	성별 인문학, 예술, 교육학 분야 대졸자 비율(2004)
			성별 수학, 컴퓨터공학 분야 대졸자 비율(2004)
			성별 공학, 산업공학, 토목공학 분야 대졸자 비율(2004)
		9세 연령의 기초학력 점수	-
		15세 연령의 성별 기초학력 점수	읽기와 수학 성적 성차, PISA(2003)
			조기교육 참여 기간별 평균 읽기점수 차이, PISA(2003)
			부모 고용형태별 평균 읽기점수 차이, PISA(2003) 부모 교육수준별 평균 읽기문해율 점수, PISA(2003)
	교육이나 고용상태에 있지 않은 청소년	성별 학교나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15-19세 젊은이 비율(2004)	
		성별 학교나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15-19세 젊은이 연평균 성장률(1995-2004)	
	사회 참여	15-29세 청소년의 자원봉사나 NGO 회원 참여	-
생애 첫 투표 이용률		-	
십대 투옥률		-	
청소년의 약물남용		-	
십대 자살		-	

* 주: 2009년 현재 OECD에서 작성기준을 제공하는 지표만 정리함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통계작성기준이 국가간의 상이한 문화와 제도를 바탕으로 하여 공통의 요소들을 추출하여 비교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 자체의 성격 때문에 개괄이며 관념적인 경향이 있으나, 앞으로 OECD기준에 따른

Family Database 기준을 참고하여 관련통계를 생산, 국내 및 국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전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 복지시설 통계영역의 경우 국제기준 측면에서는 전세계적으로 탈시설화 경향에 의해 우리나라와 같이 ‘가정위탁국내입양 소년소녀가정현황’ 등과 같은 통계가 집계되고 있지 않고 있어, 이러한 시설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집계를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한 통계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 국가에서 집계한 통계자료에 대한 이용가능성을 높여 다양한 전문가와 통계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아동·청소년 영역

현재 사회가 발전할수록 아동·청소년의 생활전반적인 복지향상이 대두됨에 따라 OECD에서도 개인별 역량강화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필요한 정책 개발을 위해 여러 가지 주요 통계 결과를 중점적으로 현재 아동과 청소년의 현실상을 알아보고, 필요한 사회자원 및 정보를 수집하는데 주안하고 있다. 의식주생활 및 기본생활, 권리, 인권 보장을 위한 단순 서비스 위주에서 개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자립의 성공까지 능동적 복지를 추구하는 국제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OECD에서 정의하고 있는 핵심역량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설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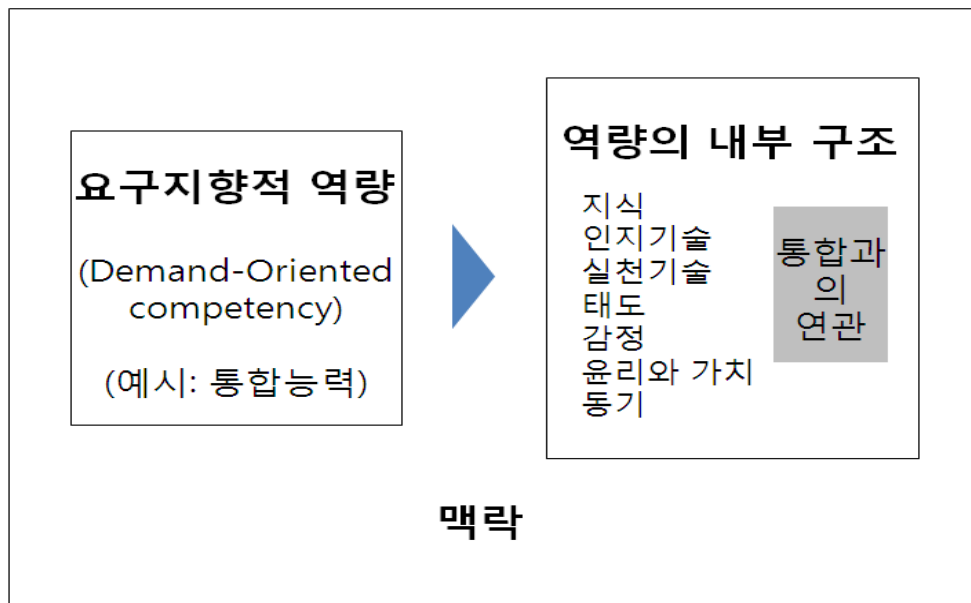
OECD(2003)에서는 지속적인 사회 발전과 개인의 성공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핵심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기초기능(basic skill)’은 지식 기반사회의 복잡한 요구에 비추어 볼 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고차원적인 새로운 핵심 역량(key competence)을 규명하고, 이를 모든 이가 습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OECD의 DeSeCo 프로젝트는 12개 국가의 사회학자, 측정전문가, 철학자, 인류학자, 심리학자, 경제학자, 역사학자, 통계학자, 교육학자, 정책입안자, 기업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역량을 범주화하고 정의하고자 하였다. 연구진들은 역량의 개념을 ‘특정 상황의 복잡한 요구들을 인간의 인지적, 비인지적 측면의 심리학적 특성(psychosocial prerequisites)을 활성화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ability)’으로 정의하였다. 역량 가운데에서도 개인적 삶의 성공과 동시에 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고, 다양한 사회적 영역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개인을 위해 필요한 능력을 핵심역량이라고 규정하며 이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다.

첫째, 역량을 요구와 관련하여 유능한 수행이나 효과적 행위 측면에서 본다는 점에서 요구지향적(demand-oriented) 혹은 기능적(functional)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역량은 지식이나 기술과 같은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의 태도, 감정, 가치, 동기 등과 같은 비인지적인 측면을 포함한다.

셋째, 역량은 인간 행위가 항상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맥락에 따라 이해해야 한다. 다음 <그림 7>과 같이 개인의 역량강화를 중점으로 한 아동과 청소년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OECD에서 작성하는 아동·청소년의 대표 복지영역 통계인 Child Well-being의 조사 결과와 내용을 중심으로 기준삼아 많은 국가에서 복지통계를 생산해 내고 있다.



* 출처 : DeSeCo(2003). The demand defines the internal structure of a competence.

<그림 7> 성공적 삶과 기능적 사회를 위한 핵심 역량 구조

Child well-being이란 아동의 삶의 질을 의미하며, 아동정책 21개와 관련된 주요 영역 6개에 대한 아동의 삶의 질을 OECD 31개국을 공동으로 측정하고 있다. 총 7장으로 구성된 이 발간물은 아동·청소년 복지 현황, 6개 영역의 조사결과에 따른 국제비교, 아동·청소년의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복지 소비 금액, 가구 구조

에 따른 아동과 청소년의 삶의 질,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기성세대와의 융합을 위한 방안, 아동·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발전방안 등을 다루고 있다. 6개의 국제비교 가능한 기준의 조사 영역으로는 정신적 삶의 질, 주거환경, 교육, 건강과 안전, 위험 행동, 학교생활의 질 등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른 대략적 중심 항목으로는 다음과 <표 26>과 같다.

<표 26> OECD Child well-being

대분류	전반적 삶의 질	주거환경	교육	건강과 안전	위험 행동	학교생활의 질
소분류	평균가구 소득	아동·청소년의 인구과잉	평균글쓰기점수 (일반지적능력)	태아 저체중 정도 유아사망율	흡연율	따돌림 경험도
	빈곤아동·청소년 현황	환경여건	응용 및 활용의 정도	자살율 사망율	음주율	
	교육 미제공	-	취업 훈련 및 교육에 참여 중인 아동·청소년	결식아동·청소년	미혼모(아동·청소년) 출산율	학교생활 만족도
				모유수유정도		
				홍역백신접종정도 백일해백신		
				접종정도 신체활동		

위와 같이 사회복지통계를 생산하면서 아동·청소년 전반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31개의 국가의 비교를 통하여 현재 아동·청소년의 감정, 인권, 교육, 건강, 보호 등의 현실상을 알아볼 수 있는 것과 더불어 생애주기적인 복지정책의 수립을 위해 개인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여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3) 노인·장애인 영역

1948년 UN의 노인 권리선언을 시작으로 ILO, OECD 등 여러 국제기구에서는 노인에 관한 국제원칙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국제기구에서 제시한 노인관련 주요 국제원칙을 살펴보면 다음 <표 27>과 같다.

<표 27> 노인 관련 국제원칙

연도	국제기구명	국제원칙	세부사항
1948	UN	노인권리선언	안심, 안전, 존경 등 10가지 권리 제시
1952	ILO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	ILO가 제시한 9가지 사회적 위험에 노령 보장 포함
1967	ILO	장애·노령·유족연금에 관한 협약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노령연금지침제공
1982	UN	고령화에 관한 국제행동계획	고령화에 관한 세계회의에서 채택됨. 노인관련 정책사업의 실천적 지침제공
1991	UN	노인을 위한 원칙	국제행동계획 중 인도적 측면 강조, 자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 등 5개원칙 명시
1998	OECD	고령사회대비 7대 원칙	퇴직관련정책 및 보건정책에 대한 기본틀 명시(공공부채, 퇴직후 소득, 조기퇴직, 금융시장과 연금제도, 생산인력 등)
2002	UN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	노인과 발전, 노년까지 건강과 안녕증진, 능력을 지원하는 환경확보

· 고령화에 관한 국제행동계획(1982)

UN 국제고령화행동계획은 1982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제1차 세계고령화총회(World Assembly on Aging)에서 채택되었다. 국제고령화행동계획은 인구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각 국가와 시민사회의 능력을 강화하고 노인의 잠재 능력의 개발 필요성을 알리려는 목적에 따라 사회복지, 건강·영양, 노인소비자 보호, 주거환경, 가족, 소득보장과 고용, 교육 등 7개 분야에서 실시될 필요가 있는 정책방향을 권고하였다.

·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2002)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은 2002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한 제2차 세계고령화회의(The Second World Assembly on Ageing)에서 채택되었다. 크게 ① 고령사회에서의 지속적인 발전(Older persons and development), ② 노년기의 건강과 안녕 증진(Advancing health and well-being into old age), ③ 노인을 지지하는 환경마련(Ensuring enabling and supportive environments)이라는 3가지 주요 방향(Priority direction)을 설정하고 세부 과제(Issue) 14가지를 다음 <표 28>과 같이 제시하였다.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은 제1차 세계고령화총회(World Assembly on Aging)에서 채택된 행동계획을 새롭게 보완하여 향후 국가별 고령

화 관련 사회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지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 복지통계에 대한 국제기준의 목표와 방향의 설정에 있어서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기구에서 제시한 원칙 고령사회에서의 지속적인 발전, 노년기의 건강과 안녕 증진노년, 노인을 지지하는 환경마련 등이 준수되어야 한다.

<표 28> UN Recommendations for action

Priority direction	Issue
Older persons and development	Issue 1: Ageing labour force with active participation in society and development.
	Issue 2: Rural development, migration and urbanization
	Issue 3: Access to knowledge, education and training
	Issue 4: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Issue 5: Income security, social protection/social security and eradication and prevention of poverty.
	Issue 6: Emergency situations
Advancing health and well-being into old age	Issue 1: Universal and equal access to Health promotion and health-care services throughout life
	Issue 2: Older persons and HIV/AIDS
	Issue 3: Training of care providers and health professionals
	Issue 4: Mental health needs and disabilities of older persons
Ensuring enabling and supportive environments	Issue 1: Housing and the living environment
	Issue 2: Care and support for caregivers
	Issue 3: Neglect, abuse and violence
	Issue 4: Images of ageing

* 출처: <http://www.un.org>

한편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해 국제기구에서는 장애인에 관한 국제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장애인 복지통계의 생산기획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국제기구에서 제시하는 권고안의 준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기구 중에서도 특히 UN의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는 다음 <표 29>와 같이 크게 10개 분야를 중심으로 45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附 29>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ategory	Article
Purpose	Purpose
	Definitions
	General principles
	General obligations
Equality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Disable people	Women with disabilities
	Children with disabilities
	Awareness - raising
	Accessibility and Personal mobility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Depositary
Right	Right to life
	Situations of risk and humanitarian emergencies
	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Access to justice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Signature and Authentic texts
Independence	Freedom of torture o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Freedom from exploitation, violence and abuse
	Protecting the integrity of the person
	Liberty of movement and nationality
	Living independently and being included in the community
	Freedom of expression and opinion, and access to information
Respect	Respect for privacy
	Respect for home and the family
Social bases	Education and health
	Habilitation and rehabilitation
	Work and employment
Participatio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and social protection
	Participation in political and public life
	Participation in cultural life, recreation, leisure and sport
	Entry into force
	Reservations
	Accessible format and Consent to be bound
	Amendments and Denunciation
Study	Statistics and data collection
	National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Reports by States Parties
	Consideration of reports
Cooperation	Cooperation between States Parties and the Committee
	International cooperation
	Relationship of the Committee with other bodies
	Report of the Committee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Regional integration organizations

* 출처: <http://www.un.org>

2. 외국의 통계작성체계

외국의 통계작성체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미국, 캐나다,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분산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분산형 통계제도를 취하고 있는 미국, 영국과 집중형 통계제도를 취하고 있는 캐나다의 통계작성체계 사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는 우리나라 통계작성체계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복지주제 통계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국가통계발전 기초자료 제공에 의의가 있다.

미국의 경우 완전분산형 통계제도를 취하고 있어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에서도 많은 공식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통계학을 하나의 학문으로 인정하여 많은 대학에 통계학과를 설치하여 통계의 발달을 노력해왔고 국가 또는 민간에서 생산하는 통계의 종류 또한 크게 발달해 왔다. 사회복지에 있어 국가가 주민의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정책을 중시하기 때문에, 미국의 사회복지통계의 특징은 공적 부조에 관한 통계가 전체 사회복지통계의 절반을 차지하며 이 부분을 강조되고 있다. 미국은 통계의 발달 뿐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 발달의 가족영역, 아동·청소년영역, 노인·장애인영역 등 여러 측면에 걸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는 점에서 통계작성체계의 비교국가로 선정되었다.

영국의 경우는 분산형 통계제도에서 집중형 통계제도로의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국가로 최근 Statistics Authority를 신설하여 분산화된 통계작성체계의 통합적 관리를 시도하고 있다. 체계적인 통계생산자원 관리를 통해 통계의 중복 생산을 축소하여 효율화를 추구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에서도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공급과 함께 비영리부문, 기업, 지방정부 등도 복지공급의 주체로 다원화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의 개혁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계작성체계 비교국가로 선정하였다.

캐나다의 경우 통계청을 기반으로 하는 집중형 통계제도로의 체계를 갖고 있다. 세부적으로 각 분야별·주제별로 나뉜 통계청의 조직에 따라 통계를 생산 및 기획하고 있으며, 통계작성수행인원의 모집이나 동원을 위해 주제분야별 대학기관, 연구소, 교수집단, 리서치기관, 기업 등과 연계된 생산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집중형 통계제도와 분산형 통계제도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집중형 통계제도는 한 나라의 통계활동이 하나의 전문화된 통계작성기관에 집중되어 각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통계를 모두 통계청이 국가승인통계로 생산하여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로 캐나다, 독일, 노르웨이, 네덜란드, 핀란드, 호주 등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전문화된 기관에서 숙련된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통계가 중복 작성되는 것을 피할 수 있으며 보다 체계적으로 자원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통계가 어느 특정부서의 하부조직이 아니라 독립적인 지위에 있어 행정적으로 독립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하기 쉬워 특정기관의 영향력이나 구속을 받지 않아 통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통계이용의 통계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각 부문별 전문지식의 활용이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다.

분산형 통계제도는 통계활동이 각급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각 기관의 고유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는 각 기관의 책임하에 작성하는 제도로서 미국, 프랑스, 스웨덴, 일본, 대만, 한국 등이 채택하고 있다. 이는 통계전문요원의 활용이 곤란하며 특정부문의 통계가 중복으로 작성되어 인력과 예산의 낭비가 따르고 이용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통계의 체계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어렵다. 그러나 각 분야별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관련통계를 개발하기 쉽고 통계수요의 증가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분산형 통계제도를 가진 미국, 영국 그리고 집중형 통계제도를 가진 캐나다의 통계작성체계 사례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통계작성체계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복지주제 통계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국가통계발전 기초자료를 제공해 보고자 한다.

(1) 미국의 통계작성체계

미국은 전체의 통계활동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으로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가 있으며, 복지통계생산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에 복지주제 영역통계를 주로 제공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국립보건통계센터, 사회보장청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노인 및 장애인, 가족 및 복지시설 통계와 관련된 통계현황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주제통계작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거나 제안되고 있는 통계체계와 지침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복지통계작성체계

미국에서는 복지와 관련된 통계자료는 주로 미국의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내 각 관련 부처에서 주로 생산되고 작성된다. 보건복지부에서 작성되는 복지와 관련된 통계의 종류는 크게 아동, 노인에 관한 통계와 건강, 그리고 소득보장과 관련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① 보건복지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가. 아동에 관한 통계

주로 보건복지부의 아동가족청(Administration on Children and Family: ACF)에서 작성되며, 채용과 양육 보고서, 육아 통계와 보고서, 아동과 가족통계와 간행물, 가족지원 보고서, 헤드스타트 통계, 난민 재정착 통계, 빈곤가족통계와 보고서, 복지개혁지출통계 등이다. 또, National Data Archive on Child Abuse and Neglect(NDACAN: www.ndacan.cornell.edu) 역시 미국내 아동 및 가족 통계와 관련하여 아동 학대 관련 연구자료의 data archive 역할을 하고 있다.

나. 노인에 대한 통계

주로 보건복지부의 노인청(Administration on Aging)에서 작성되며, 주로 노후와 인구 증가에 대한 통계정보를 보여준다. 노인통계정보는 미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 통계 자료와 향후 노인층 증가 추정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 가족에 대한 통계

가족과 관련하여서는 아동가족행정청(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에서 작성하는 아동 및 가족 통계(Children and Families Statistics), 가족지원보고서(Family Assistance Reports), TANF보고서(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Statistics and Reports) 등을 작성한다.

② 국립보건통계센터(www.cdc.gov)

미국에서의 복지통계에 관한 자료들은 국립보건통계센터(NCHS: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를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 NCHS는 국민건강조사(NHIS), 가족실태조사(NSFG), 가정간호 및 호스피스 진료조사(NHHCS), 모성-영아건강조사(NMHS) 등 미국 보건통계 생산에서도 주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산하에 있으며, 기관간 통계정책국(ICSP)에 속해있는 연방통계기관 중 하나이다.

③ 사회보장청(www.socialsecurity.gov)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는 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OASDI)프로그램과 Supplemental Security Income(SI)프로그램 등 사회보장프로그램에 대한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보장청의 정책국(Office of Policy)에서는 OASDI나 SSI에 대한 정책분석 및 연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주로 이 프로그램이 개인, 경제, 문제해결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한 연구를 시행한다. 장애인, 노인, 가족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간행한다.

· Annual Statistical Report on the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Program(2008)

1956년부터 사회보장프로그램은 장애인에게 현금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이에 대해 2009년 7월 공개된 2008연간보고서는 이 혜택을 받은 장애인 노동자, 장애인 미망인, 장애아동 등에 대한 프로그램과 인구학적 정보를 제공한다. 기본주제는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현 수급자 지위, 지급된 혜택, 지급종결, 지리학적 분포, 장애급여의 수입 등에 관한 것이다.

· Income of Aged Chartbook

보고서는 2년마다 발행되며, 55세 이상 인구의 소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로 사회보장, 연금, 자산, 수익, 공공부조 등에서 생기는 수입의 수령과 공유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 통계자료는 노인의 경제적 보장에 관해 효과적으로 설명해준다.

· **New Beneficiary Data System(NBDS)**

새로운 수급자료시스템 노인과 장애인의 급여에 관한 변화된 환경과 정보를 포함한다. 1982년의 새로운 수령자의 횡단분석에 기반을 두고, 원자료는 1991년의 2차면접과 행정기록에서 정보가 확장되었다. 또, 2000년 12월 급여변경과 1991년부터 1999년까지의 수입이 업데이트된 상태이다. 본 조사에서 사용된 변수는 인구학적 특성, 직업, 결혼, 아동양육사, 가족구성, 건강, 수입과 자산, 프로그램 지식, 그리고 결혼한 배우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사회보장에 관한 연구 뿐 아니라 건강, 경제, 노동, 노인학과 복지이슈에 관한 연구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OASDI Beneficiaries by State and County(2001~2010)**

본 연간발행물은 지역수준에서 사회보장인구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 그리고 퇴직, 유공자, 그리고 장애인 등 수급 유형과 퇴직 또는 장애노동자, 아내와 남편, 한부모, 아동 등의 수급 범주에 따라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OASDI에 대한 정보는 우편번호에 따라서도 제공된다. 또한 월간표 OASDI Monthly Statistics는 현지불상태에서의 수익과 노령유족장애인보험을 받는 수익에 관한 통계표를 제공한다. 이 도표는 수익을 받는 사람들의 수, 그들이 받는 수익유형, 월간 수익량을 포함한다.

· **Social Security Program Throughout the World**

사회보장프로그램은 170개 이상의 국가간 사회보장을 비교하고 각 나라에 주요 5대 사회보험을 요약한다. 현재는 2008년 유럽과 아시아, 2009년의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4개 지역(유럽,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아메리카)으로 나누어 6개월마다 발행되고 있으며, 연구자와 정책결정자들이 사회보장 변화를 접근하고 개인과 가구 및 가족과 관련하여 제도를 적용하는데 각기 다른 방법으로 재검토하려고 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2) 통계 생산과 관리

미국의 경우 연방통계프로그램 수행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

① 기관간 통계정책위원회(Interagency Council on Statistical Policy: ICSP)

ICSP는 통계활동이나 통계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관 사이의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예산관리국의 통계관련문제에 대해서도 자문을 한다. ICSP의 회원은 주요 통계기관들의 회장을 포함하여 환경보호기관(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국가 소득서비스(Internal Revenue Service),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등의 통계부서의 부서장들이다. 회원기관들 간에 경험을 교환하고, 서로 관심있는 주제에 대해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② 통계 정보 비밀보장 및 데이터 공유

전자정부 법안의 일환으로서 의회는 2002년 '비밀정보보호와 통계 효율성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취지는 조사과정에서 얻게 되는 개인의 정보 불법유출을 규제하는 것이다. 한편 이 법안에 따르면 경영관련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과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인구총조사국(Bureau of the Census)은 서로 통계자료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③ 연방통계자료 원-스톱 검색

ICSP 관할 아래 1997년 FedStats라는 정부 관계기관 웹사이트(www.fedstats.gov)가 열렸다. 이 사이트는 개별정부기관이 정부에 제출한 통계자료를 이 웹사이트

에서 한 눈에 살펴볼 수 있으며, 이에 일반대중이 통계자료에 좀더 가깝고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원-스톱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확장되고 있으며, MapStats link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GIS를 활용하여 통계자료의 활용성 및 접근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미국의 100여개 연방조직에서 산출된 통계를 지난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검색할 수 있으며, 2007년 4월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되었다. 알파벳에 의한 통계링크와 통계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연방기관 링크로 크게 2가지로 구분되는 것이 특징이다. 각 영역 중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링크 일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노인·장애인

항목	내용
노화관련통계 AgingStats.Gov	노년층 질병, 경제적 지위, 인구수 등 정보통계
2006년 미국내 노인 Older American 2006: Key Indicators of Well-Being	37개 복지 주요지표를 통해 알아본 미국내 노년층 삶에 관한 통계
노년인구통계 Population	보건복지부 산하 노화관리행정국(Adm.on Aging)이 조사한 노인인구통계
장애인구통계 Disabilities/Impairments	국가보건통계본부(NCHS)에서 제공하는 장애 관련 통계를 알파벳 순서대로 열람가능
노인인구 Elderly	노년층 질병, 경제적 지위, 인구수 등 정부통계
장애인구 Disability	보건복지부 산하 노화관리행정국이 발표한 장애인구 데이터

· 아동·청소년

항목	내용
아동 Children	연방정부 아동 통계국에서 조사한 가족소득과 빈곤아동 통계
아동프로그램 및 서비스 행정본부 Administration for children programs and services	보건복지부 내 아동가족행정본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통계열람
미국의 어린이들 America' Children (ChildStats)	미국내 아동 및 가족 통계
아동양육 Child Care	인구총조사국에서 실시한 '소득 및 프로그램 참여율' 통계
아동지원강화 Child Support Enforcement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가족행정본부의 아동지원 강화사무소의 정책 및 연구 열람
헤드스타트 HeadStart	아동가족행정본부에서 운영하는 빈곤아동지원

	프로그램으로서 2002년-2006년에 이르기까지 5년간의 프로그램 예산 및 내용에 관한 통계 열람 가능하며, 이 내용을 정리한 2008년 12월 발간된 보고서도 참조할 수 있음.
10대 임신 Teen pregnancy	국립보건통계본부가 발표한 10대 임신연령대 및 출산율

· 가족·아동복지

항목	내용
공공부조제도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TANF)	한시적 빈곤가정지원제도에 관한 통계
가정폭력통계 Domestic violence	법무부에서 발표한 가정폭력범죄 통계
생애주기 통계 Vital statistics	국립보건통계본부에서 제공하는 각 주의 출생, 사망, 혼인 및 이혼 통계
입양양육 Foster Care	아동가족행정부에서 조사한 입양 통계
입양 Adoption	미국내 입양 아동 및 입양가정 통계

④ 아동 및 가족 통계에 관한 정부기관 포럼(Interagency Forum on Child and Family Statistics, [http:// childstats.gov/ americaschildren/ index.asp](http://childstats.gov/americaschildren/index.asp))

1994년 예산관리국에서 아동 및 가족 통계 포럼을 꾸리면서 6개 정부기관을 투입하며 시작하여 현재는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입양기관, 연구기관을 포함하여 이 포럼에 관여하는 주체는 22개로 늘어났다.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자료를 좀 더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이같은 정보 보급의 증진에 힘쓰고 있다. 2009년에는 <미국의 어린이들: 주요복지지표>를 발간하였으며, 이 보고서는 아동의 삶에 중요한 측면과 관련하여 40개의 주요지표를 담고 있다.

⑤ 노화 연구에 관한 정부기관 포럼(Interagency Forum on Aging-Related Statistics,[http:// www.agingstats.gov/ agingstatsdotnet/ main_site/ default.aspx](http://www.agingstats.gov/agingstatsdotnet/main_site/default.aspx))

노년층에 대한 통계자료를 사용하거나 통계 산출에 있어서 연방 정부 기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여, 국립보건통계센터, 인구총조사국과 협력하여 1986년 국립노화연구소가 이 포럼을 만들었다. 이 포럼은 ‘보건 및 은퇴 연구’와 ‘자산 및 최

고령자 사이의 건강 역동에 관한 조사' 등과 같은 통계프로그램 운영에 도움이 되었다. 2008년 12월 포럼에서는 <2008 미국노인들: 주요복지 지표> 보고서를 발간했다. 5개 주요영역(인구, 경제, 건강상태, health risks and behaviors, 보건의료)의 38개 주요지표를 통해 미국 노년층의 건강과 복지통계를 산출했다. 포럼의 회원은 16개의 연방기관들로 이루어졌으며, 이 기관들은 노인에 관한 통계를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곳들이다. 이들 기관들은 서로 기관의 경계를 넘어서 데이터에 대해 토론하며, 새로운 데이터의 개발을 촉진하고, 노인관련 정보를 배포하는데에 사용되고 있는 메카니즘을 개선하며,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이슈들을 보고하기 위해 전문연구자를 초빙하고, 국제적 협력을 장려하고 있다.

3) 시사점

미국의 복지분야 통계는 복지통계생산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보건복지부, 국립보건통계센터, 사회보장청을 중심으로 주로 복지분야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분산형 통계제도를 취하고 있어 특정부문의 통계가 중복으로 작성되거나 이용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관간 통계정책위원회를 운영하며 통계활동과 관련하여 기관 사이의 업무를 조정하고 있다. 특히, 2002년 통과한 '비밀정보보호와 통계 효율성 법안'은 개인정보 불법유출을 막을 뿐 아니라 효율적으로 통계를 생산, 공유,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연방통계자료를 원-스톱으로 검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부의 데이터를 연구자와 일반대중이 보다 쉽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그 외 정부기관과 연구기관, 민간기관이 함께 특정 복지주제에 대한 통계포럼을 운영을 통해 주요한 지표를 제시하고 새로운 데이터 개발을 촉진할 뿐 아니라 다양한 통계수요를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경우 학교, 기관, 일반시민 등 통계이용자의 편의 내지는 interface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복지통계의 질적 발전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복지통계 관련 자료들이 최종사용자의 관점에서 접근 및 활용을 용이하도록 하는 법과 제도적 보완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에서 "비밀정보보호와 통계 효율성 법안"의

제정을 통해 다양한 통계관련기관들 사이에 자료공유 및 통합의 기제를 마련하는 것과 같은 예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영국의 통계작성체계

영국의 통계작성체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통계서비스의 기획·조정을 담당하는 중앙통계기관인 통계부(Statistics Authority)와 그 산하 통계청(ONS: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그리고 정부통계의 작성 및 보급기능을 담당하는 정부통계서비스(GSS: Government Statistical Service)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http://www.statistics.gov.uk>).

가장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영국의 통계청(ONS)은 영국 통계부의 사무국으로 국가통계의 계획, 산출,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재무장관이 전반적인 국가통계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며 통계위원회 및 국가통계위원 등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지며 통계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연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통계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에 대한 홍보를 담당한다. 통계청은 1996년 인구 총조사청(OPCS: Office of Population Censuses and Surveys)과 중앙통계청(CSO: Central Statistical Office)의 합병으로 새롭게 탄생하여 2010년 현재 영국의 전반적인 경제 활동, 건강, 사회개발 등 광범위한 통계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통계청의 연간 예산은 2009년 10월 기준 213만 유로화이고, 직원은 약 3,400명으로 이 중 1,300명은 현장 사회조사업무를 담당한다. 통계청의 본부는 South Wales의 Newport에, 사무소는 Hampshire의 Portsmouth와 London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영국의 통계청은 자문위원회(cross-cutting committees)를 별도로 운영하여, 통계발전계획 및 통계역할조정을 위한 통계정책수립, 통계조사방법론 등에 대한 자문을 얻고 있다. 영국의 복지통계를 가족영역, 아동·청소년영역, 노인영역, 장애인영역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영국의 복지통계

영국의 복지통계를 가족, 복지시설,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주제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통계명과 세부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30>과 같다.

<표 30> 영국의 복지통계

주제	통계명	세부항목
가족	APS, Annual Population Survey APS Household Datasets : 영국 통계청	- 가족형태별 가구수 - 연령, 자녀에 따른 가족특성 - 직업 유무에 따른 가족의 특성
아동· 청소년	Focus on Children and Young People : 영국 통계청	- 인구 - 가족 - 교육 - 노동시장 - 건강 - 교통사고율 - 재정 - 인터넷 환경 - 라이프스타일
노인	Focus on Old People : 영국 통계청	- 노인인구 - 지역별 연령 분포 - 노동시장 - 건강과 사회복지 - 라이프스타일 - 주거 - 소득과 지출 - 여가생활
	ELSA, English Longitudinal Study of Aging : University College London,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National centre for social research, University of Cambridge	- 중고령자의 건강 - 경제상태 - 삶의 질 - 경제사회적 환경
장애인	Focus on Social Inequalities : 영국 통계청	- 교육 - 일 - 소득 - 생활수준 - 건강 - 참여도
	LFS, Labor Force Survey : 영국 통계청	- 장애인 고용률 - 근로시간제별 장애인고용률 - 연도별 장애유형별 장애인고용률 - 근로가능연령 장애인고용률 - 장애인 시간당급여 - 장애인 취업자 수

① 가족영역

·연간인구조사Annual Population Survey(APS), 연간인구 및 가구조사 데이터셋(Annual Population Survey household datasets)

영국의 가족복지통계는 영국 통계청(ONS)의 ‘연간인구조사(Annual Population Survey)’와 ‘연간인구 및 가구조사 데이터셋(Annual Population Survey household datasets)’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국의 각 지역별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가족구성원의 역할 및 가족구성형태 등을 조사하였다. 본 통계는 2004년 최초 조사가 시작되었고 최근 공표시기는 2007년이다. 통계공표는 Data Archive(UKDA)에서 이루어진다. 원자료는 온라인에서 제공되고 있다. 주요 조사 항목은 가족형태별 가구비율, 부모의 직업, 교육수준에 따른 가족의 특징 등이 있다.

② 아동·청소년 영역

·아동 및 청소년 인구(Focus on Children and Young People)

영국의 아동·청소년 복지통계는 Focus on Children and Focus on Young People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현재 영국사회의 아동·청소년의 종합실태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의 집단을 10개의 주제별로 세분하여 인구, 가족, 교육, 노동시장, 건강, 교통사고율, 경제상태, 인터넷 환경(TV, 인터넷 사용 등), 범죄, 라이프스타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아동·청소년의 경험, 라이프스타일,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에 관한 분석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조사결과에 대한 공표는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최근의 공표는 2009년으로 온라인상에서만 이루어졌다.

③ 노인 영역

·노인인구(Focus on Older People)

노인복지통계로서 Focus on Older People은 2010년 현재 영국의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특성, 라이프스타일과 경험 등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특히 50세를 기준으로 한 것은 경제사회적으로 50대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고용률이 과거 10년 전보다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사회활동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통계보고서의 초판은 온라인상에서 발행되었고, 초판 발행 이후는 간행물로도 발간되었다. 가장 최근의 공표는 2005년이었고, 공표 시기는 부정기적으로 실시된다. 주요 변수로는 인구 규모, 연령별 지역별 인구분포, 노동시장, 건강과 영양, 라이프스타일, 주거, 소득과 지출, 여가생활 등이다.

·ELSA(English Longitudinal Study of Aging)

ELSA(English Longitudinal Study of Aging)는 2002년 조사설계를 시작으로 2회의 사전조사를 실시한 이후 2002년 3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제1차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주기는 2년이다. ELSA는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건강, 경제적 지위, 삶의 질, 경제사회적 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함으로써 퇴직과정과 고령화 과정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 초점을 두고 있다. ELSA는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표본의 수는 약 12,000명이다. 조사방법은 설문내용에 따라 면접원이 인쇄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면접을 진행하는 타계식 면접조사와 조사대상자가 직접 기입하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된다. 조사는 University College London, Institute for Fiscal Study, National centre for social research, University of cambridge가 함께 공동으로 주관하여 실시되며, 조사설계 당시 초기 5년동안 미국 NIA의 지원하에 미국의 HRS를 참조하여 설계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영국정부 8개 부처의 지원을 받았다.

④ 장애인영역

·사회적 불평등(Focus on Social Inequalities)

장애인 관련 복지통계는 사회적 불평등(Social Inequalities)에서 일부 제공되고 있다. 사회적 불평등조사에서는 장애인이 사회적 불평등(Social Inequalities)을 받는 사회집단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에 관한 조사가 실시되는 이유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 불평등, 빈곤, 사회적 배제 등 장애인에 한정된 불평등에서 나아가 좀 더 다양한 복지통계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른 대처에서 비롯되었다. Focus on Social Inequalities는 이러한 불평등을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교육, 일, 소득, 생활수준, 건강 그리고 참여도 등 구체적으로 제공한다. 가장 최근의 공표자료는 2004년이며 공표주기는 부정기적이다. 최초의 공표자료는 인터넷으로 제공되고 있다.

2) 시사점

영국의 복지분야 통계는 단일 항목으로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인구, 노동시장, 건강 및 요양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복합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이러한 영국의 통계작성체계는 분산형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영국 통계청에서 모든 국가통계의 기획, 분석, 관리를 관장하고 있다. 통계청조직 내에는 사회통계 및 분석을 위한 지역통계 전담조직(Regional Statistics)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중앙통계청과 지방통계청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한편 영국의 통계청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활동을 위하여 정부기구로부터의 정치적 영향 등을 배제시키고 운영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다. 또한 영국의 통계관리체계는 정부, 사회각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자, 경제계, 노동계, 소비자, 학계,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되는 자문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생산체계를 통하여 정부를 비롯한 기업, 민간 등 다양한 통계수요가 반영된 맞춤형 통계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와 같이 통계작성체계는 분산적인 형태이나 최근 국가통계 관리체계의 개혁을 시도한 영국의 사례는 우리나라 통계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3) 캐나다의 통계작성체계

캐나다에서 통계공급의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다. 캐나다의 중앙통계기관인 캐나다 통계청은 통계의 공급을 위해 설립되었다. 캐나다 통계청은 인구, 자원, 경제, 사회 및 문화 전반에 있어서 캐나다를 보다 잘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통계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객관적인 통계정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는 곧 일반인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기업, 조합 및 비영리단체들의 객관적인 현황 파악을 위한 견고한 토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매 5년 주기의 인구 조사와 함께 캐나다 국민 생활전반에 대한 다양한 통계조사들이 실시되고 있다. 캐나다 통계청은 수집된 통계정보의 비밀보호와 함께 시의적절한 통계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캐나다 통계청의 조직 구조 및 주제영역별 통계

캐나다 통계청의 조직은 크게 7개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승인 통계생산팀, 기업 서비스관련팀, 국민계정 및 분석연구팀, 무역통계팀, 정보분석 및 통계분석방법론팀, 여론조사 및 운영팀, 사회, 건강, 보건 및 노동통계팀 등으로 구분하여 각 팀별로 사회적, 거시적 현상 및 문제나 이슈에 대한 통계를 기획·생산하고 있다. 캐나다의 복지통계는 캐나다 통계청의 7개 조직 중에서 주로 사회, 건강, 보건 및 노동통계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담당팀과 함께 대학부설 연구소, 기업 등이 상호 연계하여 복지통계 영역별로 세분화된 주제의 복지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및 사회현황은 상시적으로 변화하는 것에 비해 복지 분야는 대상, 주제 등에 따라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캐나다의 복지통계는 여러 분야와 연계되어 영역별로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표 31>과 같으며, 이 중 우리나라의 복지영역과 유사한 통계는 Children and Youth, Families, Households and Housing, Seniors로 볼 수 있다.

<표 31> 캐나다 통계의 주제·영역별 명칭

주제 · 영역별 명칭	
Aboriginal peoples	Agriculture
Business, consumer and property services	Business performance and ownership
Children and youth	Construction
Crime and justice	Culture and leisure
Culture and leisure	Education, training and learning
Energy	Environment
Ethnic diversity and immigration	Families, households and housing
Government	Health
Subject list I to Z Income, pensions, spending and wealt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nternational trade	Labour
Languages	Manufacturing
Population and demography	Prices and price indexes
Reference	Retail and wholesale
Science and technology	Seniors
Society and community	Statistical methods
Transportation	Travel and tourism

캐나다의 복지통계의 경우 복지라는 주제가 아닌, 주체(대상) 및 세부주제에 따른 복지적 성격 및 성향을 중심으로 영역별로 아동청소년, 범죄자, 교육과 훈련, 가정과 환경, 건강, 약물, 노동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된 아동청소년, 가족, 노인영역의 분류는 아래 <표 32>와 같은 내용이다.

<표 32> 캐나다의 복지영역별 통계분류

복지영역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가족
Children and youth (general)	Seniors (general)	Families, households and housing (genera
Child care	Care and social support	Divorce and separation
Child development and behaviour	Elder abuse and victimization	Family history
Crime and justice (youth)	Health and disability among	Family types

	seniors	
Education	Housing and living arrangements	Household characteristics
Health and well-being (youth)	Income, pensions and wealth	Housing and dwelling characteristics
Immigrant children and youth	Participating and volunteering	Living arrangements of individuals
Labour market activities	Work and retirement	Marriage and common-law unions
Low income families	All subtopics for Seniors	All subtopics for Families, households and housing
Risk behaviours	Health Indicators	
Violence among children and youth	Health-Disability	
All subtopics for Children and youth		

① 가족영역 복지통계

· Families, Households and Housing(정부주재 통계)

중앙에서 실시하는 가족 관련 통계 주제로 가족 유형과 관련된 통계, 이혼가정의 증가추이, 가정구조 변화 양상, 가정 유지 및 활동 현황, 주거상의 가구 형태, 결혼 증가 추이 등을 주제로 하여 여러 자료형태의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세부항목으로 가족 단위와 가정 형성 방법, 가정 형태, 가정의 경제상황, 출산, 불임 및 자녀 입양, 부모의 역할 및 문제행동, 자녀 양육, 이혼가정 및 사별 가정, 형제 및 친족 등이 있다.

대표적으로 Community Profiles(캐나다 인구조사)를 통해 가정의 유형과 구조, 인원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는 5년 주기로 작성되는 통계로 최근 2006년 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캐나다 가정 형태와 현황, 자녀(아동과 청소년)의 수, 가족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② 아동·청소년영역 복지통계

· Children and Youth Research Paper Series

이 연구 통계는 캐나다의 많은 청소년과 아동과 연관된 주제들을 분류하여 매년 다른 주제로 통계를 생산한다. 신체, 정신적 발달, 건강, 행위, 친화력, 가정경력, 학교생활, 성인으로의 이행 등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체계는 아래 <그림 8>과 같다.

Product:	Children and Youth Research Paper Series		
Catalogue no.:	89-599-MWE		
Frequency:	Occasional		
Status:	Ongoing/Available		
Latest issue:	2006/2007, no. 6	Free	View
Release date:	September 25, 2009		More
Subscription:	one year (365 days)	N/A	
System requirements:	Internet browser. Adobe Acrobat reader is required to view and print files in PDF format.		
	Chronological index		

<그림 8> 아동·청소년 조사보고서 시리즈

2004년부터 시작된 아동·청소년의 시리즈 통계는 관련된 주제 영역에 대해서 매년 다른 주제로 시작되어 통계를 생산하는 시리즈물의 통계로서 부정적 행동 결과, 부모와 또래 관계의 변화로부터 오는 증상, 아동 복지, 건강발달, 초등학교 청소년 조사 등 각 매년 주기로 통계가 작성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은 주제별이 아닌 대상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통계 특징으로 인해 보육, 복지, 노동, 건강과 관련한 관계 부서의 협력 또한 연계성 및 네트워크가 잘 구성되어 있으며, 그 협력 아래 단일화된 주제영역을 집중적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내용별·주제별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 Youth Crime in Canada, 2006

이 통계는 범죄 청소년 12세~17세 2006년 일들을 작성하여 경찰에 보고한 자료를 분석하는 통계로, 2003년 청소년 형사 사법 법 (YCJA)의 구현과 최근의 동향

부터 청소년 범죄의 동향에 대한 통계를 근거로 하여 제공되었다. 이 통계보고서는 폭력 범죄 사이에 '재산 범죄', '기타 범죄 행위 코드 및 마약' 관련 범죄를 구별하고 '공식적인 비용 대체 수단의 사용', 'YCJA(청소년형사사법)의 도입', '청소년의 범죄 혐의를 처리할 방법의 변화'를 검토한다. 기타 주제 토론으로 '청소년 범죄의 발생 장소 등, 청소년 범죄 무기 사용 및 청소년 재판 법원, 청소년 교정 서비스와 YCJA(청소년형사사법)의 실시 후 변화 양상' 등의 조사를 실시한다. 원 데이터는 통일 범죄 조사보고(UCR)에서 단기 및 장기 발전방향과 동향, 그리고 국가와 지방 및 영토 수준의 동향과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정보자료로 제공하기도 한다. 데이터는 형사 사법 시스템에 제공될 뿐만 아니라 캐나다 청소년 범죄의 범위에 대한 연구, 정책 분석가, 학자, 매체 및 일반 대중에게 알리는 역할과 더불어 수요자 요구 및 이용자의 활용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한 통계 자료로서 제공된다.

③ 노인영역 복지통계

캐나다는 노인의 특성과 관련한 주제 및 관심으로 사회적 지원, 희생, 건강, 생활 준비, 수입, 사용 시간, 그리고 은퇴를 포함한 통계주제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된 국가적인 노인관련 조사로서는 아래와 같다.

· A Portrait of Seniors in Canada

본 조사에서는 노인인구의 증가 비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이 발행물은 고령화 사회에 대한 현황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주로 노인의 현재 세대의 상황에 대해 사회 참여 구성원으로 보고 사회 발전적 요소로 측정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되는 내용으로는 인구 통계 동향 및 노화의 실태, 노인의 건강, 삶의 질, 평생교육과 노동 및 사회 참여, 사회서비스 및 지역 사회 간호, 여가, 레저와 삶에 대한 현황, 캐나다의 원주민 노인, 이민자 노인 등이다.

④ 장애인영역 복지통계

캐나다의 장애인 영역통계로는 Health영역에서 Disability의 부분으로 체계를 자리 잡고 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조건이나 건강 문제로 인한 활동제한, 일상 활동 어려움, 심리, 의사소통, 학습, 유형 및 활동 제한의 심각도, 생활의 활동에 필요한 도움, 장기 장애, 특수 장비 사용이 필요한 사람, 고용, 교육, 여가, 숙박, 교통, 일시불 비용을 전문으로 하는 보조서비스, 의약품 관련, 경제적 특성, 보험과 소득원천 등의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정그룹 또는 일반 성인 및 아동청소년, 노인 등을 대상으로 장애 관련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 Participation and Activity Limitation Survey: Disability in Canada

본 조사는 캐나다의 국가 조사로 사회, 경제 참여 및 활동에 제한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조사(PALS)하는 통계로 성인과 아동의 일일 활동, 정신적, 신체적 또는 기타 건강관련 문제의 제한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자료이다. 주로 연령별·성별·연도별 장애인 수, 장애유형별 장애인 수, 장애인 경제활동 상태, 장애인 취업자 수, 직종별 장애인 취업자 수, 연령별 취업자 주당 근로시간, 근로계약, 장애인 취업이 어려운 이유 등 장애인의 고용을 중심으로 작성된 통계이다. 장애인 고용 실태와 취업현황을 파악하여 고용 정책 및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주기로 작성된다.

· Residential Care Facilities

본 조사는 노인·장애인과 관련된 사회서비스, 의료 시설 현황, 의료 시설 이용 원인 및 장애별 이용 등을 조사하는 통계이다. 여기서 '거주 치료 시설'은 국가 사회서비스 부서에서 허가 받은 영토 및 주거 환경에 건립된 시설에서 거주 환경을 갖추고 있는 건물로 민간 혹은 국가적 후원을 받고 있는 사회 유형물을 가리킨다. 이 자료는 시설에 초점을 맞추어 고령자, 정신 질환 및 건강(약물중독), 장애 등을 포함하여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다. 주로 주거 의료시설 이

용자 전체 수, 질병별 이용자 수, 장애별 이용자 수, 주거 의료 시설 이용 이유, 이용금액 등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 실시 후 사회적 서비스에서 단순 제공 의료 시설이 아니라 고품격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 정책 수립이나 사회복지적 사업 및 예산 확보에 근거로 이용되고 있다. 국가 회계적으로 시설이용에 대한 수익이 창출되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지만, 그만큼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사회시설의 필요성과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주요 결과로 시사하고 있다. 매년 작성 주기를 통하여 관련 법 및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수요·공급을 측정하고 있으며, 각 항목의 연계성을 가져 매년 통계자료와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는 등 주요 정보 제공 및 활용에 입각한 장애 관련 통계자료로 생산되고 있다.

3) 시사점

캐나다의 통계는 우리나라 통계와 달리 한 영역을 지정하여 그 속에 세부주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부주제 및 주체에 따른 영역으로 시작하여 각 사회의 이슈 및 필요성에 맞는 주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복지분야 통계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 가족, 장애인, 여성, 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복지 관련 혹은 사회보장 관련 통계를 조사하고 있어 복지관련 부처 및 해당부서에서만 통계를 생산하는 것이 아닌 여러 부처 및 개인과 기업도 복합적으로 필요성 및 목적의 구분에 따라서 통계를 생산해내고 있는 것이다. 복지통계생산체계가 단일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않지만 이와 관련하여 다양하고 복합적인 통계를 얻을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이라 볼 수 있다.

3. 국제기준과 적용범위

국제기준과 적용범위의 분석은 회수된 '통계작성현황조사표'를 토대로 실시하였다. 복지분야 품질진단 대상통계 24종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생산담당자에게 통계작성현황조사표의 작성을 요청하여 작성·회수된 조사표를 분석하였고 필요시 개별적으로 통계작성담당자에게 기입된 내용의 재확인을 통해 근거자료를 수집하였다. 통계작성현황조사표에서 국제기준과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F. 작성기준 및 분류'의 응답내용을 분석한 결과 '해당없음' 또는 '무응답'이 대부분이었기 때

문에 통계작성담당자에게 재확인을 실시하는 과정을 거쳤다.

(1) 가족·복지시설 영역

가족·복지시설 관련 통계에서 국제기준과 그를 적용하여 조사를 진행한 통계는 제한적으로 존재하였다. 가족과 관련된 조사통계 4종의 경우 국제적인 통계흐름이 복지·경제·노동 전반에서 가족을 중요하게 다루고 우리나라 역시 2000년대 중후반에 승인된 통계가 대부분이라 외국 참고문헌 및 분석, 조사방법에 있어 참고하는 경우는 있었다.

통계작성현황조사표의 분석결과, 국제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국제기준을 참고하여 생산되는 통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가족패널조사’는 호주의 HILDA, WHA, 유럽의 횡단면 조사인 FFS(Fertility and Family Surveys Project),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등 국내외 여성가족패널과 관련된 자료 구축 사례를 분석하여 통계구축에 활용하였다. 둘째, ‘가족실태조사’는 독일, 일본, 미국의 작성사례를 참고하였고, 현재 가족과 성역할에 대한 국제비교조사연구(ISSP)를 통해 부분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조사 준비기간의 확보와 심층적인 내용 검토 작업, 국제적 수준의 지표들을 조사내용에 반영하는 작업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육실태조사’는 호주의 Census of Child Care Services, Child Care Survey와 영국의 Child care and Early Years Survey of Parents를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국제기준 측면에서는 전세계적으로 탈시설화 경향에 의해 우리나라와 같이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현황’ 등과 같은 통계가 집계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이러한 시설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집계에 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지적을 받고 있기에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한 통계에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시설중심의 보호에 초점을 상당부분 두고 있는데 반해, 해외의 아동복지통계는 시설중심의 보호에서 벗어나 위탁 가정중심의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미국의 아동복지국에서 가정위탁된 아동들이 입양을 기다리는 기간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통계화하는 부분이나 가정 양육의 목적을 나타내는 등 보다 가족중심적이며, 목표지향적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2) 아동·청소년 영역

아동·청소년 복지영역 품질진단대상 통계에서 통계작성현황조사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국제기준과 그를 적용하여 조사를 진행한 통계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며, 통계작성과정에서 표준분류를 사용한 통계도 존재하지 않았다. 단지 다른 외국 참고문헌 및 분석, 조사방법에 대해 참고하는 부분은 많을 수 있지만, 그 부분마저도 한국의 아동·청소년에게 적합하도록 설문지의 구성을 수정 혹은 보완하여 만든 통계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여긴다. 많은 통계들은 설문지 구성에 있어서 목적과 역할에 맞는 문항이나 항목을 직접 구성하다 보면 국제기준과는 멀어질 수 있다.

다만 아동·청소년 영역 복지통계 중 유일하게 청소년가치관조사에서 ‘World Values Survey(2009)’ 통계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청소년에게도 질문문항을 유사하게 수정하거나 혹은 그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World Values Survey(2009)’는 World Values Survey - Organization으로 WVS라고 명명되며 세계청소년의 가치, 혹은 한국인의 삶과 가치의 변화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조사에 참여하고 있어, 국가별 청소년의 행복감에 대한 비교가능한 통계자료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World Values Survey(2009)’는 한국이 조사대상 국가로 포함되어 있고 동시에 ‘청소년가치관조사’도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가치관조사’의 통계항목에는 WVS의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삶의 행복감’, ‘인간관계’, ‘결혼관’, ‘사회 및 경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진로희망’, ‘정치에 대한 관심도’, ‘애국심’ 등을 우리나라의 청소년에게 적합하도록 원문을 수정·보완·변화시켜 조사를 실시하였다. 향후 ‘청소년가치관조사’의 결과는 국제비교가능한 통계로서의 장점이 클 것으로 보인다.

(3) 노인·장애인 영역

통계작성현황조사표를 분석한 결과 노인·장애인 복지 영역 진단대상 통계 9종 가운데 국제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국제기준을 참고하여 생산되는 통계는 다음과 같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미국의 Health and Retirement Survey(HRS)과 영국의 English Longitudinal Study of

Aging(ELSA) 등을 사전조사하여 설계하였고, 총3회에 걸쳐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계하였으며, 오류수정사항을 검토한 다음 2006년 제1차 기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일부 조사통계의 경우 통계조사의 설계과정에서 외국통계의 표준분류 사례를 참고하여 반영한 통계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실태조사', '노인실태조사'가 있다. '노인실태조사'의 경우 노인의 영양관리 상태 측정을 위하여 Nutrition Screening Initiative(NSI)가 개발한 'Determine Your Nutritional Health'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였고, 노인의 신체활동량 측정을 위하여 '국제신체활동 설문지(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IPAQ)'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노인에게 적합하도록 조정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의 향후 패널조사 설계를 위하여 미국, 유럽, 일본,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노인관련 패널 통계에 대한 국외선행연구를 검토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정도이다.

한편 '장애인실태조사'는 장애원인의 분류항목에 있어 WHO의 1980년 국제장애분류 ICIDH(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와 2001년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국제질병분류표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10th Version) 등의 진단지침 분류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와 장애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실태조사의 목적에 적합하게 조정하여 장애원인을 선천적 원인, 출생시 원인, 원인불명으로 구분하여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장애원인 분류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실태에 적합하도록 조정하였기 때문에 국제기준과의 비교가능성은 낮은 수준이다.

4. 국제기구 자료제공수준 분석

복지주제분야 품질진단대상 통계 24종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현황조사표를 분석한 결과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통계자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작성현황조사표 'H. 국제기구 요구자료 및 제공현황'에서 가족·복지시설, 아동·청소년, 노인·장애인 영역별 24종 통계가 모두 '해당없음'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복지통계의 보고체계가 생산, 가공, 보고 등을 담당 인력이 각 단계별로 상이한 우리나라의 실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의 경우 OECD에 제출되는 복지통계의 가공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용역으로 이루어진 다음 최종 OECD 제출을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복지통계의 기획, 조사, 결과분석, 공표 등을 수행하는 국내복지통계의 생산담당자들은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가공형식, 가공내용, 국제기준 등에 대한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기 어렵다.

그러나 가족·복지시설 영역 통계의 경우 우리나라는 2008년 9월 현재 OECD의 Family Database의 구축체계를 위해 회원국과 함께 공동으로 노력해 왔으며, 한국의 기재출통계는 69개(총요구통계 110개 중 62.7%에 해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실태조사’를 활용하면 여성고용률 대비 모성고용률,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별 모성 고용률, 16세 이하 자녀 수에 따른 모성고용률,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에 따른 모의 고용률과 출산 휴가율 등은 생산이 가능하며, 기존 ‘보육실태조사’를 보완하면 아동의 방과후보육서비스 이용률과 방과후보육서비스의 핵심특징 등을 생산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영역의 ‘청소년가치관조사’의 경우 ‘World Values Survey(2009)’의 통계자료를 참고하여 한국청소년가치관과의 비교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한·중·일 청소년가치관조사 결과로 비교 분석된 자료가 2008년 발간되기도 했다.

<표 33> 국제기구 자료제공에 활용가능한 통계와 생산가능지표

국제기구 자료제공에 활용가능한 통계	생산 가능 지표
가족실태조사	여성고용률 대비 모성고용률,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별 모성 고용률, 16세 이하 자녀 수에 따른 모성고용률,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에 따른 모의 고용률과 출산 휴가율 등
보육실태조사	아동의 방과후보육서비스 이용률과 방과후보육서비스의 핵심특징들 등

* 출처: 고경환(2009). OECD기준에 따른 한국의 Family Database 구축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비교가 가능한 통계구축 방법은 크게 통계의 생산단계부터 비교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사 설계를 진행하는 방식과 통계의 생산완료 시점 이후 국제비교가 가능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방식은 미국의 Health and Retirement Survey(HRS), 영국의 English Longitudinal Study of

Aging(ELSA), 후자의 방식은 Consortium of Household Panels for European Socio-Economic Research(CHER), Luxembourg Employment Study(LES)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우리나라 복지통계의 국제기구 자료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은 통계생산체계의 문제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생산기획 단계부터 국제비교가능성을 고려하여 설계한 복지통계가 존재하지 않는 점과 통계의 생산완료시점 이후에도 국가간 비교가능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지원되어야 할 인적·물적 자원 등이 부족한 점을 들 수 있다. 통계생산기획 단계부터 국제비교가능성을 고려하여 설계된 복지통계가 부족한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후자의 경우처럼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공통 핵심주제에 대해 국가별 통계생산자들이 함께 논의하여 다시 표준화시키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복지통계의 국제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국가별 복지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지니게 되는 복지통계의 국제비교불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제 4 장 발전방향

제 1 절 진단결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영역별 주제통계 분석결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가승인복지통계 24종의 품질진단을 위해 가족·복지시설, 아동·청소년, 노인·장애인 등 복지영역별로 분석한 결과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등의 수요에 대한 충족성 측면, 유사중복 항목 또는 조정이 필요한 조사항목 분류의 통일성 등에 대한 효율성 측면, 메타정보 또는 조사내용의 편이 제공 등에 대한 이용편의성 측면, 기준, 메타자료 오류 등에 대한 신뢰성 측면을 중심으로 영역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족·복지시설 영역

1) 충족성

여성들의 직업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정책이 국가의 주요정책으로 대두되면서 가족·복지시설영역 복지통계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적 수요가 늘고 있다. 이 영역의 통계가 정책적 수요와 활용의 측면에서 충족성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분석대상통계들은 개별 정책수요 측면, 즉 보육, 가족실태 등의 측면에서는 충족되고 있지만, 가족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가족정책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올슨(1983)의 분류에 따른 가족의 생애주기관점을 살펴보면 일정한 성인기에 접어들어 결혼을 선택한 시점에서 출발하여 자녀출산이전인 부부기, 자녀출산양육기(취학연령전/취학연령후/청소년자녀), 자녀가 성장하여 독립하는 시기인 중년기, 후기부모기, 퇴직이후의 노부모기 등 7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결혼과 첫 자녀의 출산, 육아와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자녀의 결혼, 본인

과 배우자의 퇴직 및 사망 등 생애주기별로 가족은 상이한 요구를 가지게 되며, 가족통계 역시 이러한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분류될 필요가 있다.

현재 가족형성 및 자녀출산양육기와 관련하여 미·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통계가 집계되고 있고, 취학연령 전 자녀출산양육기에 해당되는 조사는 '영아·모성사망조사', '보육실태조사', '보육시설 및 이용자 통계'가 있다. 취학연령 후 자녀양육기에 해당되는 조사는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요보호아동현황보고', '아동발달분야사회복지서비스수요조사' 등이 있다. 중년기가족 전반을 볼 수 있는 조사로는 가족의 형태별분포(여성가구주가구비율, 한부모가구비율 등)를 볼 수 있는 '인구주택총조사보고', 국민이 하루 24시간 중 가족과 함께 하는데 소요한 시간량과 관련한 '생활시간조사', 가족관계와 돌봄노동을 볼 수 있는 '가족실태조사', 여성의 일자리 변화를 볼 수 있는 '여성가족패널조사' 등이 있다. 노년기와 관련하여서는 '노인실태조사', '노인학대현황', '노인복지사업현황보고', '경로연금수급자현황', '노인일자리및노후생활현황', '노인복지시설현황', '독거노인실태조사' 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족생활주기를 반영한 통계들로 분류하여 가족복지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생산되고 있는 가족관련통계들은 변화하는 가족형태나 가족이 처한 다양한 위험들, 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체계 등에 대한 통계들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황들이 정확히 파악되고 정책적인 함의가 제공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의 생애주기별 복지통계의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신규통계를 분류할 필요가 있다. 또, 현재 제공되고 있는 가족관련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욕구를 평가하는 통계들도 생산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족·복지시설영역 복지통계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주기를 가지고 공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가족실태조사의 경우 작성주기가 5년이어서 변화하는 가족의 모습을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어 작성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통계자료가 효과적으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사주기에 맞춰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예산배분에 대한 정책적 통제와 조절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복지시설영역 분석대상통계 3종 역시 가족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면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한 정보

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요보호 아동들이 어떻게 해서 시설을 퇴소하게 되는 지, 퇴소후에는 누가 보호를 제공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있지 않다. 또한, 복지시설영역 복지통계가 과거에는 부모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집계되었다면, 최근 연고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설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사회변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고자와 관련된 통계항목이 필요하다.

다섯째, 활용성의 측면에서 보면, 가족과 시설통계수요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통계생산과정에 반영하는 체계의 부재와 누가 구체적으로 분석대상 통계들의 활용자인지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생산된 통계의 정책적 수요충족은 물론 적극적 활용이 중요함에도 이러한 문제점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가족패널조사’와 같이 학계나 현장에서 통계자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적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술대회를 유도해 통계자료의 활용성을 높이는 것도 충족성을 달성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2) 효율성

효율성의 측면에서 가족·복지시설 영역 통계의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가족실태조사’와 ‘여성가족패널조사’의 경우처럼 독립된 통계로서 별도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효율적인 통계 생산을 고려해야 하기 위해 가족통계종합정보 및 메타정보 DB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비슷한 항목으로 조사하는 경우 항목조정을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둘째, 통계의 생산기획 단계부터 국제비교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족·복지시설영역 통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통계작성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생산완료시점 이후에도 국제비교가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지원되어야 할 인적·물적 자원 등이 부족한 점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복지통계의 공표시기가 정책계획수립기간이후에 이루어져 효율적인 통계기반 정책수립을 저해한다. 통계기반 정책수립에 기여하기 위해 정책계획수립기간 이전에 복지통계가 공표되도록 공표일을 조정하고, 복지통계의 예정공표일을

상시적으로 안내한다. 조사주기가 5년 단위인 ‘가족실태조사’의 경우 조사결과의 공표시기와 가족정책의 기본계획수립시기가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최근 공표된 ‘가족실태조사’결과가 정책의 기본계획수립에 반영되기 어렵다. 따라서 ‘가족실태조사’가 가족정책 기본계획수립에서 시의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가족실태조사’의 공표일이 기본계획수립기간 이전에 공표되어야 한다.

3) 이용편의성

첫째, 대부분의 통계들은 원자료의 이용이 어려워 이용의 편의성이 저해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족실태조사’의 경우 보고서로만 공표되고 있을 뿐 원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통계이용자에게 다양한 형식을 지원하는 원자료 제공이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통계작성자와 이용자간의 소통이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제공되는 원자료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이나 정부부처의 통계포털이 아니라 통계생산을 담당하는 관련 연구기관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별도로 이용자 등록과정을 거쳐야 하는 ‘여성가족패널조사’의 경우 이러한 자료의 접근방법에 대한 안내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상세히 제시되지 않고 있어 통계이용자의 편의성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패널조사의 원자료를 모두 통합하여 제공하거나 또는 미국의 ‘MapStats link’ 사례에서처럼 공표되는 패널데이터를 단일한 사이트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통계의 제목이 이용자에게 친근하게 인지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예로,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현황’은 ‘가정위탁’, ‘국내입양’, ‘소년소녀가정현황’이라는 용어가 하나로 합쳐져 있어 통계명칭이 길어 이용자가 친근하게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이러한 통계들은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요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한 통계들이므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이들 통계 자료를 공표할 때 ‘요보호아동통계’의 틀안에서 제공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4) 신뢰성

첫째, 패널이나 실태조사의 조사용역기관이 조사주기별로 변동되는 경우가 많아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및공공기관의가족친화지수측정’의 경우 2008년에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조사를 실시했으나, 2009년에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으로 바뀌었고, 2010년에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다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경우 조사 업체마다 통계의 설문내용, 샘플 수 등에서 변동을 초래하여 조사결과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가족실태조사’의 경우 3,000명에서 2,500명으로 표본크기가 달라지고, 조사 설계가 일관되지 않아 수집자료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저해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 일관된 조사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패널이나 실태조사에 있어 설문항목의 변동으로 시계열적 자료를 분석하기 어려워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다. ‘여성가족패널조사’의 경우 2010년 6월 재혼의향에 대한 질문이 삭제되거나, 개인특성/건강/여가, 노후생활과 관련된 조사항목 등이 삭제되었다. ‘가족실태조사’ 역시 2010년 7월 형제서열, 거주형태, 생활만족도, 건강가정지원센터욕구 관련, 가족갈등과 관련된 조사항목이 삭제되었다. 따라서 항목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의 General Social Survey처럼 설문기본 항목을 유지하되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부가하여 조사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설문항목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해야 한다.

셋째, ‘기업및공공기관의가족친화지수측정’은 가족친화지수를 고용자의 입장에서만 조사하였을 뿐 노동자가 느끼는 지수는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가족친화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어 실제 가족친화지수를 체감하는 노동자의 시각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가족친화지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각적 측면에서의 통계를 보여주어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넷째, 복지시설영역 보고통계의 경우 변경된 용어가 일관성있게 사용되지 못해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현황’의 경우, ‘소년소녀가정현황2008’ 발표에 있어서는 ‘영구입대’ 항목을 ‘정부지원주택’으로 변

경해 사용하였으나, 2009년 10월 발간된 '2009 보건복지통계연보'에서는 '영구입대' 항목으로 과거의 용어가 다시 사용되었다. 따라서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보다 실제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계 공표당시 정확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기타

복지시설영역의 경우 국제적으로 보호아동에 대한 시설통계의 생산보다는 전체아동복지를 고려하여 통계를 생산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이에 맞춰 통계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의 아동복지국에서 가정위탁된 아동들이 입양을 기다리는 기간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통계를 생산하는 부분이나 가정 양육의 목적을 나타내는 등 그 체계가 보다 가족중심적이며, 목표지향적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2) 아동·청소년 영역

1) 충족성

첫째, 아동·청소년의 생애주기에 따른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복지서비스통계가 적절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의 제공현황, 이용현황, 요구현황 등 사회복지서비스 통계를 생산하여, 아동·청소년 복지 서비스이용자의 욕구충족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조사통계의 경우 통계작성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는 조사항목, 조사내용, 설문지 개발 등의 과정에서 통계의 수요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학계 또는 현장의 의견수렴없이 주로 민간조사용역기관에 의존적으로 통계가 작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아동·청소년영역 복지통계의 정책·연구 자료로의 활용을 저해시키고, 조사내용의 중복, 시계열적 분석의 어려움, 통계자료의 정체성 확립미흡 등의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전

문가 및 통계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의견수렴결과를 조사항목, 조사내용, 설문지 개발 등 통계생산단계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아동·청소년영역의 복지통계는 아동·청소년상담, 보호현황, 학대현황, 인권실태, 유해환경보호 등 관련 아동·청소년 복지정책과 사업의 근거자료로 이용되기 위해 작성되고 있다. 아동·청소년 정책 및 사업의 기초자료로 이용되기 위한 통계가 생산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동·청소년 정책 및 사업의 효과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통계는 생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생산이 필요하다.

2) 효율성

첫째, 아동·청소년영역 복지통계의 경우 조사 내에서의 중복성을 자주 찾아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청소년가치관조사', '아동종합실태조사(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는 '청소년의 행복감, 유해환경 및 매체 접촉도와 이용률, 청소년의 건강에 대한 생각, 성과 관련된 항목' 등이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존재한다. 또한 조사 항목에 있어서 광범위한 범위와 많은 문항에 대해 조사를 하는데, 이는 조사결과의 신뢰성 혹은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각 통계마다 많은 메타정보와 변수를 가질수록 다양한 비교·분석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긍정적인 점이 있지만, 각 통계에서 동일 항목에 대하여 상이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통계자료의 활용에 있어 이용자 측면에서 신뢰를 가지지 못할 수 있으며, 활용 과정에서의 상이한 결과로 인한 정보 활용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에 통계작성의 기획단계에 있어서부터 외부 전문가 자문의견의 수렴, 그리고 사전 유사통계·유사내용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이룬 후 필요한 항목 우선순위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조사의 목적이나 의도, 대상과 한계점에 대한 내용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를 명확히 문서화한 보고서가 이용자에게 알려졌을 때 이해 및 활용도의 측면이 향상될 것이며, 이런 체계가 개별통계, 그리고 전체 분야통계에 있어서 예산 낭비 방지, 통계품질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아동·청소년 관련 보고통계 중 상당수는 정보의 유용성과 국제비교가능

성에 대하여 검토가 부족한 통계지표들을 구성하고 있는 통계자료가 많다는 것이다. '청소년가치관조사'가 World Value Survey에서 조사하는 항목을 분석 및 비교와 더불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조사 내용과 목적, 항목을 이루기 위해 사전 분석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외 통계의 경우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것보다 개별적·기계적인 통계 생산에 중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통계의 목적과 의도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한편, 그에 부합하는 통계지표의 개발 또는 통·폐합, 국제비교가 가능한 지표개발 등을 통해 다른 통계와 차별화된 아동·청소년 통계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고품질의 통계생산이 요구된다.

3) 이용편의성

첫째, 통계이용자에게 원자료의 제공이 부족하다. 특히 아동·청소년영역 복지 통계는 가족·복지시설영역이나 노인·장애인영역에 비해 제공되는 원자료가 극히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원자료의 경우 가족·복지시설 영역은 5종, 노인·장애인 영역은 6종이나, 아동·청소년영역 복지 통계에서 제공하는 원자료는 부재하다. 따라서 통계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아동·청소년영역 복지통계의 원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통계자료의 2차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공되는 자료의 형식을 다양화한다.

둘째, 통계이용자의 자료 접근이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공표일이 사전에 공표되지 않거나, 공표일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며, 통계자료를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가 상세히 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청소년상담지원현황'의 경우 결과보고서를 발간물 형태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이용자의 접근에 제약이 따른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메타정보에서 통계이용 방법, 통계간행물이용방법, 제공위치, 공표예정일 등을 상세하게 안내해야 한다. 또한 통계작성기관의 인터넷사이트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상호 연결하여, 공표되는 통계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통계용어·통계항목에 대한 정의설명이 부족하여 이용자의 통계이용을 어렵게 한다. 이로 인해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통계공표시 자료의 용어 및 항목을 설명하는 이용자 안내서와 코드북

을 통계이용자에게 제공하여 이용편의성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4) 신뢰성

첫째, 아동·청소년 영역 복지통계의 조사 대상이 일관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학생과 비학생으로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사의 편의성을 위해 대상학생 및 학교, 반, 학생을 자녀로 둔 가구를 중심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학생, 비학생의 포함여부에 따라 조사 결과에서 상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신뢰성 저하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아동과 청소년 조사대상으로 학생뿐만 아니라 비학생을 일관적으로 포함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복지통계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이에 통계작성 기획단계에서부터 아동·청소년 조사대상을 학생과 비학생으로 구분하지 않도록 조사대상을 설정해야 한다.

둘째, '청소년가치관조사'의 경우 한·중·일 비교연구에 있어 동일한 설문문항으로 구성된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3개국의 문화적 차이가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가치관조사의 조사항목이 World Value Survey Research에서 사용된 조사 내용이나 항목을 분석하여 작성되었을지라도 다른 국가와의 비교에 따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사항인지에 대해 정확한 설명이 제시되어야 개별 통계의 신뢰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아동·청소년 복지통계의 경우 조사영역이나 조사항목의 의미를 검증하는 실증연구가 부족하다. 조사영역 및 항목에 대한 이론적 의미에 대한 사전검토 작업이 필요하다. 조사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항목이나 내용의 국제 기준자료를 사전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개별 조사항목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토하는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3) 노인·장애인 영역

1) 충족성

첫째 노인·장애인영역 복지통계의 경우 노인·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구성, 산출 및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통계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수요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책입안자의 복지통계의 개선이나 개발요구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신규 통계생산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둘째, 노인·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정보에 대한 통계 항목이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노인 복지서비스의 경우 그나마 ‘노인복지사업현황보고’에서 ‘시설수’, ‘시설별 입소자수’, ‘시설별 이용자수’, ‘시설별 종사자수’ 등을 집계하고 있고, ‘노인실태조사’에서는 노인복지서비스의 ‘인지율’, ‘이용경험율’, ‘향후 이용희망율’ 정도를 조사하고 있을 뿐, 두 통계이외에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노인 복지서비스의 총유형에 대한 통계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서비스의 경우에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은 ‘장애등록이후 혜택 정도’, ‘장애인 복지사업 인지여부’, ‘장애인복지사업 이용경험’,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의 인지율, 이용경험율, 이용경험자 만족도, 이용희망율’, ‘사회나 국가로부터 받고 싶은 사회복지서비스 종류’ 등을 조사하고 있지만, 현재 장애인 서비스의 총유형에 대한 통계는 부재하다. 따라서 노인·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 관련 정책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서비스 총유형에 대한 통계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영역 복지통계들은 생애주기적 관점의 복지정책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장애인의 생애주기는 영유아기 장애인, 아동·청소년기 장애인, 중장년기 장애인, 노년기 장애인 등이 있다. 이러한 생애주기별로 장애인의 욕구에 따라 영유아기 장애인의 보육지원, 아동·청소년기 장애인의 교육지원, 중년기 장애인의 경제사회활동, 노년기 장애인의 노후보장·부양·사회참여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수립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통계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복지통계가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을 입안하는데 충분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도록 통계를 생산해야 한다.

2) 효율성

첫째, 보고통계는 보고대상자만 계속해서 조사되기 때문에 보고대상자이외의 잠재 수요자 또는 잠재 대상자는 집계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보고

통계는 객관적 현상을 보고집계하기 때문에 질적 변수를 조사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보고통계의 단점을 조사통계에서 보완할 수 있는 상호연계된 효율적인 생산체계가 필요하다. 장애인 영역 복지통계의 경우 ‘등록장애인현황’, ‘장애수당수급자현황’,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 등 4종의 보고 또는 조사대상이 모두 등록장애인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장애유형에 해당되지 않은 미등록장애인은 조사통계에서 조사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통계작성 기획단계부터 보고통계와 조사통계의 단점을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둘째, 통계생산 기획단계부터 효율적으로 국제비교가능성을 고려한 복지통계가 부족하다. 노인·장애인 영역 복지통계의 경우 가족·복지시설 영역이나 아동·청소년 영역에 비해 기획단계부터 국제비교가능성을 고려한 통계가 일부 존재한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국제비교가능성을 고려하여 설계된 조사통계이고, ‘장애인실태조사’나 ‘노인실태조사’처럼 통계조사의 설계과정에서 외국통계의 표준분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실태에 적합하도록 조정한 통계이다. 구체적으로 ‘노인실태조사’의 경우 노인의 영양관리 상태 측정을 위하여 Nutrition Screening Initiative(NSI)가 개발한 ‘Determine Your Nutritional Health’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였고, 노인의 신체활동량 측정을 위하여 국제신체활동 설문지(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IPAQ)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노인에게 적합하도록 조정하였다. 한편 ‘장애인실태조사’는 장애원인의 분류항목에 있어 WHO의 1980년 국제장애분류 ICIDH(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와 2001년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의 장애원인 분류를 참고하여 다시 우리나라의 실태에 적합하도록 조정하였다.

향후 국제비교가능한 복지통계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통계생산 기획단계에서부터 국제 통계를 검토하여 통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계의 공표 시에는 원자료와 함께 통계생산을 위해 이용된 조사항목 및 조사도구의 해외 출처, 비슷한 항목이 사용된 관련 해외 연구 등에 관한 정보들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3) 이용편의성

첫째, 간행물명이 통계명과 서로 일치되지 않거나 공표될 때마다 간행물명이 매번 변경되는 경우 통계이용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사업현황보고’의 경우 간행물명(‘노인복지시설현황’)과 통계명(‘노인복지사업현황보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노인학대현황’의 경우에는 공표될 때마다 간행물명(‘2005 전국노인학대현황보고서’, ‘2006 전국노인학대상담사업현황보고서’, ‘2007 전국노인학대상담사업현황보고서’, ‘2008 노인학대현황보고서’)이 매번 변경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통계이용자의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통계명과 간행물명을 일치시켜야 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메타정보에서 과거 간행물명과 통계의 연혁이 제공되어야 한다. 간행물에 있어서도 이용안내를 통해 과거 통계연혁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되는 원자료의 경우 연도가 표시되지 않거나 일부만 표시되어 있어 통계이용자의 편의성이 낮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사업현황보고’,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보고’, ‘등록장애인현황’, ‘장애수당수급자현황’ 등 5종 통계의 원자료가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되고 있는데, ‘등록장애인현황’과 ‘장애수당수급자현황’의 경우 원자료의 연도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며,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와 노인복지사업현황보고의 경우 원자료의 연도가 일부만 제공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제공되는 원자료의 연도를 통계마다 모두 표시하여 통계이용자의 이용편의성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4) 신뢰성

첫째, 메타정보의 오류로 인한 신뢰성 저하를 초래한 통계를 살펴보면,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의 경우 2008년 12월 16일 처음 국가통계로 승인된 조사통계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메타정보에서 조사주기와 공표주기가 모두 1년으로 공표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현재 2008년 ‘장애인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보고서’(실제조사기간 2008년 12월 2일~2008년 12월 20일)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서 공표되어 있고, 2007년 ‘장애인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보고서’(실제조사기간 2007년 12월 3일~12월 22일)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

oi.go.kr)에서 제공되고 있으나, 2010년 현재 2008년 12월 이후의 간행물이 조사주기에 따라 공표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의 공표주기가 메타정보와 일치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통계공표예정일을 사전에 메타정보에서 상시 안내하여 통계 이용자의 신뢰성향상에 기여한다.

둘째,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대상의 변경으로 인해 통계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이 낮아지게 되었다. 조사대상이 2008년부터 등록장애인만으로 변경되면서 2000년, 2005년,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의 시계열 비교가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원자료 DB에서도 연도별로 구분되어 장애인실태조사가 제공되고 있으나, 이러한 조사대상의 변경내용이 통계이용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원자료와 함께 조사기간별 조사대상의 변경내용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메타자료에서 제공하여 통계이용자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

5) 기타

'노인실태조사'의 경우 1994년 처음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횡단조사로 생산된 이래 노인복지분야에서 유일하게 전국 노인의 전반적인 생활실태 파악에 높은 기여를 해 온 통계이다. 2008년부터는 통계설계가 변경되어 횡단조사에서 패널조사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노인복지분야에서는 이미 고령화연구패널조사,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등 여러 개의 패널조사가 존재하고 있다.

유기적인 통계생산을 설계하여 종단연구와 횡단연구를 모두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효율적인 통계생산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횡단조사로서 그동안 높은 기여를 해 온 노인실태조사를 종단조사로 전환하기 보다는 기존의 횡단조사로서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만약 2008년 이후 조사부터 패널조사 설계를 지향하고자 한다면, 조사주기마다 조사용역기관을 일관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패널조사의 특성상 동일 조사대상자의 표본이탈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패널조사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패널마모 대처, 패널응답률 유지관리, 조사용역업체 관리체계마련 등 중장기 계획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표 34> 복지영역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구분	영역	문제점	개선방안
총 족 성	가족 복지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가족정책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함. [사례] 복지시설영역 분석대상통계 4종의 경우 가족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면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요보호 아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적절한 통계공표주기 미흡 [사례] '가족실태조사'의 조사주기 5년으로 인해 변화하는 가족실태를 가족정책에 시의적절하게 반영하기 어려움 가족과 시설통계수요자의 요구를 모니터링, 통계생산과정에 반영하는 체계의 부재와 분석대상 통계들의 이용자에게 대한 정확한 파악 미비 가족복지 서비스 제공과 이용에 대한 통계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정책 입안에 필요한 가족통계 및 요보호 아동의 시설보호관련 통계 제공 조사주기의 조정필요 및 예산배분 조절고려 학술대회 개최 가족복지서비스 통계생산
	아동 청소 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청소년생애주기에 따른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통계부재 정책적 측면에서의 수요성 조사 미흡 통계작성기획, 설계과정에서의 이용자 전문가의견 수렴 과정 없이 주로 용역기관의 조사기획에 의존 아동청소년 정책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청소년복지서비스 통계생산 전문가 및 이용자의 정기적인 의견 반영 시스템 마련 정책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생산
	노인 장애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총유형에 대한 통계부재로 복지서비스 이용자 또는 실무자의 요구충족 부족 [사례] '노인실태조사'의 경우 노인복지서비스의 인지율, 이용경험율, 향후이용희망을 등, '장애인실태조사'의 경우 장애인복지사업 인지여부, 장애인복지사업 이용경험 등 정도 생애주기적 관점의 장애인영역 복지통계 미생산 [사례] 영유아기 장애인, 아동청소년기 장애인, 중장년기 장애인, 노년기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욕구에 근거한 통계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총유형 통계항목 생산 생애주기별 장애인 복지통계 생산. 예를 들어, 영유아기 장애인의 보육, 아동청소년기 장애인의 교육, 중장년기 장애인의 경제활동, 노년기 장애인의 노후보장 등
효 율 성	가족 복지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항목이 일부 중복되어 있어 효율성 저해 [사례] '가족실태조사'와 '여성가족패널조사' 통계의 생산기획 단계부터 국제비교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해 비효율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통계종합정보 및 메타정보 DB 구축,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의 항목조정 논의의 구조 고려 기획단계부터 국제비교가능 DB 구축지원
	아동 청소 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내용, 조사항목에서의 중복성 존재 [사례]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청소년유해환경정착종합실태조사', '청소년가치관조사', '아동종합실태조사(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청소년의 행복감, 유해환경 및 유해매체 접촉도와 이용률, 청소년의 건강에 대한 생각, 성과 관련된 항목' 중복성 존재 국제비교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통계지표 구성 [사례] 일부 '청소년가치관조사'의 경우, 사전기획단계에서 World Value Survey의 조사항목을 비교분석하는 정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청소년 통계 목적과 의도의 명확한 제시에 따른 조사내용 및 항목 구성 국제비교가능 통계지표개발 및 메타정보 사전조사체계마련
	노인 장애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고통계와 조사통계의 보완설계 부족 [사례] '등록장애인현황', '장애수당수급자현황',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 4종의 보고 또는 조사대상이 모두 등록장애인이기 때문에, 보고대상자이외의 잠재 대상자 예측의 한계가 존재함 통계의 생산기획 단계부터 국제비교가능성을 고려한 노인·장애인 복지 통계 부족 [사례] '노인실태조사', '장애인실태조사'의 경우 외국 통계의 표준 분류 사례를 참고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실태에 적합하도록 재조정하였기 때문에 국제비교가능성은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작성 기획단계부터 보고통계와 조사통계간 단점을 상호보완하는 설계 필요 통계작성 기획단계부터 국제비교가능설계 필요
이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자료의 이용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자료의 제공 확대

용 편 의 성	복지 지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례] '가족실태조사', '기업및공공기관의가족친화지수측정' ◦통계작성자와 이용자간의 소통 제한 [사례] '여성가족패널조사' ◦통계명이 이용자에게 친근하게 인지되지 못하고 있음 [사례]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통계작성기관과 통계이용자간 단일의 사소통 경로 마련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요보호 아동통계의 형태로 공표하는 방법 고려
	아 동 청 소 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자료의 접근이 제한적임 [사례] '청소년상담지원현황'의 경우 보고서를 발간물 형태로 미제공 ◦메타정보 및 원자료 제공 편의 미흡 [사례] 국가통계포털에서 원자료를 제공하는 아동청소년 복지통계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간물 형태의 다양화 및 공표일시에 맞춘 발간 필요 ◦각 통계기관에서의 원자료, 메타정보 등 다양한 자료제공필요
	노 인 장 애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행물명과 통계명의 불일치 [사례] 통계명 '노인복지사업현황보고'와 간행물명 '노인복지시설현황' 불일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원자료 연도가 표시되지 않음 [사례] '노인복지사업현황보고',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보고', '등록장애인현황', '장애수당수급자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행물명과 통계명 일치 및 메타정보에서 과거 간행물명 제공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원자료의 연도정보 제공
신 뢰 성	가 족 복 지 지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용역기관의 조사주기별 변동이 발생하여 조사결과에 대한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시계열 조사결과 분석에 대한 신뢰성 저해 [사례] '기업및공공기관의가족친화지수측정', '가족실태조사' ◦패널이나 실태조사의 경우 설문항목의 변동으로 인해 시계열 분석의 한계 발생 [사례] '여성가족패널조사', '가족실태조사' ◦'기업및공공기관의가족친화지수측정'의 경우 고용자의 입장에서 조사하여 피고용자 입장의 조사 부족 [사례] '기업및공공기관의가족친화지수측정' ◦변경된 용어가 일관성있게 사용되지 못함 [사례]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뢰성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조사통계의 품질유지 및 향상에 기여 ◦미국 General Social Survey 방식처럼 설문항목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해야 함 ◦고용자와 피고용자 양측 입장의 통계조사 실시 ◦통계 공표이전에 변경용어에 대한 사전점검 실시
	아 동 청 소 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대상에 있어서 연령이나 학생·비학생 구분 설정 이유·의도 및 목적에 대한 상세 설명 미비 [사례] '아동발달사회복지서비스수요조사'의 경우 중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는 교육통계정보센터 학교DB 자료를 이용하여 학교학생 대상 실시,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는 일반청소년의 중고생 대상 조사실시, '청소년가치관조사'는 청소년 연령(만9~24세)에 따른 조사 실시 ◦조사영역, 조사항목들의 의미를 뒷받침할 이론적, 실증적연구 부족 ◦국제비교가능한 통계자료의 선별 작업 미흡 [사례] '청소년가치관조사'의 경우 World Value Survey의 조사항목을 분석하여 설문도구를 개발하는데 참고하고 있으나, 문화적·사회적·경제적 등 환경의 차이를 얼마나 축소시킨 조사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생성 가능성이 있음. 또한 개별통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국제비교가 확실히 가능한 자료인지에 대한 연구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대상의 연령이나 학생·비학생 구분 설정에 대한 상세 설명 추가 필요 ◦조사항목, 영역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실증적 연구에 대한 사전 분석 작업 필요 ◦국제비교가능 통계자료의 우선 선별 필요
	노 인 장 애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메타정보의 오류 [사례] 조사주기 1년인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의 경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2008년 간행물 공표이후 2009년부터 통계 미공표 ◦조사대상 변경으로 시계열 비교가능성 저하 [사례] 2008년부터 '장애인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이 '등록장애인'만으로 변경되었으나, 메타정보에서 조사대상 변경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패널마모 발생 [사례]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경우 노인의 사망으로 인한 패널마모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공표예정일을 통계청 메타정보에서 상시안내 ◦조사연도별 조사대상의 변경내용을 메타정보에서 상시안내 ◦패널마모 보완예산 필요

2. 복지통계 운영체계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복지통계는 통계작성기관이 개별적으로 복지통계를 분산하여 생산하고 있는 분산형 통계생산체계이다. 이에 따라 복지통계의 운영체계가 분류체계, 생산체계, 관리체계 측면에서 분산적인 형태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외국에서는 통계행정의 효율화 측면에서 분산형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집중형 통계제도적 성격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흐름이다(이재형, 2007). 영국의 통계작성체계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영국은 분산화된 통계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7년 통계 및 공표 서비스법(Statistics and Registration Service Act)을 제정하고 UK Statistics Authority 조직을 신설하였다. 이는 비용절감 아울러 국가통계의 일관성·정합성·통합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복지통계 운영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분류체계·생산체계·관리체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복지통계 분류체계

1) 가족 복지시설 영역

가족·복지시설영역 복지통계의 경우, 정책전문가들에게는 가족·복지시설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연구자들에게는 현실을 진단하고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 중요한 의미를 가짐에도 현재는 각 부처 및 기관별로 산재된 가족·복지시설영역 복지통계 조사내용이 중복되거나 통계수요자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생산, 분류되고 있기도 하다.

가. 가족생애주기를 고려한 통계분류 필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가족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통계분류체계가 마련되어야 가족정책에 밑그림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행 가족과 관련된 통계분류체계는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가족의 생애주기도 전혀 고려되

고 있지 않아 어느 단계에서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는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고,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지에 대해 전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복지통계중 가족영역과 관련된 통계분류체계는 가족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분류체계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생애주기를 고려한 분류체계의 예를 들면 첫째, 가족형성 및 자녀출산양육기 통계로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둘째, 취학연령 전 자녀출산양육기 통계로 '영아·모성사망조사', '보육실태조사', '보육시설 및 이용자 통계', 셋째, 취학연령 후 자녀양육기 통계로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요보호아동현황보고', '아동발달분야사회복지서비스수요조사', 넷째, 중년기가족 통계로 '인구주택총조사보고', '생활시간조사',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패널조사', 다섯째, 노년가족 통계로 '노인실태조사', '노인학대현황', '노인복지사업현황보고', '경로연금수급자현황', '노인일자리및노후생활현황', '노인복지시설현황', '독거노인실태조사' 등이 될 수 있다.

나. 가족의 보호없이 국가의 보호를 받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통계분류필요

가족영역 통계가 일반적인 가족의 생애주기를 반영한다면, 복지시설영역 통계는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국가가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분류체계가 필요하다. 선진국에서는 요보호 아동에 대한 시설중심의 보호에서 위탁가정 중심의 보호로 초점이 옮겨지면서 통계 역시 전체아동복지를 고려하여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영역 3종 통계를 요보호 아동통계로 분류할 것인지, 아동복지의 정책적 맥락에서 분류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아동복지국에서 가정위탁된 아동들이 입양을 기다리는 기간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통계화하는 부분이나 가정 양육의 목적을 나타내는 등 그 체계가 보다 가족중심적이며, 목표지향적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통계분류필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과 시설의 모습을 분류할 분류체계가 마련되

어야 한다. 예를 들면, 현재 우리나라가 국제결혼의 증가와 해외 노동자들의 증가 등으로 다인종사회로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가족 및 복지시설 통계에 있어 인종과 관련된 다양한 통계자료를 제공하여 국가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현재 분산되어 있는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과 같은 다양한 가족유형을 반영할 통계분류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라. 가족복지 서비스 관련 통계 생산

현행 가족복지 통계는 주로 실태를 보여주는 단계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가족문제와 관련된 가족의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와 이용, 만족도, 앞으로의 필요성 등을 보여줄 수 있는 통계생산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가족정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아동·청소년 영역

가. 대상에 따른 복지통계분류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통합하여 총괄하던 아동과 청소년의 업무 중에서 청소년업무만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개별 통계와 전반적 아동·청소년영역 복지통계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기존의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연령(18세 미만)과 ‘청소년기본법’상의 청소년연령(9~24세),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연령(만19세 미만)이 일부 중복된 상태에서의 정책 추진으로 인해 통계상 연령과 학생과 비학생 구분에서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구분의 혼란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각 개별통계에서도 생애주기로 인한 연령대의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아동관련 통계인지 청소년관련 통계인지에 대한 정확한 분류가 이용자 입장에서나 통계작성기관측에서나 구분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각 부처의 특성에 따라 복지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많이 다루는 것에 비하여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복지와 관련하여 다루어야 할 조사 내용과 항목인지에 대한 내용적 분류에 있어 기준점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분류체계에서 연령대와 각 부처의 특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느 정도 구분가능 한 통계명의 정확한 제시와 목적과 의도를 뚜렷

하게 제시함으로써 통계를 분리시켜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다루는 아동과 관련된 통계로 보고통계가 많은 관점에서 '학대아동보호현황' 과 같이 아동이라는 대상의 통계명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만큼, 청소년관련 통계에서도 통계명을 뚜렷하게 제시하여 통계자체의 분류에서 각 부처의 성격에 알맞은 통계의 분류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 부처의 특성에 따른 통계의 생산은 통계생산체계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아동과 청소년의 통계를 통계청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합의하여 분류해야 할 것이다.

나. 아동·청소년영역 복지통계의 명확한 목적과 의도 제시 필요

아동·청소년영역 복지통계의 목적과 의도를 명확히 제시하여 다른 영역 통계와 차별화된 정체성 확보가 시급히 요구된다. 아동·청소년영역 복지통계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중복된 통계생산 문제 개선을 위한 타 기관 통계의 모니터링이 우선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통계생산 목적이 불투명하며 관련기관에서 조사된 데이터를 나열하는 방식의 통계체계로 이루어져 다른 영역의 통계에 비해 전문성과 차별성이 부족하다. 주로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와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의 실태조사 내용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주로 '건강과 관련한 생각, 건강 중요도, 유해매체 접촉 시기와 이용 빈도, 흡연과 음주의 이용도, 유해매체 및 업소 이용'과 관련한 중복 항목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관련하여 각 통계에 맞는 의도나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의견과 개별 통계의 특성을 살리는데 저해되는 요인도 되는 문제점이 있다.

다. 아동·청소년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통계 필요

현행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통계는 주로 수요를 조사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만족도, 필요성 등을 보여줄 수 있는 통계생산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아동·청소년 사회복지정책의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3) 노인·장애인 영역

가.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통계분류 필요

현재 노인복지서비스 또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유형에 대한 정보를 통일된 형식으로 보고집계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 복지서비스의 경우 ‘노인복지사업현황보고’에서 ‘시설수’, ‘시설별 입소자수’, ‘시설별 이용자수’, ‘시설별 종사자수’ 등을 집계하고 있고, ‘노인실태조사’에서는 노인복지서비스의 ‘인지율’, ‘이용경험율’, ‘향후이용희망율’ 정도를 조사하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서비스의 경우에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 통계내용은 ‘장애등록이후 혜택 정도’, ‘장애인복지사업 인지여부’, 장애인복지사업 이용경험’,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의 인지율, 이용경험율, 이용경험자 만족도, 이용희망율’, ‘사회나 국가로부터 받고 싶은 사회복지서비스 종류’ 등을 조사하고 있지만, 현재 장애인 서비스의 총유형에 대한 통계는 부재하다. 이에 노인복지서비스,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통계 분류가 필요하다.

나. 장애인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통계분류 필요

장애인의 생애주기는 영유아기 장애인, 아동·청소년기 장애인, 중장년기 장애인, 노년기 장애인 등이 있다. 이러한 생애주기별로 장애인의 욕구에 따라 영유아기 장애인의 보육지원, 아동·청소년기 장애인의 교육지원, 중년기 장애인의 경제사회활동, 노년기 장애인의 노후보장·부양·사회참여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영역 복지통계도 이러한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통계체계를 분류해야 한다.

다. 노인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통계분류 필요

최근 우리나라 사회의 65세이상 노인인구는 2000년 3,355,614명에서 2009년 현재 5,267,708명으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10).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2010년 현재 10.58%로 이미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하였고 2019년에는 14.4%로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될 전망이다. 노인의 평균기대수명은 2010년 현재 79.6세이나(통계청, 2006), 의료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평균기대수명도 앞으로 100세이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훨씬 길어진 노년기의 실태파악을 위해서는 노인연령을 보다 세분화한 통계생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인집단을 연령에 따라 65세부터 74세까지 '전기노인(the young old)', 75세부터 84세까지 '중기노인(the old old)', 85세이상 '후기노인(the oldest old)'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2) 복지통계 생산체계

1) 가족·복지시설 영역

가. 보고통계와 조사통계 간 생산체계의 보완 필요

보고통계와 조사통계는 생산단계에서부터 서로 보완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보육이 어떻게 갈 것인지를 보여주고 중장기 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인 ‘보육실태조사’가 있어야 하고, 보육과 관련된 정책이 수행된 결과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즉시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현황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고통계인 ‘보육시설및이용자통계’가 있어야 한다. ‘보육실태조사’의 경우 현재 5년주기의 조사기간이 정책적 활용에 있어 시의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1년마다 조사되고 있는 보고통계인 ‘보육시설및이용자통계’로는 자료활용에 있어 제한이 있다. 따라서 ‘보육실태조사’의 조사기간을 단축시켜 보고통계와 조사통계가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생산기획단계부터 국제비교가능한 통계 데이터 생산 고려

생산기획 단계부터 국제비교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족·복지시설영역 통계 데이터를 생산해야 한다. 특히 OECD는 회원국들의 일·가정 양립의 정책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동·가족·아동분야에 비교가능한 국제지표를 제공할 수 있는 Family Database를 구축중에 있다. 따라서 OECD에서 다루고 있는 가족관련 항목들과 비교가능한 항목들을 뽑아 생산하도록 생산단계부터 기획해야 한다. 기존의 조사를 활용할 수 있는 예로, ‘가족실태조사’는 여성고용률 대비 모성고용률,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별 모성고용률, 16세 이하 자녀 수에 따른 모성고용률,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에 따른 모의 고용률과 출산휴가율 등의 국제비교자료의 생산이 가능하다. 또, 기존 ‘보육실태조사’를 보완하면 아동의 방과후보육서비스 이용률과 방과후보육서비스의 핵심특징들 등을 생산할 수 있다.

다. 시의성있는 통계생산체계 구축

복지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책입안시 데이터가 생산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통계의 경우 예를 들어 '가족실태조사'의 경우 조사결과의 공표시기가 가족정책 기본계획수립시기와 일치하여 실제 기본계획에 통계자료를 반영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시의성 있는 통계생산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2) 아동·청소년 영역

가. 통계작성 및 생산기관의 일관된 체계 구축 필요

최근 아동과 청소년 관련부처의 기구통합과 다른 부처로의 이관에 대한 논의는 관련 정책 및 전달체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향후 아동·청소년 복지 통계 시스템에서 지향해야할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 중 아동·청소년 복지통계의 체계화와 관련된 몇 가지 논의가 필요하다.

아동과 청소년의 분류구분이 일반적 사회통념과는 괴리된 채 법률의 목적 대상으로만 연령이 구분되어 정책의 혼선을 빚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정책 대상 연령의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2007년까지 보호 아동과 복지대상 아동은 '보건복지부'에서, 청소년 문화 및 역량개발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담당하여 구조상의 문제점을 유발하였으며, 아동과 청소년 발달에 요구되는 정책 및 서비스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존재하였었다. 하지만 2008년부터 아동과 청소년이 통합되어 '보건복지가족부'로의 새로운 시작은 청소년과 아동정책의 단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들, 즉 정책의 이원화 및 시너지 효과의 미흡(기존의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연령(0~17세)과 청소년기본법상의 청소년연령(9~24세)이 일부 중복된 상태에서의 중복된 정책 추진), 통합형·맞춤형 보호·복지 정책 구현 미흡(법령 및 정책 추진기구의 이원화로 말미암아 생애 통합형·맞춤형 보호·복지활동 정책의 효율적 구현 미흡),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통합형·맞춤형 역량강화의 상대적 미흡(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전개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인구가 점차 크게 감소함에 따라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아동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역량강화가 강하게 요구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량강화에 대한 강조가 상대적으로 미약) 등을 신속히 해결하여 왔다. 그러나, 2010년 또 다시 아동과 청소년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분리되어 '보건복지부'(아동에 대한 전반적 정책 관리)와 '여성가족부'(청소년관련 정책 및 사업 담당)로 나뉘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다시 이원화된 아동과 청소년의 분리는 통계생산체계의 변화를 함께 가져왔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개별통계의 분리도 명확해져야 한다. 관련부처의 이관은 통계작성기관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므로, 이와 함께 개별통계생산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수반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영역 복지통계는 대부분 행정적 필요에 따른 통계데이터 수집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정책적 관심사의 변화에 따라 통계가 개발 또는 중단되는 현상이 있다. 또는 정확한 통계작성기관의 체계화 미비로 인해 개별통계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와 같이 '아동종합실태조사', '청소년종합실태'로 분리되는 과정은 통계청 그리고 관련 부처간 충분한 사전조율과정이 필요하며, 통계이용자에게도 사전에 상세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

나. 통계 근거 관련 법령 조항 신설 및 제시 필요

아동·청소년 관련법 조항 및 조례, 법의 규칙을 신설하거나 제시하여 아동·청소년 복지통계의 지속성을 담보로 한 복지통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청사진의 제시가 필요하다. 기본적인 통계의 작성근거가 법적 조항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체계에서의 오류와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복지통계의 일관된 생산체계 구축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본법에 통계명을 정확히 제시하고, 조사내용 및 방법에 대해 중복성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 생산기관, 조사용역기관의 구분과 통계 관련 부처와의 협력 강화

아동·청소년복지통계 관련 기관의 일원화 및 체계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조사통계의 민간용역기관에 대한 일관된 생산체계를 수립하여 통계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지분야의 주요 현안은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요소의 존재, 아동과 청소년 복지의 중복되는 데이터

의 생산문제,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의 협력 부족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통계작성기관에서는 유사·중복성을 나타내는 아동과 청소년 복지통계의 사전분석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나아가 통계작성기관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3) 노인·장애인 영역

가. 생산기획단계부터 보고통계와 조사통계의 상호연계설계 필요

생산기획단계부터 보고통계와 조사통계가 상호연계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보고통계는 보고대상자만 계속해서 조사되기 때문에 보고대상자이외의 잠재 수요자 또는 잠재 대상자는 집계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보고통계는 객관적 현상을 보고집계하기 때문에 질적 변수를 조사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보고통계의 단점을 조사통계에서 보완할 수 있는 상호연계된 효율적인 생산체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장애인영역 복지통계 ‘등록장애인현황’, ‘장애수당수급자현황’,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 4종의 경우 보고 또는 조사대상이 모두 등록장애인이기 때문에 복지정책의 잠재대상자 또는 잠재수요자를 집계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등록장애인현황’이나 ‘장애수당수급자현황’같은 보고통계는 주관적, 심리적 측면의 질적 변수를 측정하지 못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생산기획 단계부터 이러한 보고통계가 지닌 단점을 조사통계가 상호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효율적인 생산체계 마련

유기적인 통계생산체계의 설계를 통해 종단조사와 횡단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효율적인 통계생산에 기여한다. 예를 들어 ‘노인실태조사’의 경우 1994년 처음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횡단조사로 생산된 이래 노인복지분야에서 유일하게 전국 노인의 전반적인 생활실태 파악에 높은 기여를 해 온 통계이나, 2008년부터는 통계설계가 변경되어 횡단조사에서 패널조사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노인복지분야에서는 이미 고령화연구패널조사,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등 여러 개의 패널조사가

존재하고 있다. 유기적인 통계생산을 설계하여 종단연구와 횡단연구를 모두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효율적인 통계생산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횡단조사로서 그동안 높은 기여를 해 온 노인실태조사를 종단연구로 전환하기 보다는 기존의 횡단조사로서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만약 2008년 이후 조사부터 패널조사 설계를 지향하고자 한다면, 조사주기마다 조사용역기관을 일관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패널조사의 특성상 동일 조사대상자의 표본이탈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패널조사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패널마모 대처, 패널응답률 유지관리 등 중장기 계획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다. 원자료에 대한 통일된 원칙 필요

첫째, 원자료의 공개에 대한 통일된 원칙을 마련한다. 노인·장애인영역 복지통계 9종 중에서 원자료가 공개된 통계는 ‘노인복지사업현황보고’,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 ‘등록장애인현황’, ‘장애수당수급자현황’ 등 총5종이다. 그러나 ‘장애수당수급자현황’의 경우 공표주기가 반기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 현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2007년 자료만 공표되어 있다. 그러나 통계작성기관인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사이트에서는 장애수당수급자현황의 경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공표되어 있어, 통계작성기관과 통계청의 공표시기가 상호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공표주기를 준수하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메타정보에 예정공표일을 상시적으로 안내해야 하여, 원자료 공개에 대한 통일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과 통계작성기관의 통계포털 사이트를 상호연계시켜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에 기여한다.

둘째, 조사통계의 경우 조사용역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원자료의 소유권여부, 보유기간, 폐기방법, 폐기확인절차 등을 명확히 한다. 원자료 소유권에 대한 통일된 원칙을 마련하여 향후 발생소지가 있는 소유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한다.

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신규통계생산 고려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과거 재가부문에 의존하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 간병이나 장기요양의 문제를 사회연대의 이념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분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노인들은 자식에게 부양부담을 덜어 주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동시에 부양을 담당하는 중장년층에게는 부양부담을 완화시켜 경제활동에 보다 전념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된 노인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 등급판정현황, 급여 등의 신규 통계가 생산되어야 한다.

4) 복지주제 영역의 공통적인 개선사항

현재 사회복지서비스의 총유형에 대한 정보를 통일된 형식으로 보고집계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신규통계가 필요하다. 현재 아동·청소년 영역이나 가족·복지시설 영역에 비해 노인·장애인 영역의 일부 복지통계는 노인복지서비스 또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유형에 대한 통계를 생산하고 있으나, 모든 복지영역을 포함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에 대한 통계는 생산되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계층의 복지요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의 모든 수요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앞으로 예상되는 수요에 부응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공급을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다.

(3) 복지통계 관리체계

1) 가족·복지시설 영역

가. 일관된 관리체계의 마련

가족·복지시설영역 복지통계 생산은 정부 각 부처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등과 같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이루어지나 관리는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통계의 생산자와 관리자가 다를 경우, 관리체계에 있어서는 통일된 관리시스템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통계마다 관리체계가 달라 생산자나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이 변경되었을 때, 기존에 운영이 되던 통계의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사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일관되게 관리를 담당하게 되는 관리자의 경우 그 전문성을 검토하고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 생산자와 연결하여 문의에 답변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나. 가족·복지시설영역 복지통계에 대한 통계평가제도 체계화

가족·복지시설영역 복지통계의 평가제도를 체계화한다. 통계작성기관의 내부평가와 함께 외부평가를 정기적으로 병행하여 실시한다.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결과를 모두 통계생산과정에 반영하여 통계생산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한다.

다.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관리체계 확립

보고서나 보도자료의 형태로 공표만 이루어지고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체계가 확립되지 못하는 통계도 있다. 고품질 통계생산을 위해서는 통계의 공표 후 통계오류 수정 관리와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통계이용자의 요구가 상시적으로 반영되는 수요자지향적 복지통계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 아동·청소년 영역

가. 일관된 관리체계의 확립

조사통계의 경우 주로 민간용역기관에게 외부 위탁을 통해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통계 생산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조직이 변경될 경우 통계 생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현재 아동·청소년영역 복지통계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에 산재되어 생산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조직에서 통계를 생산하거나, 통계의 생산자와 관리자가 상이할 경우 효율적인 통계관리를 위해서는 통합된 관리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분산적으로 생산된 아동·청소년영역 복지통계의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나. 통계이용자의 만족도 조사 실시

통계자료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통계자료에 대한 만족도 조사(on-line)를 실시하여 이용자의 범위 파악하고, 동시에 관리체계의 개선방안마련에 활용한다. 또한 만족도 조사를 통계생산체계에 반영하여 통계이용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통계이용자의 범위를 확대에 기여한다.

3) 노인·장애인 영역

가. 일관된 관리체계의 마련

노인·장애인영역 복지통계 생산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2개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일관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사통계의 경우 통계생산 기획, 현장조사, 자료처리, 결과공표의 각 단계마다 담당조직이 상이하여, 조사용역기관이 변경되더라도 과거 조사된 원자료의 사후관리를 일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조사용역기관과 사전에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원자료의 사후관리를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 노인·장애인영역 복지통계에 대한 통계평가제도 체계화

노인·장애인영역 복지통계에 대해 통계평가제도를 체계화 한다. 통계작성기관의 내부평가와 함께 외부평가를 정기적으로 병행하여 실시한다. 이러한 평가의 결과를 통계생산과정에 주기적으로 반영하여 복지통계의 품질향상에 기여한다.

(4) 한국복지통계위원회 설립

‘한국복지통계위원회’를 통계청내에 상설조직으로 신설하여 복지통계 분류체계, 생산체계, 관리체계의 총괄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복지정책의 중장기 계획수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분석·평가업무를 지원한다. 현재 통계청 심의기구 국가통계위원회에서는 정책분과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 사회분과위원회, 품질분과위원회, 지역분과위원회 등 5개 분과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복지통계분야는 주로 사회분과위원회에서 ‘인구 및 주택’에 관한 통계를 담당하고 있을 뿐 ‘복지’분야 통계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 이에 사회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복지분야를 전담하는 ‘한국복지통계위원회’를 통계청 사회분과위원회내에 신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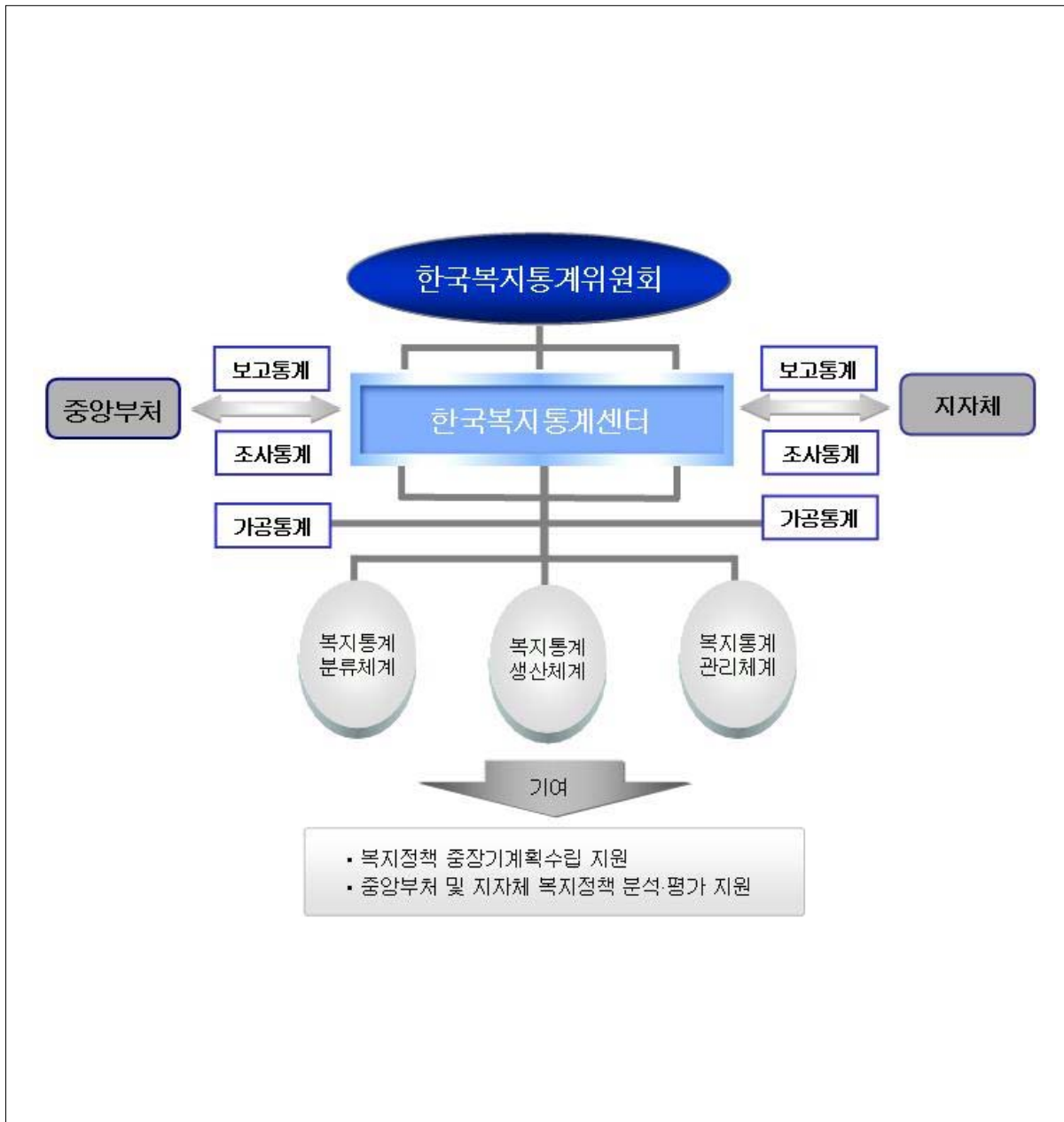
복지통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원회에서는 현재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다양한 통계작성기관에서 분산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복지통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전조정·갈등중재·사후협력 활동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통계위원회에서는 연례 정기회의 개최를 주관한다. 정기회의를 통해 복지통계 영역별로 새로운 통계 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신규·폐지가 필요한 통계 또는 유사·중복 통계 등을 통계작성기관 담당자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으로 논의함으로써, 우리나라 복지통계 생산체계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

둘째, 한국복지통계위원회는 국제복지통계를 선도할 수 있는 분류체계 정립을 위해 노력한다. 분산적으로 생산된 복지통계들을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셋째, 고품질 가공통계의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국복지통계위원회내에 사회복지학 전공 교수진으로 구성된 한국복지통계센터의 신설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문 인력과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가 수반되어야 한다. 다양한 통계작성기관에서 복지통계를 다양하게 생산되는 것은 일면 당연하다. 문제는 복지통계의 경우 특히 보건, 고용, 부동산, 경제 등 다른 분야 통계에 비해 ‘가공통계’가 부족하다는 점, 국제비교가능 가공통계 역시 부족한 점, 통계이용자의 요구가 반영된 복지통계가 부족한 점 등이다. 위원회의 주관으로 국제 심포지엄, 국제 포럼, 국제 전문가회의, 국제 통계작성자 전문훈련프로그램, 국제 데이터셋 개발 등의 사업을 정

기적으로 주최하여 국제 복지통계기준 개발을 선도한다.

우리나라 복지통계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고품질 복지통계를 기반으로 한 국가복지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를 달성하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그림 9> 한국복지통계체계

(5) 개선과제 도출

앞에서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음 <표 3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5> 복지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구분	문제점	개선방안
분류 체계	유사통계분류 사전조사 미비	국내 및 해외의 유사 통계분류를 조사하여 다른 통계와 비교가능한 복지통계분류체계 구축 연구추진
	조사내용 및 분류에 대한 이론적 근거 제시 부족	조사내용 및 분류의 이론적 근거 설명자료 제작
	아동청소년영역 복지통계의 명확한 대상분류미비	관련 근거 법령 조항 신설
	가족보호와 가족미보호 통계로 분류체계 마련 또는 아동복지차원에서 아동시설통계 분류체계 마련	현행 요보호아동통계, 가정위탁 등과 관련된 통계는 가족이 미호보호하는 아동에 대한 통계이므로 이를 가족미보호라는 분류하에 통계를 제공할 수 있음. 그렇지 않다면 아동복지차원에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함.
	생애주기를 고려한 통계분류 부재	영역별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통계 분류체계 마련
생산 체계	신규필요통계 생산	장기요양보험제도, 영역별 사회복지서비스 및 새로운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신규 통계 개발
	조사대상의 연령을 고려하지 않고 아동(9세)과 청소년(15세)을 동일한 설문지로 조사	조사대상의 연령에 따라 설문지를 상이하게 개발하여 조사
	조사통계와 보고통계간 유기적 연계부족	통계작성 기획단계부터 조사통계와 보고통계간 유기적 연계 체계 마련
	영역별 통계평가체계 미비	영역별 신뢰도, 타당도, 활용도에 대한 정기적인 통계 평가 실시
	설문지 제공 미비	통계공표시 설문지를 함께 제공 또는 통계청 메타정보에서 설문지조사표를 파일로 제공
	항목간 중복발생, 보고통계로 조사된 자료가 다시 재조사되는 문제	조사통계와 보고통계의 통계항목간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토대로 한 조사설계체계 마련
	통계용어, 기호, 조사대상, 조사내용에 대한 설명 부족	조사대상, 조사내용, 용어 및 기호, 표본선정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자료 제작
	공표예정일 미준수	통계청 메타정보에서 통계공표예정일 사전상시안내
	일대일면접조사로 공표되어있으나 집단조사로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학생대상 설문조사의 경우 교사가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결과 왜곡가능	사전에 공표된 조사방법을 준수하도록 조사면접원 및 조사기관, 조사대상자 교육 실시
	실제 조사과정의 관리에 있어 조사수행기관이 조사차수마다 변경	조사내용의 정확성 확보, 이용자의 의견수렴, 통계조사 결과의 활용을 돕기 위한 조사관리체계 구축
	조사대상기관별 조사관리지침서 제공 및 사전오리엔테이션 실시 미비	조사과정에서 조사오류 예방을 위해 조사대상기관별 조사관리지침서를 제공하고 사전 오리엔테이션 실시
	조사대상이 학생인 경우 학기중이 아닌 방학중에 조사	조사대상자가 학생인 경우 학기중 조사실시 및 예산편

	가 실시되는 문제, 예산편성시기인 8월이후에 통계가 공표되어 통계결과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	성시기 또는 정책수립시기이전 조사완료
관리 체계	통계작성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는 관리체계 부재	통계청내에 '한국복지통계위원회'를 신설하여 복지통계 작성기관간 사전협력강화 및 사후갈등중재
	원자료 공개에 대한 통일된 원칙 부재	미공개 원자료의 공개 확대
	통계이용자의 자료접근어려움	-통계결과를 활용한 토론회, 세미나, 논문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여 통계홍보활동 강화 -통계자료접근방법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및 통계작 성기관 홈페이지에서 상호 연계하여 안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메타자료를 통해 통계연혁, 조 사방법, 조사대상, 조사내용 등을 상시 안내
	통계이용자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계생산에 반영하는 통계수요관리시스템 부재	통계 조사내용, 조사항목, 분류체계 결정에 있어 공청 회, 간담회, 전문가그룹 의견수렴 등의 절차진행
	통계 증장기 발전계획 미비	복지통계 영역별 중·장기 발전계획의 정기 수립 및 정부 지원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관리

제 2 절 주제통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발전전략

1. 행정자료의 활용방안

행정자료의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승인통계이외의 다양한 행정자료를 복지정책 입안의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예를 들어 보육정책 입안에서 활용가능한 행정자료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 있다. ‘보육시설및이용자통계’의 경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집계 되는데, 공표되는 통계항목은 ‘보육시설 현황’, ‘보육시설 이용아동 현황’, ‘보육시설 종사자 현황’등이며 이외에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상에서 집계되는 자료를 추가 발굴하여 보육정책의 수립·보완에 필요한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둘째, ‘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및종사자현황보고’, ‘요보호아동현황보고’,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현황’와 같은 복지시설영역 복지통계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생산단계에서부터 효율적으로 활용할 경우,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대상아동 전체에 대한 입퇴소 현황 파악 등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입양 등의 경우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을 경우 통계 집계에서 누락될 수도 있으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할 경우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대상아동 전체에 대한 입퇴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셋째, 아동·청소년영역 복지통계 중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의 경우 조사대상 선정을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정책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행정자료 학교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와 같이 통계생산과정에서 여러 부처 및 기관·연구원의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통계생산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한다.

2. 통계간 연계분석 확대 방안

우리나라 복지통계의 통계간 연계분석을 확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보고통계와 조사통계의 상호연계된 생산기획을 통해 효율적인 통계작성과 연계분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조사통계 ‘보육실태조사’의 경우 보고통계 ‘보육시설및이용자통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보육통합시스템과 연계되어 분석될 필요가 있다. 불일치되거나 중복되는 통계항목간 상호보완적인 연계

분석을 통해 효율성 향상에 기여한다.

셋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총조사에서 장애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통계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통계작성방법의 개선을 통해 통계조사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한다.

넷째, 복지통계의 원자료 공개에 대한 통일된 원칙 수립과 원자료 공개의 확대가 요구된다. 현재 품질진단대상 복지통계 24종 중에서 2010년 현재 원자료가 공개된 복지통계는 조사통계 5종 ‘보육실태조사’, ‘여성가족패널조사’,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 보고통계 6종 ‘보육시설및이용자통계’, ‘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및종사자현황보고’, ‘요보호아동현황보고’, ‘노인복지사업현황보고’, ‘등록장애인현황’, ‘장애수당수급자현황’ 등 총 11종에 불과하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가족복지시설 영역 5종, 노인·장애인 영역 6종으로 아동·청소년 복지통계의 원자료 제공수준이 가장 낮아 통계이용자의 접근성이 가장 제한적이다. 복지통계 영역별로 원자료의 공개여부가 통일되지 않고 상이하여 공개여부에 대한 공통의 원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원자료의 공개원칙을 마련하여 통계간 연계분석 확대에 기여한다.

원자료 공개의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장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2002년 ‘비밀정보보호와 통계 효율성 법안’을 제정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 및 효율적인 통계의 생산, 공유, 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도 관련 법적 근거를 체계화하여 통계간 연계분석을 위한 환경이 정비되어야 한다.

다섯째, 조사항목 및 조사도구의 원출처 기재, 유사 항목이 사용된 관련연구 정보 등을 통계와 함께 공표한다. 현재 통계작성기관별로 개별 조사목적에 따라 복지통계들이 산발적으로 생산됨에 따라 통계항목중복, 용어불일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통계이용자의 통계간 연계분석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사항목 및 조사도구의 원출처 기재 등에 대한 정보가 통계공표시 함께 제공될 필요가 있다.

3. 통계의 효율성, 편의성 제고 방안

복지통계의 효율성, 편의성 제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통계의 경우

조사내용의 중복성 방지를 위해 통계생산의 기획 단계부터 관련 통계의 조사 작업을 실시한다. 통계의 목적과 의도, 핵심주제를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통계 결과를 제공하고, 통계 자체의 성격을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을 살려주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결과를 제공하는데 있어서도 각 통계별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도록 다른 기관과의 관련 통계 조사 등 사전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효율적인 통계생산에 기여한다.

둘째, 통계명, 간행물명, 원자료명을 일치시켜 통계이용자의 접근성 향상에 기여한다. 예를 들어, '보육실태조사'의 경우 2004년에 실시된 실태조사의 간행물명이 방대한 조사 내용을 주제에 따라 5권으로 구분, 발간되었고, 이에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전국 보육실태조사', '전국 보육·교육실태조사', '보육·교육이용및육구실태조사', '보육실태조사' 등 다양한 간행물명으로 인용되고 있다. 2009년에 실시된 제2차 실태조사는 보육분야로 한정, 조사내용 등을 축소하면서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서" 및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보육시설조사 보고서" 2권으로 발간되어 향후 제3차 조사는 제2차와 동일한 제목으로 작성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육시설및이용자통계'의 경우 간행물명 '보육통계'와 통계명 '보육시설및이용자통계'가 불일치하여 서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아동발달사회복지서비스수요조사'의 경우는 간행물명 '유망사회서비스수요공급조사'과 통계명 '아동발달사회복지서비스수요조사'가 서로 불일치하여 통계이용자의 접근에 한계가 있다. '노인복지사업현황보고'의 경우에도 통계명 '노인복지사업현황보고'와 간행물명 '노인복지시설현황'이 서로 불일치하여 통계이용자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과거의 통계명과 간행물명, 원자료명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통계별 메타자료에서 함께 제공하여 통계이용자의 이용편의성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셋째,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통계별 메타자료를 개선한다. 메타자료에서 간행물을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명을 함께 제공하고, 링크를 통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다음 <표 36>과 같이 현재 메타자료에서 간행물(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 1종)과 보도자료(보육시설및이용자통계,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노인실태조사,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 4종), 조사표(가족실태조사,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여성가족패널조사, 아동종합실태조사, 청소년가치관조사,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 7종) 등을 파일형식으로 일부 제공

하고 있으나, 모든 메타자료에서 파일을 제공하여 이용편의성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표 36>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메타자료 링크 현황

(2010년 10월 19일 현재)

구분	통계명	보도자료	간행물	조사표	원자료 DB	그래프
가족복지시설	가족실태조사	-	-	○	-	○
	여성가족패널조사	-	-	○	○ ¹⁾	-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지수측정	메타자료 없음				
	보육실태조사	-	-	-	○	-
	보육시설 및 이용자 통계	○	-	-	○	-
	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 및 종사자현황 보고	-	-	-	○	-
	요보호아동현황보고	-	-	-	○	-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현황	-	-	-	-	-
	-국내입양현황보고 (2008년)	-	-	-	○ ²⁾	-
-소년소녀가정현황보고 (2008년)	-	-	-	○ ²⁾	-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	-	-	-	-
	청소년유해환경집측종합실태조사	○	-	-	-	○
	청소년가치관조사	-	-	○	-	○
	학대아동보호현황	-	-	-	-	○
	아동발달분야사회복지서비스수요조사	메타자료 없음				
소년	청소년상담지원현황	-	-	-	-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	-	-	-
노인장애인	노인복지사업현황보고	-	-	-	○	-
	노인실태조사	-	-	○	-	-
	고령화연구패널조사	○	-	○	○	-
	노인학대현황	-	-	-	-	○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	-	-	○	○	-
	등록장애인현황	-	-	-	○	-
	장애인실태조사	-	-	-	○	-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	○	○	○	-	○
장애수당수급자현황	-	-	-	○	-	
합계		4	1	7	11	6

* 주: 1) DB 합계에 패널 포함(개별 연구원 사이트에서 제공)

2)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녀'의 DB는 2개가 분리되어 제공되므로, DB 합계에서 제외

넷째, 통계이용자의 이용목적에 따라 원자료를 일반인용 버전(public version) 과 전문가용 버전(restricted version)으로 구분하여 버전에 따라 제공하는 원자료의 범위를 차별화한다. 연구기관이나 대학과 같이 통계의 심층이용자들에게는 조사응답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통계이용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자료제공을 확대해야 한다. 민감한 자료의 성격을 고려하여 자료공개시 응답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원자료가 일정 절차를 통해 제공되는 통계의 경우 메타자료에서 원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필요 절차를 안내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가치관조사'의 경우 원자료 공개청구 절차를 거쳐 통계이용자에게 원자료를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고, '여성가족패널조사'와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경우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절차를 거친 통계 이용자에 한해 원자료가 제공되고 있으나 이러한 절차에 대한 이용안내가 메타정보에서 제공되지 않는다.

다섯째, 국가통계포털의 주제별 통계를 복지영역별로 세분화하여 제공하고 공표되는 통계의 종류를 확대하여 이용편의성 향상에 기여한다. 주제별 통계의 복지주제에서 '국내입양현황보고', '소년소녀가정세대현황', '요보호아동현황보고' 등 총25종의 통계가 제공되고 있어 통계이용자의 편의성이 낮다. 따라서 주제별 통계에서 제공되는 복지통계의 종류를 확대시켜야 한다. 또한 주제별 분류가 현재 '복지' 하나로만 분류되어 있으나 아동·청소년, 노인·장애인, 가족·복지시설 영역별로 세분하여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4. 정책 수요와 통계와의 격차 해소 방안

첫째, 신규 필요 국가통계 아이디어 공모전을 정기적으로 주최하여 민간차원의 복지통계 수요를 파악한다. 상위하달식 통계생산체계를 지양하고 일반 통계이용자의 수요조사를 통계생산과정에 반영하여 수요자지향적인 양방향 통계생산체계를 마련한다.

둘째, 법령 제개정시 통계기반 근거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절차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근거중심주의(evidence-based) 정책기반을 확립하여 정책 수요와 통계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현재 정책개정 절차에 이러한 통계 기반 근거여부에 대한 사전심사요건이 있으나, 향후 사회복지학 전공 교수진을 비롯한 전공분야별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절차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셋째, 통계청 국가통계 승인절차에 정책수요 반영 요건을 추가한다. 국가통계 승인절차의 필요요건으로 승인대상 복지통계의 정책수요 반영 여부확인을 추가하여 객관적인 통계에 기반한 정책의 입안·집행·평가 환경을 조성한다.

다섯째, 복지통계에 근거한 정책에 반영된 사례를 기록·관리하여 통계생산의 기획과정에서 통계기반 정책사례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신규 통계내용을 파악

한다. 복지정책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통계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미래 복지정책 입안의 기초가 되는 통계를 추정하여 통계의 생산기획과정에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이용자들이 통계 원자료 이외에 필요한 경우 조사항목 및 조사도구의 원출처 기재, 그리고 비슷한 항목이 사용된 관련연구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5. 신규 필요 통계 · 필요 항목 제안

복지통계에서 필요한 신규통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통계의 모든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신규통계는 국제비교가능통계이다. 조사통계의 경우 통계작성 기획단계부터 국제비교가능성을 고려하여 설계된 통계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청소년가치관조사' 등 일부에 불과하다. 국제비교가능한 복지통계의 생산을 위해 조사통계의 경우는 사전 기획단계부터 국제비교가능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서비스의 총유형에 대한 신규통계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변화와 함께 사회구성원의 복지욕구도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 사회복지기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모든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총유형 정보에 대한 신규통계가 생산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 신규통계에는 영역별로 가족복지서비스, 아동청소년복지서비스, 노인서비스, 장애인서비스 등으로 세분화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일-가정양립정책을 우선시하게 되는 현재에서 사용자의 입장이 아닌, 노동자의 입장에서 생산되는 통계가 필요하다. 또한 복지시설영역 분석대상통계 3종 역시 가족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면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요보호 아동들이 어떻게 해서 시설을 퇴소하게 되는 지, 퇴소 후에는 누가 보호를 제공하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있지 않다. 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증이나 학력, 경력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있지 않다. 또, 과거 복지시설영역 복지통계가 과거에는 부모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집계되었다면, 요즘은 연고자가 있으면서 시설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도 많기에 연고자와 관련된 통계를 고려해야 한다.

넷째, 노인영역 복지통계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신규통계가 필요하다.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에 따라 과거 재가 부문에 의존하던 치매, 중풍 노인에 대한 장기간병이나 장기요양의 문제를 사회연대의 이념에 따라 국가가 공동으로 분담하여 노인들이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전문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아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목적이 현재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통계가 국가통계로 승인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한 통계를 관리하고 있으나 외부에서 접근이 차단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장기적인 추계나 전국적 예상 대상자의 통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등급외자나 전체노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노인관련 신규 사회문제 등장에 따른 신규통계가 생산되어야 한다. 우리사회는 현재 고령사회로의 이행으로 인해 노인 세대의 양적 증가에 따른 변화와 더불어 질적 측면의 변화를 동시에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이 진입하는 노인세대의 새로운 사회문제,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 노인세대의 부양 문제, 노인 범죄문제 등이 이슈별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사회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노인복지 신규통계가 새롭게 생산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장애인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신규통계분류가 필요하다. 일단 장애가 발생하면 일생 동안 장애인의 자립, 자활을 위한 장기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와 정책이 요구된다. 장애인의 생애주기를 영유아기 장애인, 아동·청소년기 장애인, 중장년기 장애인, 노년기 장애인 등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생애주기별로 장애인의 욕구에 따라 영유아기 장애인의 보육지원, 학령기 장애인의 교육지원, 중년기 장애인의 경제사회활동, 노년기 장애인의 노후보장·부양·사회참여활동 등으로 세분화한 신규통계 분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표 37> 신규필요통계

통계명	대분류	소분류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등급판정현황	인원수 성별 연령 거주지

		가족형태
	급여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유형	시설급여 제공기관 재가급여 제공기관
	시설급여 이용서비스 형태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급여 이용서비스 형태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6. 통계 작성 방법 개선 필요성 및 개선방안

통계 작성 방법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통계와 보고통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통계의 경우 첫째, 일관성 있는 통계작성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통계작성기관의 빈번한 변경은 생산되는 통계의 품질향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아동·청소년영역 복지통계는 통계작성담당 부처의 이관, 통폐합으로 인해 통계작성체계의 관리에 혼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아동과 청소년정책을 총괄하여 다루었던 상황에서 여성부로 청소년과 가족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통계명칭도 '아동종합실태조사'와 '청소년종합실태조사'로 각각 변경되어 통계의 기간별 비교가능성과 연속성이 저해되고 동시에 통계이용자의 이용편이성이 떨어지게 되었다.

둘째, 패널조사의 조사주기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패널조사는 정해진 일정간격을 두고 동일 조사대상자를 반복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조사통계이기 때문에, 정해진 조사주기의 유지와 동일 조사대상자의 표본이탈방지를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경우 생산기획단계부터 국제비교가능성을 반영하여 설계된 패널조사임에도 불구하고, 2006년 제1차 기본조사, 2008년 제2차 기본조사를 실시한 이후 2010년 현재 예산 문제로 인해 제3차 기본조사가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가 동일 조사대상자의 응답률을 확보하고 조사주기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예산이 시급히 지원

되어야 한다.

셋째, 조사용역기관의 통일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복지통계의 생산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여러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생산된 복지통계의 관리는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통계의 생산자와 관리자가 상이할 경우 일관된 통계의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사통계의 경우는 주로 조사단계별로 세분화되어 일반적으로 현장조사, 자료처리와 결과분석 단계는 민간에서 용역으로 이루어지고, 조사기획과 공표 단계는 통계작성기관에서 주관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조사용역기관이 변경될 때마다 생산된 통계의 일관된 관리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조사용역기관에서 보유한 원자료 DB의 보유기간, 폐기절차, 폐기확인절차 등에 대한 통일된 관리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사용역기관이 변경될 때마다, 통계의 설문내용, 샘플 수 등에서 변동을 초래하여 조사결과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족실태조사'의 경우 3,000명에서 2,500명으로 표본크기가 달라지고, 조사 설계가 일관되지 않아 수집자료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저해되고 있다. '노인실태조사'의 경우는 2008년부터 패널조사를 지향하여 설계된 통계로, 패널마모 대처, 패널응답자 유지관리 등을 위한 중장기적 관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조사용역기관의 선정과 통일된 관리에 대한 투명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보고통계를 가공하여 가공통계로 생산한다. 방대한 양의 조사에 비해 공표되는 양이 적으므로 상대적으로 결과에 대한 비교 또는 분석이 다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복지시설 보고통계 3종의 경우 작성과정에서 많은 항목을 조사하지만, 발표되는 양은 일부에 불과하여 조사 자료들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표되지 않은 조사 자료들을 가공통계로 생산해야 한다.

7. 국제 기준 선도 역할 방안

우리나라 복지통계가 국제기준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승인통계의 고품질 통계생산환경이 정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OECD 등 국제기구에 제출되고 있는 복지통계의 목록을 정기적으로 DB로 구축하고 간행물로 공표한다. 둘째 DB와 정기간행물을 토대로 통계생산과정에서 국제기구의 기제출 통계와 미제출 요

구통계를 파악하여 미제출의 원인을 분석하고 분석결과가 생산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제출 요구통계는 기존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바로 생산할 수 있는 통계와 기존 통계조사의 재분석과 기존 통계조사에 조사항목의 보완을 통해서 생산할 수 있는 통계, 신규조사가 필요한 통계로 각각 구분해야 한다. 미제출 요구통계 중 기존조사를 활용하여 바로 생산이 가능한 통계는 단시일 내에 국제기구에 제출할 수 있으나, 기존 조사의 재분석이 필요한 통계는 조사실시기관과의 협의 여부에 따라 상이하나 장기적으로는 통계생산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기존 조사에 조사항목을 보완해야 하는 통계의 경우는 조사실시기관에 조사항목 보완을 요청하고 조사 시점까지 기다리는데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사항목의 추가가 쉽지 않은 경우는 신규 조사통계의 생산이 고려되어야 한다.

국내 통계생산환경의 정비를 바탕으로 국제 복지통계 기준 개발을 선도한다. ‘한국복지통계위원회’에서 복지통계분야의 국제 심포지엄, 국제 포럼, 국제 전문가회의, 국제 통계작성자 전문훈련프로그램, 국제 데이터셋 개발 등의 사업을 정기적으로 주관하여 복지통계의 국제 기준을 선도하고 복지통계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

8. 협력 및 통계관리방안

복지통계 24종의 작성기관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복지통계의 협력관리가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복지통계 작성기관의 협력을 위한 방안을 사전예방과 사후대응 측면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복지통계위원회’를 설립한다. 위원회에서는 통계작성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계작성기관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갈등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중재한다.

둘째,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여 통계작성기관의 갈등상황을 사전에 방지한다. 복지통계와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통계작성기관의 이해관계자 참여를 보장한다. ‘한국복지통계위원회’를 통해 정책의 입안 추진 과정에서 통계작성기관의 관련 이해당사자들간 사전 의견 교환 절차를 마련한다.

셋째, 통계작성기관간 갈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재를 위해 ‘한국복지통계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응방안을 심의한다.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갈등의 원인, 이해관계자,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여 협력을 위한 대응방안을 구체화한다.

넷째, ‘한국복지통계위원회’에서 국제비교가능 복지통계의 국제기준 개발을 선도한다. 다양한 통계작성기관의 협력강화를 토대로 국제기준을 선도할 수 있는 복지지표를 생산한다.

다섯째, 조사용역 계약체결시 원자료의 저작권을 명확히 한다. 한번 조사를 실시한 용역기관에서 원자료를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고, 계약종료이후 원자료의 폐기 방법, 폐기 확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통계자료를 명확하게 관리한다.

제 3 절 로드맵

개별 복지통계 및 국제사례 분석결과를 토대로 복지통계의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다음과 <표 38>과 같이 제시한다. 먼저 단기적인 추진과제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대상별 복지통계 분류체계마련, 국제기구요구 통계생산, 가공통계생산, 원자료 공개확대, 복지통계평가체계 확립, 일관된 복지통계 생산체계확립 목표를 달성한다. 나아가 로드맵의 중장기 추진과제는 복지통계 생산기관간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국제복지정책적 측면의 분류체계 재구성, 국제선도지표 개발, 다학제간 신규통계개발시스템 구축, 한국복지통계위원회 신설 목표를 추구한다. 이러한 장 단기 목표 달성을 통해 한국의 복지통계가 국제적 수준의 통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표 38> 로드맵

구분	추진과제명	추진내용	기대효과	
단기	분류 체계	국내 및 해외 유사통계분류 체계 연구추진	국내 및 해외의 유사 통계분류를 조사하여 다른 통계와 비교가능한 복지통계분류체계 구축 연구추진	효율성
		조사내용 및 분류의 이론적 근거 제시	조사내용 및 분류의 이론적 근거 설명자료 제작	이용편의성
		대상에 따른 복지영역별 통계 분류체계 마련	현재 복지통계는 가족, 이동, 노인 등 영역별로 분류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영역별 분류체계 개발 및 관련 근거 법령조항신설	충족성
	생산 체계	조사통계와 보고통계의 상호 보완체계 마련	조사통계와 보고통계의 통계항목간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토대로 한 조사설계 체계마련	효율성
		예정된 공표시기의 준수	통계청 메타정보에서 통계공표예정일 사전상시안내	이용편의성
		예정된 조사방법의 준수	사전에 공표된 조사방법을 준수하도록 조사면접원 및 조사기관, 조사대상자 교육 실시	이용편의성
	관리 체계	통계에 대한 홍보와 공표 방법의 다양화	통계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통계결과를 활용한 토론회, 세미나, 논문경진대회 등을 개최	이용편의성
		통계이용자 및 전문가의 정기적 의견수렴체계 마련	조사결과, 조사분석, 설문지 구성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통계이용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진행	충족성
		설문지 수록	통계공표시 설문지를 함께 제공 또는 통계청 메타정보와 함께 설문지 조사표파일 제공	이용편의성
		용어설명서 제시	조사대상, 조사내용, 용어 및 기호, 표본선정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자료 제작	이용편의성
		자료접근경로의 다양성 확보, 공표방법의 다양화, 메타자료 제공	-통계자료접근방법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및 통계작성기관 홈페이지에서 상호 연계하여 안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메타자료를 통해 통계연혁,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내용 등을 상시 안내	이용편의성
	중장기	분류 체계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통계 분류체계 마련	영역별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통계 분류체계 마련
가족보호와 가족미보호 통계로 분류체계 마련 또는 이동복지차원에서 이동복지시설통계 분류체계 마련			현행 요보호이동통계, 가정위탁 등과 관련된 통계는 가족이 미보호하는 이동에 대한 통계이므로 이를 가족미보호라는 분류하에 통계를 제공할 수 있음. 그렇지 않다면 이동복지차원에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함.	충족성
생산 체계		조사통계의 경우 조사대상기관에 대한 관리지침서 제공 및 오리엔테이션 실시	조사과정에서 조사오류 예방을 위해 조사대상기관별 상세한 조사관리지침서 제공 및 사전오리엔테이션 실시	신뢰성
		조사시기의 조정	조사대상자가 학생인 경우 학기중 조사실시 및 예산편성시기 또는 정책수립시기이전 조사완료	신뢰성
		조사대상별 설문지 종류 보완	조사대상의 연령에 따라 설문지를 상이하게 개발	효율성
		신규필요통계 생산	장기요양보호제도, 영역별 사회복지서비스 및 새로운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신규통계 개발	충족성
관리 체계		통계 중장기 발전계획의 정기적 수립	복지통계 영역별 중·장기 발전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 및 정부 지원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관리	효율성
		실질적인 조사관리체계 및 영역별 복지통계 평가체계 확립	- 조사내용의 정확성 확보, 이용자의 의견수렴, 통계조사결과의 활용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조사관리체계 구축 - 영역별 신뢰도, 타당도, 활용도 정기평가 실시	충족성
		원자료 공개 및 관리체계마련	미공개 원자료의 공개 확대 및 원자료 관리체계 마련	이용편의성
		한국복지통계위원회 신설	통계청 국가통계위원회 산하에 '한국복지통계위원회'를 신설하여 사전협력강화 및 사후갈등중재	신뢰성 충족성

복지통계의 발전을 위해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추진과제명, 추진내용을 분류체계, 생산체계, 관리체계 3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단기 목표

복지통계의 단기목표를 분류체계, 생산체계, 관리체계 3가지 측면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분류체계

첫째, 국내 및 해외의 유사통계분류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통계사전기획단계부터 유사통계분류를 사전조사하여 국제비교가능한 복지통계 분류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통계사전기획단계부터 국제비교성을 고려하여 설계된 통계가 ‘고령화연구패널조사’와 ‘청소년가치관조사’로 일부에 불과하다. 앞으로 국제비교가능성을 고려한 복지통계 분류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둘째, 조사내용 및 분류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조사내용, 조사분류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설명자료를 상세히 제작하여 통계이용자에게 제공한다. 통계공표와 함께 조사항목 및 조사도구의 원출처에 대한 기재, 그리고 비슷한 항목이 사용된 관련연구정보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여, 통계이용자의 이용편의성 향상에 기여한다.

셋째, 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복지통계를 명확히 분류한다. 아동과 청소년 대상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관련 근거 법령 조항을 신설한다. 이러한 근거 법령을 근거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복지통계를 생산한다. 아동·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라 상이한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통계내용과 항목의 개발이 필요하다.

(2) 생산체계

첫째, 조사통계와 보고통계의 상호보완체계를 마련한다. 조사통계와 보고통계의 통계항목간 중복방지를 위해 정기적인 전문가 의견수렴 및 사전조사를 토대로 한 조사설계체계를 마련한다.

둘째, 예정된 공표시기를 준수한다. 통계이용자의 편의성향상을 위해 통계청 메타정보에서 통계공표 예정일을 사전에 상시 안내한다.

셋째, 예정된 조사방법을 준수한다. 조사면접원 및 조사기관,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교육을 실시하여 사전에 공표된 조사방법을 준수하도록 한다.

(3) 관리체계

첫째, 통계에 대한 홍보 및 공표 방법을 다양화한다. 통계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통계결과를 활용한 토론회, 세미나, 논문경진대회 등을 개최한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여성가족패널조사’ 등 일부 조사통계의 경우 학술경진대회개최를 통해 적극적인 통계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다른 복지통계에서도 학술경진대회를 확대 실시하여 통계의 홍보방법을 다양화한다.

둘째, 통계이용자 및 전문가의 정기적인 의견수렴체계를 마련하여 통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통계생산과정에 반영한다. 조사결과, 조사분석, 설문지 구성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통계이용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한다. 기존에 국가승인 복지통계들을 신뢰도, 타당도, 활용도 등의 측면에서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향후 통계작성체계의 개선방안 마련에 기여한다.

셋째, 통계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통계공표시 통계결과보고서와 함께 설문지를 함께 제공한다. 동시에 통계청 메타정보에서 설문지 조사표를 파일로 링크하여 동시에 제공한다.

넷째, 통계용어의 설명을 구체화한다. 조사대상, 조사내용, 용어 및 기호, 표본 선정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자료를 제작한다.

다섯째, 자료접근경로의 다양성을 확보한다. 통계자료의 이용방법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메타자료에서 상세히 안내하고, 동시에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및 통계작성기관 통계포털을 링크로 연결하여 이용편의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메타자료를 통해 통계연혁,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안내한다.

2. 중장기 목표

복지통계의 중장기목표를 분류체계, 생산체계, 관리체계 3가지 측면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분류체계

첫째, 복지시설영역의 경우 통계의 분류에 있어 가족보호와 가족미보호 통계로 분류체계를 마련하거나 또는 아동복지차원에서 아동복지시설통계 분류체계를 마련한다. 현재 조사되고 있는 요보호아동통계, 가정위탁 등과 관련된 통계는 가족이 미보호하는 아동에 대한 통계를 생산하고 있으나, 가족미보호라는 분류 하에 통계를 제공할 수 있다. 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아동복지차원에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통계 분류체계를 마련한다. 개인 생애주기 및 가족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통계 분류체계가 필요하다. 현재 OECD에서 구축하고 있는 Family Database의 경우 생애주기에 따른 고용 프로파일을 분류하여 성별 연령별 고용 프로파일,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에 따른 모의 고용률과 출산휴가율의 형태로 수집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국립보건통계본부에서 제공하는 주정부의 출생, 사망, 혼인 및 이혼에 관한 통계생산시 생애주기에 따른 통계분류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가족관련 통계들을 통해 변화하는 가족형태나 가족이 처한 다양한 위험들, 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체계 등에 대한 현황들을 정확히 파악되고 정책적인 함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2) 생산체계

첫째, 조사통계의 경우 조사대상기관에 대한 관리지침서를 제공하고,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조사과정에서 조사오류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조사대상기관별로 상세한 조사관리지침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사전 오리엔테이션 절차를 마련한다.

둘째, 조사시기를 조정한다. 조사대상자가 학생인 경우 조사가 방학이 아닌 학기 중에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통계공표시기가 예산편성시기 또는 정책수립시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최신통계에 근거한(evidence-based) 예산편성 또는 정책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통계공표시기를 고려한 조사시기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조사대상별로 설문지 종류를 다양화한다. 조사대상의 연령에 따라 설문지를 상이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9세 아동과 15세 아동을 동일한 설문지로 조사할 경우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저해시키므로, 조사대상을 고려한 설문지의 종류를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

넷째, 이슈별, 복지영역별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신규필요통계를 개발한다. 예를 들어, 노인영역 복지통계의 경우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이후 제도 및 서비스의 평가를 위해 신규통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통계가 국가통계로 승인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또, 새로운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에 대한 신규통계 역시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사회경제적 수준의 향상으로 사회구성원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다양하게 변화되었으나 이러한 욕구에 부응하여 모든 사회복지서비스의 종류를 분류하여 제공하는 통계가 부재한 실정이다.

(3) 관리체계

첫째, 통계 중장기 발전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한다. 복지통계 영역별 중·장기 발전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정부지원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관리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등의 경우 지원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예정된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둘째, 실질적인 조사관리체계 및 영역별 복지통계 평가체계를 확립한다. 조사내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통계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계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또한 영역별 신뢰도, 타당도, 활용도 등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통계생산에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셋째, 원자료 공개확대 및 원자료 관리원칙을 마련한다. 미공개 원자료의 공개확대를 위해 통계청은 원자료의 공개확대에 대한 통일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한다. 이를 바탕으로 복지분야의 가공통계 생산증대 활성화에 기여한다. 또한 민간

조사용역기관의 계약기간종료이후 원자료에 대한 관리원칙을 체계화한다.

넷째, 한국복지통계위원회를 신설한다. 통계청 국가통계위원회 산하에 한국복지통계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사전협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사후갈등상황 발생시 효율적으로 중재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문헌

- 고경환(2001). *복지통계의 생산현황과 과제 - OECD요구통계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경환(2009). *OECD기준에 따른 한국의 Family Database 구축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경태(2001). “복지국가의 유형별로 본 사회복지통계의 특성비교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2003). *한국통계조사현황*. 보건복지부.
- 윤혜미, 이정호, 이해경(1990). *사회복지지표의 체계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재형(2007). *국가통계체계의 이해*, 감사 제93호, pp.81-21, 감사원.
- 통계청(2006). *장래인구추계*.
- 통계청(2010). *주민등록인구통계*.
- DeSeCo(2003). The demand defines the internal structure of a competenc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Annual Report and Accounts 1997-98. UK ONS.
- Olson. B. H. Larsen. A. S., & McCubbin. H. I.(1983). Family Strengths Scale. In B. H. Olson. H. I. McCubbin. H. L. Bames. A. S. Larsen. M. L. Muxen. & M. A. Wilson(Eds.). Families: What makes them work?(pp.261-262). Beverly Hills. CA:Sage.
- http://www.agingstats.gov/agingstatsdotnet/main_site/default.aspx
- <http://www.cdc.gov>
- <http://childstats.gov/americaschildren/index.asp>
- <http://www.hhs.gov>
- <http://www.oecd.org>
- <http://www.un.org>
- <http://www.statistics.gov.uk>
- <http://www.socialsecurity.gov>
- <http://www.kosis.kr>

부 록

부록 1. 통계작성현황 조사표

부록 2. FGI 결과보고서

[복지] 통계작성현황 조사표

- 조사통계 -

※ 문항별로 직접 입력 또는 맞는 항목에 해 주세요.

A. 다음은 통계작성현황에 대한 문항입니다.

A-1. 통계명 * 통계청에서승인받은명칭				
A-2. 작성기관/소속부서				
A-3. 담당자[㉠]	성명			
	전화		이메일	

㉠ 2010년 정기통계품질진단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본 통계를 작성하는 통계작성기관 및 해당부서를 자문위원단으로 구성하여, 절차에 따라 연구결과에 대한 자문을 실시합니다. 담당자는 연구 결과 자문에 대한 의견 제시, 업무연락 등을 수행할 통계작성담당자를 기재하여야 하며, 변경이 있을 시에는 연구팀에 조속히 고지하여 연구결과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바랍니다. 담당자는 자문 및 사업 과정·결과에 대해 담당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B. 다음은 통계에 관한 기본사항에 대한 문항입니다.

B-1. 작성목적	
------------------	--

B-2. 작성근거 * 통계작성근거가되는법조항	
------------------------------------	--

B-3. 조사주기	①매월 ②분기 ③반기 ④1년 ⑤기타(년 주기, 부정기)
------------------	--

B-4. 조사대상	
(1) 조사규모	①전수 ②표본 ③전수·표본조사 병행실시
(2) 조사단위 * 중복선택가능	①개인 ②가구 ③사업체 ④기타()
(3) 조사범위	
(4) 조사대상시점 및 기간	
(5) 조사실시기간	

B-5. 조사방법 * 중복선택가능	①면접조사 ②우편조사 ③전화조사 ④인터넷조사 ⑤기타()
------------------------------	--

C.다음은 통계작성 및 자료제공에 관한 문항입니다.

C-1. 조사항목 중 미공표항목	
--------------------------	--

C-2. 통계작성기준시점/기간 * 조사기준시점과 통계작성시점이 다른 경우 기입	
---	--

C-3. 결과작성	①전산시스템내에서자동집계 ②별도의 집계프로그램이용(프로그램명:) ③기타()
------------------	---

C-4. 작성결과 주요지표	
-----------------------	--

C-5. 공표방법, 주기, 최근공표시기				
(1)공표방법 * 중복선택가능	①보도자료	②DB	③간행물	④기타()
(2)주기 * 중복선택가능	①매월②분기③반기④1년⑤기타()	①매월②분기③반기④1년⑤기타()	①매월②분기③반기④1년⑤기타()	①매월②분기③반기④1년⑤기타()
(3)최근공표명 * 공표명과 함께 공표자료를 게시한 웹사이트 주소도 함께 표시				
	* 웹사이트 주소			
(4)최근공표시기	20 년 월	20 년	20 년 월	20 년 월

C-6. 통계의 주요이용자 * 중복선택가능 * () : 기관명과 주요이용목적기재	①통계작성기관 ②통계작성기관외 정부기관() ③정부산하기관() ④연구소 및 대학 ⑤언론 ⑥기타()
--	---

D. 다음은 통계작성체계에 관한 문항입니다.

D-1. 통계작성체계		
* 각 단계별 업무담당기관과 부서명을 직접수행과 용역수행으로 나누어 기입		
	단계별 업무수행기관	
	직접수행	용역수행
(1)조사기획		
(2)현장조사		
(3)자료처리		
(4)결과분석		
(5)공표		

E. 다음은 통계담당 현황에 관한 문항입니다. 위탁기관이 아닌 통계작성기관의 통계담당인력을 기재합니다.

E-1. 통계담당인력현황			
직위·직급/성명	통계업무 비중 (본인 업무 대비)		통계업무 비중 (본인 업무 대비)

F. 다음은 작성기준 및 분류에 대한 문항입니다.

F-1. 통계작성을 위한 국제기준/해외사례				
(1) 국제기준				
(2) 주요국가별 작성사례				
(㉠)국가명				
(㉡)제도				
(㉢)작성배경 및 연혁				
(㉣)통계명				

F-2. 통계작성에 사용되는 표준분류가 있습니까?	
표준분류	적용항목

G. 다음은 통계의 활용부문에 대한 문항입니다.

G-1. 행정 또는 등록자료, 타 통계를 통계작성에 활용하십니까?

(1) 현재 통계작성에 활용되는 행정 또는 등록자료는 무엇입니까?

행정 또는 등록자료(기관/자료명)	활용방법
	①행정/등록 자료의 개별대상을 연계하여 기초자료로 활용 ②행정자료 집계값과의 수준 비교 ③기타()
	①행정/등록 자료의 개별대상을 연계하여 기초자료로 활용 ②행정자료 집계값과의 수준 비교 ③기타()
	①행정/등록 자료의 개별대상을 연계하여 기초자료로 활용 ②행정자료 집계값과의 수준 비교 ③기타()

(2) 향후 통계작성에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행정 또는 등록자료는 무엇입니까?

행정 또는 등록자료(기관/자료명)	활용방법
	①행정/등록 자료의 개별대상을 연계하여 기초자료로 활용 ②행정자료 집계값과의 수준 비교 ③기타()
	①행정/등록 자료의 개별대상을 연계하여 기초자료로 활용 ②행정자료 집계값과의 수준 비교 ③기타()

(3) 현재 통계작성에 타 통계를 활용하고 계십니까?

통계명(기관/자료명)	활용방법
	①다른 통계의 마이크로데이터 또는 명부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 ②다른 통계 결과와의 수준 비교 ③기타()
	①다른 통계의 마이크로데이터 또는 명부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 ②다른 통계 결과와의 수준 비교 ③기타()
	①다른 통계의 마이크로데이터 또는 명부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 ②다른 통계 결과와의 수준 비교 ③기타()

G-2. 이 통계가 다른 통계작성에 활용되고 있습니까?

통계명(기관/자료명)	활용방법
	①다른 통계의 마이크로데이터 또는 명부자료로 활용 ②다른 통계 결과와의 수준 비교 ③기타()
	①다른 통계의 마이크로데이터 또는 명부자료로 활용 ②다른 통계 결과와의 수준 비교 ③기타()
	①다른 통계의 마이크로데이터 또는 명부자료로 활용 ②다른 통계 결과와의 수준 비교 ③기타()

H. 다음은 국제기구 요구자료 및 제공현황에 대한 문항입니다.

자료요구 기관명 ^㉑	주요제공항목	제공 주기 ^㉒	최근 제공시기	관련 간행물 ^㉓	미제공항목 (구체적모두작성)	미제공사유 ^㉔	비고

㉑ OECD, IMF, UN, ILO, WHO 등 통계자료를 요청한 국제기구 각각에 대해 작성
 ㉒ 부정기로 자료를 제공할 경우 최근 3년 이내 제공 횟수
 ㉓ 국제기구에 제공한 자료가 실린 (해외)간행물 및 발간연도 작성
 ㉔ ‘미제공 항목’ 각각에 대한 사유(예: 요구자료와 작성기준이 상이함, 분류기준이 다름 등)를 구체적으로 작성

I. 다음은 통계작성자가 생각하는 개선사항에 대한 문항입니다.

I-1. 조사항목/작성항목/공표항목 중 변경이 필요한 항목은?						
항목	사유		항목	사유		
	①수정	②삭제	③추가	①수정	②삭제	③추가
	사유:()			사유:()		
	①수정	②삭제	③추가	①수정	②삭제	③추가
	사유:()			사유:()		

I-2. 사회환경변화 등에 의해 추가 작성이 요구되는 통계가 있습니까?
 있다면 요구되는 통계 내용을 간략히 기재해 주세요.

I-3. 통계작성과정에서 외부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요구사항을 간략히 기재해 주세요.

I-4. 기타 작성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기재해 주세요.

(1)자원투입부분 *중복선택가능	①인력 ②예산 ③하드웨어/소프트웨어 ④기타()
(2) 기타	

[복지] 통계작성현황 조사표

- 보고통계 -

※ 문항별로 직접 입력 또는 맞는 항목에 ✓해 주세요.

A. 다음은 통계작성현황에 대한 문항입니다.

A-1. 통계명 <small>* 통계청에서승인받은명칭</small>				
A-2. 작성기관/소속부서				
A-3. 담당자[㉠]	성명			
	전화		이메일	

㉠ 2010년 정기통계품질진단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본 통계를 작성하는 통계작성기관 및 해당부서를 자문위원단으로 구성하여, 절차에 따라 연구결과에 대한 자문을 실시합니다. 담당자는 연구 결과 자문에 대한 의견 제시, 업무연락 등을 수행할 통계작성담당자를 기재하여야 하며, 변경이 있을 시에는 연구팀에 조속히 고지하여 연구결과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바랍니다. 담당자는 자문 및 사업 과정·결과에 대해 담당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C. 다음은 통계작성 및 자료제공에 관한 문항입니다.

C-1. 통계작성범위	
--------------------	--

C-2. 통계작성 기준시점/기간	
--------------------------	--

C-3. 결과작성	①전산시스템내에서 자동집계 ②별도의 집계프로그램 이용(프로그램명:) ③기타()
------------------	---

C-4. 작성결과 주요지표	
-----------------------	--

C-5. 공표방법, 주기, 최근공표시기				
(1)공표방법 * 중복선택가능	①보도자료	②DB	③간행물	④기타()
(2)주기 * 중복선택가능	①매월②분기③반기④1년⑤기타()	①매월②분기③반기④1년⑤기타()	①매월②분기③반기④1년⑤기타()	①매월②분기③반기④1년⑤기타()
(3)최근공표명 * 공표명과 함께 공표자료를 게시한 웹사이트 주소도 함께 표시				
		* 웹사이트 주소		
(4)최근공표시기	20 년 월	20 년 월	20 년 월	20 년 월

C-6.통계의주요이용자 * 중복선택가능 * () : 기관명과 주요 이용목적 기재	①통계작성기관 ②통계작성기관외 정부기관() ③정부산하기관() ④연구소 및 대학 ⑤언론 ⑥기타()
--	---

D. 다음은 통계작성체계에 관한 문항입니다.

D-1. 통계작성체계

* 각 단계별 업무담당기관과 부서명을 직접수행과 용역수행으로 나누어 기입

	기관명/부서
(1)작성기획	
(2)자료수집	
(3)통계작성	
(4)결과분석·공표	

E. 다음은 통계담당 현황에 관한 문항입니다. 위탁기관이 아닌 통계작성기관의 통계담당인력을 기재합니다.

E-1. 통계담당인력현황			
직위·직급/성명	통계업무 비중 (본인 업무 대비)		통계업무 비중 (본인 업무 대비)

F. 다음은 작성기준 및 분류에 대한 문항입니다.

F-1. 통계작성을 위한 국제기준/해외사례				
(1) 국제기준				
(2) 주요국가별 작성사례				
(㉠)국가명				
(㉡)제도				
(㉢)작성배경 및 연혁				
(㉣)통계명				

F-2. 통계작성에 사용되는 표준분류가 있습니까?	
표준분류	적용항목

G. 다음은 통계의 활용부문에 대한 문항입니다.

G-1. 행정 또는 등록자료, 타 통계를 통계작성에 활용하십니까?

(1) 현재 통계작성에 활용되는 행정 또는 등록자료는 무엇입니까?

행정 또는 등록자료(기관/자료명)	활용방법
	①행정/등록 자료의 개별대상을 연계하여 기초자료로 활용 ②행정자료 집계값과의 수준 비교 ③기타()
	①행정/등록 자료의 개별대상을 연계하여 기초자료로 활용 ②행정자료 집계값과의 수준 비교 ③기타()
	①행정/등록 자료의 개별대상을 연계하여 기초자료로 활용 ②행정자료 집계값과의 수준 비교 ③기타()

(2) 향후 통계작성에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행정 또는 등록자료는 무엇입니까?

행정 또는 등록자료(기관/자료명)	활용방법
	①행정/등록 자료의 개별대상을 연계하여 기초자료로 활용 ②행정자료 집계값과의 수준 비교 ③기타()
	①행정/등록 자료의 개별대상을 연계하여 기초자료로 활용 ②행정자료 집계값과의 수준 비교 ③기타()

(3) 현재 통계작성에 타 통계를 활용하고 계십니까?

통계명(기관/자료명)	활용방법
	①다른 통계의 마이크로데이터 또는 명부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 ②다른 통계 결과와의 수준 비교 ③기타()
	①다른 통계의 마이크로데이터 또는 명부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 ②다른 통계 결과와의 수준 비교 ③기타()
	①다른 통계의 마이크로데이터 또는 명부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 ②다른 통계 결과와의 수준 비교 ③기타()

G-2. 이 통계가 다른 통계작성에 활용되고 있습니까?

통계명(기관/자료명)	활용방법
	①다른 통계의 마이크로데이터 또는 명부자료로 활용 ②다른 통계 결과와의 수준 비교 ③기타()
	①다른 통계의 마이크로데이터 또는 명부자료로 활용 ②다른 통계 결과와의 수준 비교 ③기타()
	①다른 통계의 마이크로데이터 또는 명부자료로 활용 ②다른 통계 결과와의 수준 비교 ③기타()

H. 다음은 국제기구 요구자료 및 제공현황에 대한 문항입니다.

자료요구 기관명 [㉠]	주요제공항목	제공 주기 [㉡]	최근 제공시기	관련 간행물 [㉢]	미제공항목 (구체적모두작성)	미제공사유 [㉣]	비고

- ㉠ OECD, IMF, UN, ILO, WHO 등 통계자료를 요청한 국제기구 각각에 대해 작성
- ㉡ 부정기로 자료를 제공할 경우 최근 3년 이내 제공 횟수
- ㉢ 국제기구에 제공한 자료가 실린 (해외)간행물 및 발간연도 작성
- ㉣ '미제공 항목' 각각에 대한 사유(예: 요구자료와 작성기준이 상이함, 분류기준이 다름 등)를 구체적으로 작성

I. 다음은 통계작성자가 생각하는 개선사항에 대한 문항입니다.

I-1. 조사항목/작성항목/공표항목 중 변경이 필요한 항목은?						
항목	사유		항목	사유		
	①수정	②삭제	③추가	①수정	②삭제	③추가
	사유:()			사유:()		
	①수정	②삭제	③추가	①수정	②삭제	③추가
	사유:()			사유:()		

I-2. 사회환경변화 등에 의해 추가 작성이 요구되는 통계가 있습니까?
 있다면 요구되는 통계 내용을 간략히 기재해 주세요.

I-3. 통계작성과정에서 외부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요구사항을 간략히 기재해 주세요.

I-4. 기타 작성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기재해 주세요.

(1)자원투입부분 *중복선택가능	①인력 ②예산 ③하드웨어/소프트웨어 ④기타()
(2) 기타	



제 1 차 FGI

부	문	복지
행정진단팀	F G I 일 자	2010년 5월 12일
	공 동 연 구 원	정순돌 교수 최순종 교수
	책 임 연 구 원	김미혜 교수

FGI 보고서

제 1 부 회의 준비 및 진행과정

I. 회의 준비과정

1. 참석자 선정

		참석자 현황
참석자선정방법	장애인 분야 교수 및 10년 이상 현장실무자를 대상으로 참석자 선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문 이용자 집단 - 정책고객(기업경영정책수립자포함) _____명 - 교수 1명 - 연구원 _____명 - 기타(사회복지기관 실무자) 1명
실시장소	서울 케세이퍼시픽 호텔 1층 커피숍	<input type="checkbox"/> 일반 이용자 집단 - 대학원생 _____명 - 대학생 _____명 - 일반인 _____명 - 기타() _____명
소요시간	오전 10:10~12:10 2시간	

2. 회의 참석자 명부

연번	성명	소속(부서명까지 기재)	직위

II. 회의 진행과정

회의진행		
· 사회자가 국가정기통계 품질진단 사업 및 FGI 실시 목적소개 · FGI 참석자간 소개 · 사회자가 FGI의 주요 논의 내용에 대해 소개 후 참석자간 의견 발언 · 사회자가 FGI 논의 내용 정리 후 FGI 종료	사 회 자	
	기 록 자	
	녹음·녹화여부	녹음

제 2 부 회의록

◦ FGI 실시과정에서 기록한 내용을 부문별로 정리

부 문	문제점 지적사항	개선 의견 내용	핵심어
통계체계	장애인 관련 통계들이 여러 기관에서 분산되어 제공되고 있어 이용자의 편리성이 떨어짐. 예를 들어 고용분야의 경우 노동부의 장애인고용통계, 산재장애인 실태조사,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 등이 제공되고 있고, 교육분야의 경우 특수교육통계 등이 개별적으로 제공됨에 따라 장애인통계의 통합적 이용이 어려움	장애인 분야 통계만을 전담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신설을 고려할 수 있음. 장애인 통계의 조사기관은 다양할 수 있지만 동일 주제 통계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통계작성 기관
복지주제 진단	장애인에 대한 국제통계의 경우 국가마다 장애의 정의와 범주의 편차가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국가 간 장애인 통계를 단순 비교하기 불가능함 OECD에서 장애인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나 OECD 회원국별 기준에 의해 장애출현율과 연령별 장애인인구,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관련 예산지출 정도의 자료가 취합되고 있음	장애인에 대한 국제 통계체계 통일은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함	국제적 통계체계 비교
복지주제 진단	장애인실태조사의 경우 주로 일반적인 장애인 생활실태 조사에 그치고 있어 실제로 필요한 장애범주 및 연령별 분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연령에 따른 장애유형별 수요에 기초한 장애인 프로그램의 근거자료로는 활용하기 어려움 또한 관련 장애인 정책의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에도 부족함	대략적인 실태조사가 아닌 보다 세분화된 통계조사가 필요함 장애유형별, 연령별 세분화된 통계가 제공되어야 함	조사항목 세분화

복지주제 진단	2008년부터 장애인실태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이 등록장애인으로 한정되면서, 실제 생활에서 문제를 경험하고 있지만 장애인 등록을 하지 못한 인구의 파악이 불가능해지고, 장애출현을 추정의 오차가 커지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	조사대상을 등록장애인만으로 한정시키지 않고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조사대상 확대
복지주제 진단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의 경우 장애인실태조사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별다른 의미가 없음. 장애인식 개선 관련 문항, 편의시설 관련 문항 등이 실질적인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함. 또한 조사가 매1년마다 실시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임	장애인의 체력, 실증자료 등의 세분화된 조사항목의 추가를 고려해야 함	조사항목 추가
복지주제 진단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의 경우 매5년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조사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판단됨. 현실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의 미비 문제는 통계의 체계나 조사방법의 문제라기보다 통계조사 이후의 행정적 관리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조사의 전수조사 재고가 필요함	조사방법 재고
주제통계의 효율성	장애수당수급자현황, 등록장애인현황의 경우 장애인 복지관련 국가 예산 정책 수립과 관련된 중요한 통계자료이나, 통계내용이 매우 단순하다는 점, 보고서 발간이 익년 10월로 상당히 늦다는 점 등에서 사회복지 정책분야 및 실천분야에서 이용자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음	전체적으로 장애인 관련 통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폐지해야 할 통계는 없다고 사료되나, 제공되는 통계의 질, 이용자의 편리성 향상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	통계의 활용도

(※ 별첨: 질문지 및 녹취록)

제 3 부 FGI 결과 요약 및 개선의견

- FGI 회의록을 토대로 간략하게 정리

주요 토의 내용
<p>장애인 분야 통계체계의 경우 여러 기관에서 분산되어 장애인 통계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편리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고용분야의 경우 노동부의 장애인고용통계, 산재장애인 실태조사, 장애근로자 실태조사 등이 제공되고 있고, 교육분야의 경우 특수교육통계 등이 개별적으로 제공됨에 따라 장애인 통계의 통합적 이용이 어렵다.</p> <p>장애인 복지주체에 있어 장애인 분야 국제적 통계 비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한다. 장애인에 대한 국제통계의 경우 국가마다 장애의 정의와 범주의 편차가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국가 간 장애인 통계를 단순비교하기 불가능하다. OECD에서 장애인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나 OECD 회원국별 기준에 의해 장애출현율과 연령별 장애인인구, 장애인 고용률, 장애관련 예산지출 정도의 자료가 취합되고 있는 정도이다.</p> <p>장애인실태조사의 경우 주로 일반적인 장애인 생활실태 조사에 그치고 있어 실제적으로 필요한 장애범주 및 연령별 분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연령에 따른 장애유형별 수요에 기초한 장애인 프로개발의 근거자료로는 활용하기 어렵다. 또한 2008년부터 조사대상이 등록장애인으로 한정되면서, 실제 생활에서 문제를 경험하고 있지만 장애인 등록을 하지 못한 인구의 파악이 불가능해졌다.</p> <p>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의 경우 조사가 매1년마다 실시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며,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의 경우 매5년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조사의 비효율성이 초래된다고 판단된다. 한편 장애수당수급자현황, 등록장애인현황의 경우 장애인 복지관련 국가 예산 정책 수립과 관련된 중요한 통계자료이나, 통계내용이 매우 단순하다는 점, 보고서 발간이 익년 10월로 상당히 늦다는 점 등에서 사회복지 정책분야 및 실천분야에서 이용자의 활용도가 낮다.</p>

- FGI 회의록을 토대로 개선의견 정리

주요 개선의견
<p>장애인 분야 국제적 통계 비교는 국가별로 장애의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한다. 장애인 분야 통계체계의 경우 장애인 분야 통계만을 전담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신설을 고려할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통계조사 기관은 다양할 수 있지만 동일 주체의 통계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장애인실태조사의 경우 대략적인 실태조사가 아닌 보다 세분화된 통계조사가 필요하다. 장애유형별, 연령별 세분화된 통계가 제공되어야 하며, 조사대상을 등록장애인보다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의 경우 장애인의 체력, 실증자료 등 세분화된 조사항목의 추가를 고려해야 한다.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의 경우 통계조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전수조사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p> <p>전체적으로 장애인 관련 통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폐지해야 할 통계는 없다고 사료되나, 제공되는 통계의 질, 이용자의 편리성 향상 등이 요구된다.</p>



제 2 차 FGI

부	문	복지
행정진단팀	F G I 일 자	2010년 5월 13일
	공 동 연 구 원	정순돌 교수 최순종 교수
	책 임 연 구 원	김미혜 교수

FGI 보고서

제 1 부 회의 준비 및 진행과정

I. 회의 준비과정

1. 참석자 선정

		참석자 현황
참석자선정방법	가족 및 복지시설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참석자를 선정함	√ 전문 이용자 집단 - 정책고객(기업경영정책수립자포함) _____명 - 교수 4명 - 연구원 _____명 - 기타() _____명
실시장소	이화여대 포스코관 557호	□ 일반 이용자 집단 - 대학원생 _____명 - 대학생 _____명 - 일반인 _____명 - 기타() _____명
소요시간	오전 10:00~12:00 2시간	

2. 회의 참석자 명부

연번	성명	소속(부서명까지 기재)	직위

II. 회의 진행과정

회의진행		
· 사전인터뷰 가이드를 이용하여 가족분야와 복지시설분야를 나누어 진행함 · 사회자가 국가정기통계 품질진단 사업 및 FGI 실시 목적소개 · FGI 참석자간 소개 · 사회자가 FGI의 주요 논의 내용에 대해 소개 후 참석자간 의견 발언 · 사회자가 FGI 논의 내용 정리 후 FGI 종료	사회자	정순둘
	기록자	배은경
	녹음·녹화여부	녹음

제 2 부 회의록

◦ FGI 실시과정에서 기록한 내용을 부문별로 정리

부 문	문제점 지적사항	개선의견 내용	핵심어
통계체계 (가족)	가족부문의 통계에 있어, 가족 실태패널조사는 가족, 구조, 관계 중심이고, 기업및공공기관의 가족친화지수는 일·가족양육지수의 성격이며,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퇴직자들 중심의 통계이다. 보육실태조사와 여성가족패널조사는 크게 분류한다면 가족 분야로 분류할 수 있음. 고령화연구패널조사가 가족분야의 통계로 분류되기에는 주제분야가 상이함	통계주제를 기준으로 가족분야 통계를 재분류한다면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개인이나 노동 중심의 통계이므로 가족실태패널조사, 기업및공공기관의가족친화지수, 보육실태조사, 여성가족패널조사와는 별도로 구분되어야 함	통계분류
복지주제 진단 (가족)	가족실태패널조사의 경우 패널과 적합하지 않은 조사항목이 존재하거나 다른 통계의 조사항목과 중복되고 있기 때문에 패널조사만의 핵심적인 지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음. 인구학적 측면의 실태현황조사 정도에 그치고 있어 시계열변화에 따른 변화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움.	패널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면 보육이나 돌봄 문제 등 가족에 대한 주요 핵심지표를 선별해내는데 기여할 수 있음	조사항목
복지주제 진단 (복지시설)	복지시설 부문의 통계들은 제공되는 통계의 양과 질이 단순하여 해당분야 연구자의 활용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있음	제공되는 통계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통계조사가 실시되어야 함	통계의 활용도
주제통계 의 효율성 (복지시설)	복지시설 부문 통계의 경우 특히 시설아동을 대상으로 한 통계조사가 구체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음. 시설아동의 경우도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관련통계자료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시설아동을 조사대상에 일부 포함시켜 주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조사주기

(※ 별첨: 질문지 및 녹취록)

제 3 부 FGI 결과 요약 및 개선의견

- FGI 회의록을 토대로 간략하게 정리

주요 토의 내용
<p>가족부문 통계에 있어 가족실태패널조사는 가족, 구조, 관계 중심이고, 기업및공공기관의가족친화지수는 일·가족양육지수의 성격,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퇴직자들 중심의 통계로 그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주제별로 구분한다면 가족실태패널조사와 기업및공공기관의가족친화지수는 하나로 분류될 수 있지만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별도로 구분해야 할 것이다.</p> <p>기업및공공기관의가족친화지수측정은 일가족과 관련된 기업의 종사자(가족)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통계인데, 반대로 가족측면에서도 기업에 대한 태도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p> <p>또한 가족실태패널조사의 경우 패널과 적합하지 않은 조사항목이 존재하거나 다른 통계와 중복되는 조사항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패널조사만의 핵심적인 지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 패널조사를 통해 제공되는 통계가 실태현황 정도에 그치고 있어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시계열적 변화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p> <p>복지시설부문 통계의 경우 연구논문의 서론에서 문제제기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어 전문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통계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아동·청소년부문에서는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등을 통해 일반아동에 대한 다양한 조사가 실시되고 있지만, 특히 복지시설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통계가 구체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시설아동의 경우도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통계조사가 실시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p>

- FGI 회의록을 토대로 개선의견 정리

주요 개선의견
<p>가족부문 통계 중에서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개인이나 노동 중심으로 조사되는 통계이기 때문에 가족부문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가족의 측면에서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기업에 대한 태도 변화의 추이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가족실태와 관련된 패널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면, 보육이나 돌봄문제 등 가족에 대한 주요 핵심지표를 선별해내는데 기여할 것이다.</p> <p>복지시설부문 통계는 현재 보호 아동을 중심으로 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나 통계청과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일반 아동과 보호 아동 모두를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때 통계조사의 기준을 미리 확정하고 난 뒤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복지시설아동은 복지시설 통계에서도 조사될 수 있지만 아동·청소년의 일부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실태조사에서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p>



제 3 차 FGI

부	문	복지
품질진단팀	F G I 일 자	2010년 6월 30일
	공 동 연 구 원	정순돌 교수 최순중 교수
	책 임 연 구 원	김미혜 교수

FGI 보고서

제 1 부 회의 준비 및 진행과정

I. 회의 준비과정

1. 참석자 선정

		참석자 현황
참석자선정방법	아동청소년 분야 교수 및 10년 이상 전문가를 대상으로 참석자 선정	√ 전문 이용자 집단 - 정책고객(기업경영정책수립자포함) _____명 - 교수 2명 - 연구원 2명 - 기타(사회복지기관 실무자) _____명 □ 일반 이용자 집단 - 대학원생 _____명 - 대학생 _____명 - 일반인 _____명 - 기타() _____명
실시장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8층 812호 회의실	
소요시간	오후 16:00~18:10 2시간	

2. 회의 참석자 명부

연번	성명	소속(부서명까지 기재)	직위

II. 회의 진행과정

회의진행		
· 사회자가 국가정기통계 품질진단 사업 및 FGI 실시 목적소개 · FGI 참석자간 소개 · 사회자가 FGI의 주요 논의 내용에 대해 소개 후 참석자간 의견 발언 · 사회자가 FGI 논의 내용 정리 후 FGI 종료	사회자	최순중
	기록자	김민경
	녹음·녹화여부	녹음

제 2 부 회의록

◦ FGI 실시과정에서 기록한 내용을 부문별로 정리

부 문	문제점 지적사항	개선 의견 내용	핵심어
통계체계	통계의 운영 및 관리기관이 하나의 부처에서 실행되고 있어 부처의 통·폐합 및 이관에 따른 개별통계의 관리체계 변화에서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의 이용 및 활용의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음	통계 전체 체계를 담당하는 통계청의 역할을 추가하든지, 혹은 여성가족부 산하 통계분석센터를 활용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통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함	통계작성 기관의 관리체계 및 운영체계
통계체계	부처이관에 따른 통계의 존재 유무 또한 확실히 변화하였음.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가 아동종합실태조사, 청소년종합실태조사로 나뉜 상황에 대해 전반적인 실행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와 더불어 다른 부처분야에서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말아야 할 것임	통계작성기관 및 운영에 대하여 생산산 통계는 관리 체계로 넘어가 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의 전반적인 책임을 맡겨야 할 것이며, 앞으로 통계의 분리 및 이행에 따라서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나 제언을 듣고 난 후의 작업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임	통계의 분리
통계체계	개별통계가 변화되거나 분리되는 등 기본적인 근거 사항이 없음. 이런 상황에서 관리체계를 지적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지원되지 않은 이상 발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개별통계 및 운영과 관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기본 사항을 법제화로 명시시킬 필요 있음. 명시화를 통해 통계 생산에 있어 지속성을 추구할 수 있으며, 통계 관리 및 활용에도 긍정적인 효과 기대 가능	통계 근거 사항의 법제화
아동 청소년 분야진단	통계작성에서의 아동과 청소년은 각 개별통계마다 연령이 다르게 적용되어 조사 및 통계를 생산하고 있음	개별통계에서 조사 실시하고 있는 나이 및 연령대에 관련하여 지정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필요	조사연령
아동 청소년 분야진단	각 개별통계마다 유사한 항목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 결과에서의 차이를 보이는 통계를 발견할 경우 통계 자료의 신뢰성, 정확성을 확보	통계조사 전 조사 항목에 대하여 사전 개별 통계의 조사 항목에 대해 우선적인 검토 필요. 통계에서 꼭 필요한지, 그리고	조사항목 광범위

	하기 어려움	어떤 면에서 활용될 것인지에 대해 명시 또한 필요	
복지주제 진단	‘청소년가치관조사’와 같이 개별적 나라 상황의 청소년 의식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오며, 문화적 차이를 감안한 국제비교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임 국제비교가 가능한 통계와 불가능한 통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음	국제비교가 가능한 통계를 우선적으로 선별할 필요가 있음 통계체계 및 통계 조사 항목, 내용 등에 대해 국제비교의 목적을 뚜렷하게 띄고 있는 통계를 구분하여야 함 통계 자체의 국제비교성, 시계열 비교가 가능한지에 대해 우선적 고민 필요	국제비교 가능성
통계 활용성	통계의 활용에 있어서 기존 개별 통계의 원자료 및 시계열 자료 등 확보 노력이 없음 또한 기존 자료를 토대로 질적으로 향상된 가공 통계, 혹은 크로스된 통계의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단일적이고, 기계적인 개별 통계 생산에는 의미가 없음	기존 개별 통계의 원자료 확보와 더불어 자료를 토대로 하여 통계분석센터를 이용한 가공통계의 생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이런 자료를 전문가, 학계, 학생 등에게 쉽게 이용될 수 있도록 발간될 필요 있음	통계의 활용도
통계체계	개별 통계 등 아동과 청소년 분야 통계에서의 꼭 조사가 필요한 핵심주제 및 언어, 항목을 구분하여 우선적으로 통계 생산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음. 중요도, 신뢰도, 정확성이 떨어지는 무분별한 통계 생산이 문제임	아동청소년백서, 혹은 청소년백서, 아동백서에 들어가는 통계자료를 잘 파악하여, 이에 핵심적인 상황을 판단하거나 보여주는 핵심 통계를 구분할 필요 있음 각 백서에 실어 한 해의 핵심 통계 현황을 보여주어야 함	통계핵심 발굴필요

(※ 별첨: 질문지 및 녹취록)

제 3 부 FGI 결과 요약 및 개선의견

- FGI 회의록을 토대로 간략하게 정리

주요 토의 내용
<p>아동청소년분야 통계의 경우 통계의 운영 및 관리기관이 하나의 부처에서 실행되고 있어 부처의 통·폐합 및 이관에 따른 개별통계의 관리체계 변화에서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의 이용 및 활용의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부처이관에 따른 통계의 존재 유무 또한 확실히 변화하게 하였으며, 그 예로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가 아동종합실태조사, 청소년종합실태조사로 나뉜 상황에 대해 전반적인 실행 여건 등 예산적인 측면에서나 체계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통계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이런 개별 통계 생산에 있어서는 향후 어떻게 되는지와 더불어 다른 부처분야에서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말아야 할 것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p> <p>개별통계가 변화되거나 분리되는 등 기본적인 근거 사항이 없어 통계 생산에서 위와 같은 상황, 그리고 지속성을 가지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관리체계를 지적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지원되지 않은 이상 발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p> <p>조사 내용이나 항목에 있어 각 개별통계마다 유사한 항목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 결과에서의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이런 통계를 발견할 경우 통계자료의 신뢰성, 정확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p> <p>통계의 활용에 있어서 기존 개별 통계의 원자료 및 시계열 자료 등 확보에 대한 노력이 뚜렷하지 않다. 또한 기존 자료를 토대로 질적으로 향상된 가공 통계, 혹은 크로스된 통계의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통계의 질적 향상이 어려운 실정이다.</p> <p>대부분의 아동청소년관련 통계에서 단일적, 지속적이지 못하고, 기계적인 개별 통계 생산에는 의미가 없다.</p> <p>국제비교에 있어 개별적 나라 상황의 청소년 의식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오거나, 문화적 차이를 감안한 국제비교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비교가 가능한 통계와 불가능한 통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으로 보인다.</p> <p>개별 통계 등 아동과 청소년분야 통계에서의 꼭 조사가 필요한 핵심주제 및 언어, 항목을 구분하여 우선적으로 통계 생산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 중요도, 신뢰도, 정확성이 떨어지는 무분별한 통계 생산이 지적된다.</p> <p>통계작성에서의 아동과 청소년은 각 개별통계마다 연령이 다르게 적용되어 조사 및 통계를 생산하고 있어 이용자, 그리고 학계나 법적 근거에서의 기본 사항에 대하여 많은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아동과 청소년의 부처가 달라진 이상 통계와 연령대에서의 구분이 정확하게 나누어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다시 부처의 이관이 또 문제가 거론된다면, 이에 혼돈될 수 없게 법적 근거 조치 사항을 만들어 놓는 등의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통계의 체계는 품질진단 할 수 없을 만큼의 질서가 흔들어져 있을 것이다.</p>

- FGI 회의록을 토대로 개선의견 정리

주요 개선의견
<p>아동청소년관련 분야 통계 전체 체계를 담당하는 통계청의 역할을 추가하든지, 혹은 여성가족부 산하 통계분석센터를 활용하여 아동청소년관련 통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p> <p>통계작성기관 및 운영에 대하여 생산산 통계는 관리 체계로 넘어가 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의 전반적인 책임을 맡겨야 할 것이며, 앞으로 통계의 분리 및 이행에 따라서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나 제언을 듣고 난 후의 작업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p> <p>개별통계 및 운영과 관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기본 사항을 법제화로 명시시킬 필요 있겠다. 명시화를 통해 통계 생산에 있어 지속성을 추구할 수 있으며, 통계 관리 및 활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p> <p>국제비교가 가능한 통계를 우선적으로 선별할 필요가 있음 통계체계 및 통계 조사 항목, 내용 등에 대해 국제비교의 목적을 뚜렷하게 띄고 있는 통계를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통계 자체의 국제비교성, 시계열 비교가 가능한지에 대해 우선적 고민 필요하다.</p> <p>기존 개별 통계의 원자료 확보와 더불어 자료를 토대로 하여 통계분석센터를 이용한 가공통계의 생산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이런 자료를 전문가, 학계, 학생 등에게 쉽게 이용될 수 있도록 발간될 필요 있음에 질적 향상의 긍정적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p> <p>아동청소년백서, 혹은 청소년백서, 아동백서에 들어가는 통계자료를 잘 파악하여, 이에 핵심적인 상황을 판단하거나 보여주는 핵심 통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각 백서에 실어 한 해의 핵심 통계 현황을 보여주어야 한다.</p>



제 4 차 FGI

부	문	복지
품질진단팀	F G I 일 자	2010년 7월 12일
	공 동 연 구 원	정순돌 교수 최순중 교수
	책 임 연 구 원	김미혜 교수

FGI 보고서

제 1 부 회의 준비 및 진행과정

I. 회의 준비과정

1. 참석자 선정

		참석자 현황
참석자선정방법	노인복지 분야 교수를 대상으로 참석자 선정	√ 전문 이용자 집단 - 정책고객(기업경영정책수립자포함) _____명 - 교수 2명 - 연구원 _____명 - 기타(사회복지기관 실무자) _____명
실시장소	이화여자대학교 이화포스코관 103호	□ 일반 이용자 집단 - 대학원생 _____명 - 대학생 _____명 - 일반인 _____명 - 기타() _____명
소요시간	오전 10:00~12:00 2시간	

2. 회의 참석자 명부

연번	성명	소속(부서명까지 기재)	직위

II. 회의 진행과정

회의진행		
· 사회자가 국가정기통계 품질진단 사업 및 FGI 실시 목적소개 · FGI 참석자간 소개 · 사회자가 FGI의 주요 논의 내용에 대해 소개 후 참석자간 의견 발언 · 사회자가 FGI 논의 내용 정리 후 FGI 종료	사 회 자	
	기 록 자	
	녹음·녹화여부	녹음

제 2 부 회의록

◦ FGI 실시과정에서 기록한 내용을 부문별로 정리

부 문	문제점 지적사항	개선 의견 내용	핵심어
통계체계	노인복지 통계의 항목에 있어 신생통계로 포함될 항목으로 객관적인 측면이외에 질적인 측면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삶의 질 영역처럼 질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변수가 조사되어야, 노인복지 정책 수립 시 목표설정, 방향성 설정이 가능하며, 연구자입장에서 종속변수를 다양화시킬 수 있음.	미국에서는 National Institute of aging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모든 데이터의 생산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연구소가 존재함. 우리나라도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국립노인복지연구원' 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통계작성 기관
복지주제 진단	최근 보건복지부는 재가장기 요양서비스에 대하여 재가서비스이용자 수준을 OECD와 비교할 수 있도록 통계를 생산해달라고 요구받고 있으나, 외국의 경우는 이러한 서비스 자체가 없기 때문에 OECD와 비교할 수 있도록 맞추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함.	국제 통계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조사통계의 경우 처음 조사기획단계부터 연구진들이 국제통계의 항목을 참조해서 설계해야 함. 둘째 보고통계의 경우는 국가정책 설정이 가능한 수준의 통계작성 보고체계 설정을 위해 국제 비교가 가능한 변수를 보고통계의 변수로 사전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통계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국제 비교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 데이터를 생산해야 함.	국제적 통계체계 비교
통계공표 체계	통계의 공표측면에서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생산된 공적인 자원으로서의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생산된 복지통계의 미공표라는 통계생산기관간 폐쇄성 문제가 존재함. 예를 들어 건강보험공단의 통계는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공표한다면 얼마든지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고 사료됨. 최근 사회적 이슈가 높은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국가승인통계가 이루어져야 함.	기관간 폐쇄성

	전혀 공표가 되지 않아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같은 관련 정책의 연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개별 통계의 조사기관이 데이터에 대해 독점권을 행사하는 것이 문제임.		
통계공표 체계	통계생산 기관간 폐쇄성뿐만 아니라 동일 기관내 폐쇄성의 문제점도 존재함.	복지관련 통계를 전담하는 상근행정담당관이 필요함. 복지 통계 전반에 대한 정보관리를 해야 함. '노인복지통계 자문위원단' 또는 '노인복지통계 기술지원단'을 설치하여 복지통계 작성 체계 및 관리에 대한 정기적 자문을 얻어 복지통계의 품질 관리를 확보해야 함.	기관내 폐쇄성
노인복지 주제진단	최근 조사통계의 빈번한 조사 수행기관의 변경으로 인하여 일관성의 결여라는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결국 통계의 질 저하를 초래하여, 통계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음. 노인실태조사의 경우 국책연구기관에서 일관되게 조사를 해야 책임성을 갖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2008년 조사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계명대학교로 조사기관이 변경됨에 따라 앞으로 매년 조사기관이 변경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계명대학교의 노인실태조사 통계의 질 저하로 인해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한 통계생산을 초래하였음.	복지 통계 전반에 대한 국가차원의 단일 통계기획기관의 설치가 필요함. 통계생산과정에 대하여 통계생산의 기획단계에서부터 통합적인 계획을 기반으로 한 생산이 이루어져야 함.	조사기관의 변경
노인복지 주제진단	조사대상자가 여러 통계에 중복하여 응답함으로써 조사비용의 중복성 및 조사대상자의 소진 문제가 발생되었음.	노인복지 통계 전반에 대한 국가차원의 통계기획기관의 설치가 필요함. 단일 기관에서 여러 통계생산기관 간 생산하는 통계의 영	중복성

		역을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함.	
노인복지 주제진단	노인복지를 전공한 교수들도 모르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통계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이 문제임.	모든 복지관련 통계정보와 리스트를 제공해주는 단일 기관의 역할이 요구됨.	통계공표 체계
노인복지 주제진단	여러 부처에서 공동으로 생산해야 하는 노인복지통계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공동 통계생산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여러 부처의 공동 통계생산을 위한 비용조달프로젝트를 고려할 수 있음	통계생산 비용조달

(※ 별첨: 질문지 및 녹취록)

제 3 부 FGI 결과 요약 및 개선의견

- FGI 회의록을 토대로 간략하게 정리

주요 토의 내용
<p>노인복지분야 통계체계의 경우 객관적 변수이외에 삶의 질 같은 주관적 변수가 측정되어야 관련 정책의 수립이나 평가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신생통계의 항목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신생통계의 개발이나 유사중복통계의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복지통계 전문기관이 부재한 실정이다.</p> <p>또한 노인실태조사의 경우 2008년 조사부터 조사수행기관이 변경으로 인해 앞으로 매번 조사마다 조사수행기관의 변경이라는 문제에 직면하였다. 실제로 2008년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실시한 노인실태조사의 경우 조사결과보고서의 발간조차 늦게 이루어졌으며 조사된 통계의 질이 이전 자료와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노인실태조사의 기간별 비교가능성 수준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p> <p>노인학대현황보고의 경우 보고되는 통계의 수준이 단순한 정도에 그치고 있어 노인학대에 대한 전국적인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전국의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보고통계이기는 하지만 관련분야 연구자들에게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노인학대의 원인 등에 관한 심도 깊은 연구자체가 불가능하다.</p> <p>노인복지 통계의 국제간 통계 비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한다. 국가마다 관련 개념의 정의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개념의 정의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근 보건복지부는 재가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하여 재가서비스이용자 수준을 OECD와 비교할 수 있도록 통계를 생산해달라고 요구받고 있으나, 외국의 경우는 이러한 서비스자체가 없기 때문에 OECD와 비교가능한 국내통계생산이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하는 것이다.</p> <p>통계의 공표측면에서 기관간 폐쇄성 및 기관내 폐쇄성 문제가 존재한다.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생산된 공적인 자원으로서의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생산된 복지통계의 미공표라는 통계생산기관간 폐쇄성이 존재한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의 통계는 전혀 공표가 되지 않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같은 관련 연구가 통계를 기반으로 수행되기 불가능한 실정이다. 개별 통계의 조사주체 기관이 데이터에 대해 독점을 하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동일기관이더라도 기관내 데이터에 대한 폐쇄성을 갖는 경우도 문제점이다.</p>

- FGI 회의록을 토대로 개선의견 정리

주요 개선의견
<p>노인복지 통계의 국가간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통계의 경우 처음 조사기획단계부터 연구진들이 국제통계의 항목을 참조해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보고통계의 경우는 국가정책 설정이 가능한 수준의 통계작성 보고체계 설정을 위해</p>

국제 비교가 가능한 변수를 보고통계의 변수로 사전에 추가시켜야 한다. 나아가 통계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국제 비교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전국 데이터를 생산해야 할 것이다.

통계 공표상의 문제점인 기관간 폐쇄성 및 기관내 폐쇄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복지 통계 전반에 대한 국가차원의 단일 통계기획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단일한 하나의 조직에서 여러 개별부서별로 생산하고 있는 통계들을 총괄하여 조율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고, 복지통계 전반에 대한 정보관리 및 공표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기관을 통하여 '노인실태조사'의 경우처럼 조사기관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제통계의 비교가능성 확보를 위해 국제비교가능한 보고통계 및 조사통계의 기획을 전반적으로 담당할 수 있다.

통계의 주제가 여러 부처간에 공동으로 중복되어 있는 경우는 공동비용조달프로젝트를 마련하여 복지통계의 공동생산을 시도해 볼 수도 있다.

또한 '노인복지통계 자문위원단' 또는 '노인복지통계 기술지원단'을 설치하여 복지통계 작성체계 및 관리에 대한 정기적 자문을 얻어 복지통계의 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여러 통계들간 data merge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코드를 추가하여 공표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수요가 높은 지역통계의 경우에도 지역코드를 추가하여 data merge를 통한 연구가 가능해 질 것이다.

FGI 질문지

2010년도 국가통계 품질진단
복지분야 주제통계 FGI 질문지

부문	질문내용
통계 체계	<p><input type="checkbox"/> 본 주제영역의 통계체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주제 영역 통계의 정책적 의미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본 연구 범위의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 부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본 주제 영역의 제도·통계 체계가 수요와 공급, 정책 등의 요인별 프로세스와 적절하게 연계가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복지 주제 진단	<p><input type="checkbox"/> 본 주제통계가 이용은 어떠하십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주제통계의 분류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조사내용 등의 정보를 잘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에 불편이 없습니까? ◦ 본 주제통계의 운영에 있어 전문가와 이용자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습니까? ◦ 본 주제통계의 관리체계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본 주제통계가 통계의 목적에 따른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p><input type="checkbox"/> 본 주제영역의 국제적 통계체계 비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들 통계와 유사한 주요 국가별 작성사례가 있습니까? 있다면 국가별 작성사례를 들어주시고 작성배경과 통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이들 통계와 유사한 통계에 대한 국제기구의 요구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측면에서 요구되고 있으며, 어느 나라 또는 기구에서 요청하고 있습니까? ◦ 본 주제통계가 외국의 통계작성체계를 잘 반영한다고 보십니까? ◦ 본 주제통계가 통계의 국제기준과 적용범위를 잘 반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본 주제통계가 국제기구 자료제공 수준에 맞게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 본 주제통계의 국제기구 자료제공 수준에 있어 미제공되고 있는 자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추가로 개발하여야 할 통계항목이나 새로운 통계작성방법이 있으십니까?
주제 통계의 효율성	<p><input type="checkbox"/> 본 주제영역 통계자료를 활용하시기에 효율적이십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주제통계가 배타적 독립성을 유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사하거나 중복, 폐지해야할 통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기적으로 통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본 주제통계가 정책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보십니까? ◦ 시계열 자료의 비교는 편리합니까? ◦ 통계별 용어와 항목의 비교가 적절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통계별 차이에 대한 비교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향후 신생통계로 포함되어야 할 통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점 및 개선 의견	<p><input type="checkbox"/> 본 주제영역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주제통계의 문제점, 개선점, 건의사항 등을 말씀해 주십시오. ◦ 분야별 주제 통합에 있어 타당성과 주제 통계의 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복지주제 품질 개선과제 있어 중점 검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